

월간

재정포럼

2017. November_Vol.257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11

권두칼럼

다시 국가를 생각한다 | 박정수

현안분석

일용근로자 800만 시대,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재진

소득계층 이동과 빈곤에 대한 소고 | 윤성주

특집

Richard H. Thaler 교수의 행동경제학에 대한 기여 | 이은경

공공정책포럼

포노 사피엔스 시대와 4차 산업혁명

CONTENTS

권두칼럼

다시 국가를 생각한다 · 박정수 02

현안분석

일용근로자 800만 시대,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재진 06

소득계층 이동과 빈곤에 대한 소고 · 윤성주 38

특집

Richard H. Thaler 교수의 행동경제학에 대한 기여 · 이은경 52

공공정책포럼

포노 사피엔스 시대와 4차 산업혁명 69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2017 세법개정안 발표 외 82

조세·재정 정책 및 연구 동향

세미나 & 정책 및 연구 141

정책흐름

2017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및 주요 내용 146

2017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154

다시 국가를 생각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최고지도자 간의 막말싸움이 점입가경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전 세계는 물론 둔감하기로 소문이 난 우리나라 국민들까지도 안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러시아스캔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김정은은 체제결속에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사드(THAAD)사태 이후 벌어진 중국의 한국 ‘때리기’로 머리가 아프고 있는데 더해 참으로 걱정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해야 하는 입장이다.

미진한 경기회복 속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되짚어봐야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촛불정국에 이어 문재인정부가 출범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어 대내적인 정치와 경제부문은 제자리를 찾는 모습이다. 특히 나라살림의 근간인 세수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어 지출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는 계획한 범위 내에서 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며 국가정책기조가 어떻게 진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반도체가 이끄는 수출호조는 세계경기회복세를 타고 연중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행수지 적자 폭이 사상최대를 기록하는 등 서비스수지 적자 폭 확대,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여건 악화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되는 등 경기회복이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차분히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짚어 볼 시점이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로 유명한 토드 부크홀츠가 『다시 국가를 생각한다』라는 책을 써서 화제다. 잘 나가던 나라는 왜 몰락하며 어떻게 재건되는가? 그리고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리더가 이끌어왔는가? 그는 뉴노멀과 저성장의 혼란기에 직면한 오늘날, 역사 속 위대한 지도자들에게서 교훈을 찾고 있다. 오늘날 부유한 나라들이 직면하는 경제적 · 정치적 · 문화

적 분열 양상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위기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자 혁신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37개국 중 26위에 머물렀다. 4년째 26위다.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까지 올랐다가 매년 순위가 미끄러지고 있다. 거시경제나 인프라 같은 경제 기초환경은 양호한 편으로 평가받지만 골지에 가까운 노사협력분야 등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금융시장 성숙도 등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신뢰(90위), 정부규제부담(95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81위), 정책결정의 투명성(98위) 등이 후진국 수준인 것은 정말 문제다. 물론 민간도 마찬가지다. 기업윤리경영(90위), 기업이사회의 유효성(109위), 소액주주 이익보호(99위) 등이 낙제점이다. 이제부터라도 노동시장의 역동성 강화를 위한 경제구조 개혁, 잠재공급 능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전략 마련과 함께 이를 가능하게 하는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MIT의 경제학자 애쓰모글루와 하버드의 정치학자 로빈슨의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는 일관되게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제도와 경제제도가 포용적으로 잘 발달된 나라는 번성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의 제도들은 소수의 권력자들에게 유리하게 구조화되게 마련이고 이러한 경우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잘 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포용적 경제제도와 포용적 정치제도 확립의 중요성

여기서 포용적 경제제도(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는 잘 확립된 재산권 제도, 정부와 시장 간의 경쟁중립성(leveling play field)을 근간으로 한다. 그리하여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견인하고 투자를 촉진하게 된다. 이러한 포용적 경제제도는 포용적 정치제도를 지원하고 거꾸로 반대의 관계도 성립한다. 포용적 정치제도는 다차원적으로 정치권력이 분산되어 있어 재산권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포용적 시장경제의 토대가 되는 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집권화가 함께 균형을 이룬다. 혁신과 높은 소득수준에 필수적인,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innovation through destructive creation)을 조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혁신이야말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책을 쓴 시점이 2012년이라고 할 때 현재 PPP기준으로 국민소득 15,000달러에 이른 중국에 대한 예측에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지켜볼 여지

.....
이제부터라도 노동시장의 역동성 강화를 위한 경제구조 개혁, 경제공급 능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전략 마련과 함께 이를 가능하게 하는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

**인구절벽, 안보위기,
견고한 규제장벽 등
우리를 어렵게 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젊은 경제, 활력 있는
시장은 바른 정치 및
거버넌스 제도를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

.....

는 있다. 저자는 미국에 대해서도 정치적 불평등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경고하고 있으며, 경제 양극화로 초래될 수 있는 금권정치 경향에 대한 우려도 잊지 않고 있다.

우리의 경우 법과 질서가 형식(de jure)과 실제(de facto)의 양면성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부분이 제일 문제다. 우리나라의 경제제도와 재정제도는 물론 정치제도도 정말 좋은 제도들의 백화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IMF와 OECD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놀랄만한 수준의 좋은 경제 및 기업제도와 정치구조와 관련한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 운용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특히 세계 경제포럼조사와 같은 인식조사의 결과로 나타나고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여기서 포용적 경제제도와 정치제도의 의미를 다시 강조하게 된다. 제도운영의 현실성과 유용성이 저하되면 제도가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한다는 탈동조화(decoupling)에 유념해야 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학습해야 한다. 정치가 바로서지 않고는 경제가 바로 설 수 없다. 인구절벽, 안보위기, 견고한 규제장벽 등 우리를 어렵게 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젊은 경제, 활력 있는 시장은 바른 정치 및 거버넌스 제도를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 투명하고 실천력 있는 제도로의 구조개혁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민들은 현명하고 균형있게 의사결정을 한다. 통계로 나타나는 우리의 경쟁력이 인식조사로 나타난 순위와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국민과 괴리된 제도운영에 있지 않을까.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지만 포용적 정치제도와 포용적 경제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본에 충실하면 꼭 필요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일용근로자 800만 시대,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재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소득계층 이동과 빈곤에 대한 소고**
윤성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일용근로자 800만 시대,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 서론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imjaeji@kpf.re.kr)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으로 인하여 비정규직이 빠르게 증가하여 20년이 지난 지금 일용근로자는 800만명을 초과하였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일용근로소득이 2015년에 58조원에 달한다. 일용근로자의 34%는 30세 미만으로 10%가 넘는 청년층의 실업률·구직난과 관련되어 있고, 또 다른 34%는 50세 이상으로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노후생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정부도 청년백수, 명퇴가장, 빈손노인의 원인을 일자리 부족으로 결론내리고 100대 국정과제의 1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다.

일용근로자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해당 분야에 여러 정책이 준비·집행되고 있지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과세제도는 그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서 조세정책과 입법, 그리고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상용근로소득의 과세제도는 거의 매년 개정되는 반면, 일용근로소득의 과세제도는 2011년 개정된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일용근로소득의 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분리과세소득 중 하나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되며, 원천징수로써 납세의 무가 종결된다. 소득세의 기본 원칙은 개인의 지난 1년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은 불확실한 고용환경에 노정되어 있는 일용근로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소득세법」 제1조에 따르면,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는 일용근로소득의 분리과세 제도가 일용근로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조세부담의 형평, 재정수입의 조달이라는 「소득세법」의 기본 목적에 근거하여 일용근로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조세부담의 형평, 재정수입의 조달이라는 소득세법의 기본 목적에 근거하여 일용근로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일용근로자의 현황과 과세제도

1. 일용근로자의 현황

가. 일용근로자의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일용근로자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¹⁾(건설공사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일용근로자의 정의는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소득의 특징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다. 상용근로자와 달리 일용근로자는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짧아서 소득의 지속 가능성 및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특히나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생산활동 변화에 따라 고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동공급을 자신이 결정하기 힘든 실정이다.

소득의 형태도 일급이나 시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모습을 보여 목돈을 만들기도 어려우며, 낮은 임금률, 4대 보험을 포함한 복지혜택으로부터의 차별 또는 사각지대에 놓여 열악한 생활·고용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1) 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고, 건강보험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일일근로자의
한 달 평균 근로일수는
2007년 19.7일에서
2015년 12.8일로
줄어들어 격일 근무도
보장받지 못하며,
2007년 상용근로자의 87%
수준이던 일일근로자의
근로일수는 2015년 56%
수준으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나. 일용근로자의 근로실태

1)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일일근로자²⁾의 한 달 평균 근로일수는 2007년 19.7일에서 2015년 12.8일로 줄어들어 격일 근무도 보장받지 못하며, 2007년 상용근로자의 87% 수준이던 일일근로자의 근로일수는 2015년 56% 수준으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근로일수가 줄어들면서 근로시간도 같이 줄어들어 2007년 160.6시간에서 2015년 100.3시간으로 60시간 가까이 줄어들었다.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들면서 2007년 상용근로자의 83% 수준이던 일일근로자의 근로시간은 2015년 54%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표 II-1〉 고용형태별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단위: 일, 시간, %)

연도	근로일수			근로시간		
	정규근로자 (A)	일일근로자 (B)	비율 (B/A)	정규근로자 (C)	일일근로자 (D)	비율 (D/C)
2007	22.7	19.7	87	193.2	160.6	83
2008	22.2	18.4	83	189.6	156.2	82
2009	23.1	18.6	81	195.7	157.0	80
2010	22.9	17.9	78	194.4	153.1	79
2011	22.5	16.7	74	190.7	139.0	73
2012	21.7	14.8	68	184.4	117.7	64
2013	21.0	14.7	70	178.0	116.1	65
2014	21.0	13.0	62	177.7	101.1	57
2015	22.7	12.8	56	187.4	100.3	54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2) 월급여액과 시간당 급여액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정규근로자의 임금이 74만원가량 꾸준히 증가하는 동안, 일일근로자의 임금은 2013년 이후로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07년부터 2015년에 걸쳐 8만원 상승하는 데 그친 결과, 정규근로자 임금수준의 4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강조되고 최저임금 수준이 상승하면서 일일근로자의 시간당 급여액은 2007년 7.6천원에서 2015년 12.9천원으로 70% 가까이 상승하였고 정규근로자의

2) 비전형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임. 일용근로자와 일일근로자의 개념상 차이가 있지만 데이터 분석이 아닌 실태조사의 목적이라 일일근로자의 근로실태를 활용함

87.5% 수준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소득세는 일 137,000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시간당 급여액 상승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상승으로 직결되었다. 즉, 시간당 급여액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상승하였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부족으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따라서 월급여액도 함께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소득세 부담은 상승하여 일일근로자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표 II-2〉 고용형태별 월급여액과 시간당 급여액

(단위: 천원, %)

연도	월급여액			시간당 급여액		
	정규근로자 (A)	일일근로자 (B)	비율 (B/A)	정규근로자 (C)	일일근로자 (D)	비율 (D/C)
2007	2,027	1,219	60.1	10.5	7.6	72.3
2008	2,151	1,268	58.9	11.3	8.1	71.6
2009	2,199	1,272	57.8	11.2	8.1	72.1
2010	2,285	1,255	54.9	11.8	8.2	69.7
2011	2,385	1,355	56.8	12.5	9.7	77.9
2012	2,502	1,375	55.0	13.6	11.7	86.1
2013	2,566	1,459	56.9	14.4	12.6	87.2
2014	2,698	1,212	44.9	15.2	12.0	79.0
2015	2,771	1,297	46.8	14.8	12.9	87.5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부족으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따라서 월급여액도 함께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소득세 부담은 상승하여
일일근로자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2. 일용근로소득 과세제도

가. 일용근로소득 과세제도의 특징

1) 과세기준: 일급(日給)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이에 따라 상용근로소득도 지난 1년간의 총급여에 대해서 소득세 부담을 재계산하는 연말정산의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는 정액공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정액공제 방식은 일정 금액
미만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소액의 일급으로
생활하는 일용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해주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2호에 따라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실제로 일용근로자의 일급이 과세기준이 된다. 이는 다른 소득들과 달리 일용근로소득은 일급·시간급의 형태로 매일 지급되므로 실제 일용근로소득의 지급 형태를 소득세 과세에 반영한 것이다.

2) 근로소득공제: 10만원 정액공제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정률공제 방식으로 급여수준에 따라서 2~70%를 공제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2항에 따라 일급에서 10만원을 공제하는 정액공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정률공제 방식은 소득이 낮은 경우라 하더라도 공제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정액공제 방식은 일정 금액 미만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소액의 일급으로 생활하는 일용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해주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표 II-3〉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비교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총급여액	공제액	
0~500만원	총 급여액의 70%	1일 10만원
500만원~1,500만원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500만원~4,500만원	75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500만원~1억원	1,200만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출처: 저자 작성

3) 원천징수세율: 6%의 단일세율

상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6~40%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받는다. 이에 반해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6%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다. 6%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40%의 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로, 소득세율이 개정될 때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

수세율은 소득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표 II-4〉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세율 비교

(단위: %)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과세표준 구간	세율	
0~1,200만원	6	6% 단일세율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억 5천만원	35	
1억 5천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출처: 저자 작성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급여수준에
따라서 50~74만원의
한도가 있지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4) 근로소득세액공제: 55%의 가장 높은 공제율

상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1항에 근거하여 구간별로 산출세액의 30% 또는 55%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반해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3항에 따라 산출세액 수준에 관계없이 산출세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하지만 더 큰 차이점은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급여수준에 따라서 50~74만원의 한도가 있지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근로소득세액공제율 중에 가장 큰 55%를 한도 없이 적용하는 것도 근로소득공제나 세율과 마찬가지로 일용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표 II-5〉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비교

구분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공제액	
공제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만 5천원 + (130만원 초과액의 30%)	
한도	급여수준에 따라서 50~74만원		한도 없음

출처: 저자 작성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과세기준이 상용근로자는
1년간의 총급여인 것에 비해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른 급여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5) 기타 소득·세액공제

일용근로자는 위에서 언급했던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 적용받는 것에 비해 상용근로자는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는다. 가구의 특성과 관련된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와 가구의 유지와 관련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관련 비용 등이 공제된다. 또한 조특법상 소득공제 등은 특정 지출항목에 대한 정책상 지원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이렇게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과세기준이 상용근로자는 1년간의 총급여인 것에 비해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른 급여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지출된 비용을 보전해주는 성격을 가진 공제항목의 경우 상용근로자처럼 연말정산을 통해 1년에 한 번 합산하여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용근로자처럼 급여가 매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출 항목을 파악하기 어렵고 공제기준을 설정하기도 곤란하여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적용하기 힘들다. 게다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수시로 변하는 가구의 특성, 지출 항목 집계를 고용주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도 있다.

〈표 II-6〉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기타 소득·세액공제 비교

구분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소득 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 특별공제(보험료, 주택임차·저당차입금, 기부금) - 조특법상 소득공제(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 고용유지 중소기업근로자, 전세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없음
세액 공제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표준세액공제 - 납세조합, 주택차입금, 외국납부, 월세액	

출처: 저자 작성

6) 완납적 원천징수(분리과세)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다. 원천징수는 과세체계에 따라 예납적 원천징수,³⁾ 종합적 원천징수,⁴⁾ 완납적 원천징수⁵⁾로

- 3) 분리과세 대상소득을 제외한 기타의 소득금액과 법인의 이자소득금액·투자신탁의 이익
- 4)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사업·연금소득
- 5) 당연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합계액 1,200만원 이하 사적연금소득 등

나뉜다.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산출세액을 다시 계산한 후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다. 종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는 것까지는 예납적 원천징수와 동일하지만,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연말정산을 통해 산출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기납부세액과 과부족을 정산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되는 소득을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부른다.⁶⁾

「소득세법」 제14조에서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분리과세소득에는 원천징수된 합계액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 연금수령하는 퇴직금과 1,2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 그리고 일용근로소득 등이 포함된다.

원천징수된 합계액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액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수준을 낮춰줌으로써 취약계층의 저축을 지원하고 서민·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강하다. 특히, 최근에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기예금 금리가 낮아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의 부담이 커진다면, 실질이자율이 물가상승률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위와 비슷한 목적으로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소규모 임대주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기타소득은 복권 당첨금과 같이 대부분 일시적으로 발생해서 지속적인 수입원이 되지 못하고, 실제 발생 여부를 추적하기가 어려워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한다. 퇴직금을 연금수령하는 경우나 1,2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세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노령층이 안정된 소득을 바탕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대표적인 분리과세소득 이외의 다른 항목들도 정책적인 배려의 목적이나 해당 분야의 투자 장려, 해당 소득자를 보호하려는 성격을 띠고 있다.

원천징수된

합계액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액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수준을 낮춰줌으로써 취약계층의 저축을 지원하고 서민·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강하다.

6)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 p. 58.

일용근로소득
총지급액보다
원천징수세액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은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는
일 137,000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0만원이며,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6,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이다. 이렇게 계산된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므로 일 137,000원⁷⁾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이는 일반 근로소득의 소득공제, 세율, 세액공제와 비교해보면 세율은 가장 낮게, 세액공제율은 가장 높게 적용하여 일용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임을 알 수가 있다.

〈표 II-7〉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할 세액 계산방법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구조		
	1일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1일 10만원
=	과세표준	
×	원천징수세율	• 6%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
=	원천징수할 세액	•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출처: 저자 작성

다. 일용근로소득 총지급액 및 원천징수세액

일용근로자의 숫자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소득 총지급액 및 원천징수세액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2008년 일용근로소득 총지급액은 44조원, 원천징수세액은 약 1,597억원이었지만, 2015년 총지급액은 58조원, 원천징수세액은 약 3,058억원으로 해당 기간 동안 각각 32%, 91% 증가하였다. 특히 일용근로소득 총지급액보다 원천징수세액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은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는 일 137,000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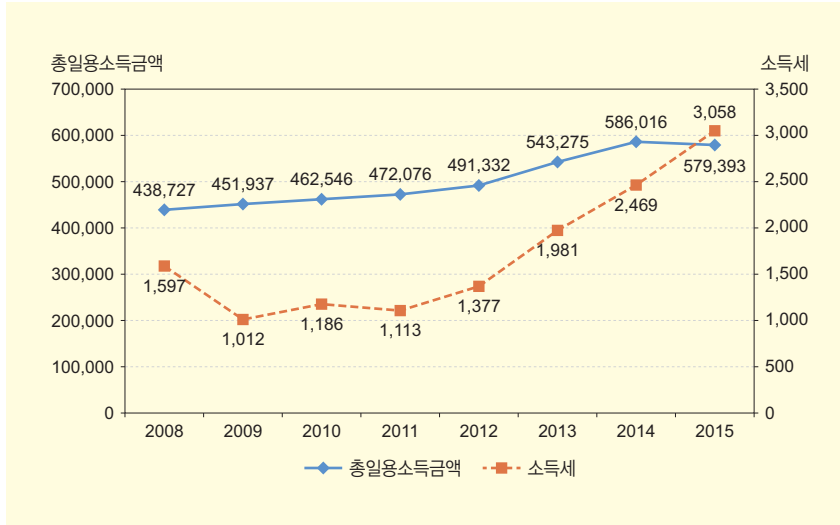
7)

(단위: 원)

일급 137,000원인 경우		
	1일 급여액	137,000
-	근로소득공제	100,000
=	과세표준	37,000
×	원천징수세율	6%
=	산출세액	2,220
-	근로소득세액공제	1,221
=	원천징수할 세액	999

[그림 II-1] 일용근로소득 총지급액 및 원천징수세액 추이

(단위: 억원)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확대하고 원천징수세율은 낮추면서 일용근로소득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라. 일용근로소득 제·개정 연혁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원천징수세율, 세액공제의 제·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소득공제액은 1975년 3,700원부터 현재 10만원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세액공제도 중간에 법률 개정 과정에서 폐지된 적이 있었지만 20%에서 현재 55%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결국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확대하고 원천징수세율은 낮추면서 일용근로소득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2009년, 원천징수세율은 2011년,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2004년에 개정된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상용근로소득은 거의 매년 소득공제, 세율, 세액공제가 개정되어 왔다. 일용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은 2009년 이후 거의 10년째 변동이 없어서 그동안의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표 II-8〉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제·개정 연혁

제 · 개정	내 용		
	근로소득공제	원천징수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1975년	3,700원	100분의 8	
1976년	4,700원		
1977년	6,000원		
1978년	6,700원		
1979년	8,700원		
1980년	10,300원	100분의 6	산출세액의 100분의 30
1981년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1982년	14,100원		산출세액의 100분의 30
1983년	15,000원		
1989년	25,000원	100분의 5	폐지
1991년	35,000원		산출세액의 100분의 40
1995년	50,000원	100분의 10	산출세액의 100분의 45
1997년			
2002년	60,000원	100분의 9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2003년	80,000원		
2004년	100분의 8		
2005년			
2009년	100,000원	100분의 6	
2011년			

출처: 저자 작성

Ⅲ. 일용근로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

1. 일용근로자의 상대적 세부담 증가

가.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소득세 부담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그 이유는 10만원 정액의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세를 중 가장 낮은 6%의 단일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비율 중 가장 높은 55%를 적용하면서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적인 목적 때문이다. 이러한 과세방법상의 차이로 인하여 동일한 소득의 일용근로소득자와 상용근로소득자는 부담하는 세액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정책적인 취지와 보통의 예상과는 다르게 2015년 기준으로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용근로소득자가 상용근로소득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한다. 총급여가 '0~1천만원'인 경우, 일용근로소득자는 평균적으로 6,50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는 것에 비하여, 상용근로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결정세액이 없는 자가 100%로 세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자가 상용근로자에 비하여 평균 6,500원을 더 부담한다. 총급여가 '1천~2천만원'인 경우, 일용근로소득자는 평균적으로 48,00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여 상용근로소득자가 16,50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에 비해서 평균 31,500원을 더 부담한다. 총급여가 '2천~3천만원'인 경우, 일용근로소득자는 평균적으로 140,00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여 상용근로소득자가 125,00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에 비해서 평균 15,000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한다. 결국 총급여가 '3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상용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비해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에 비하여 세부담을 더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오래되지 않은 현상으로 2008년⁸⁾에는 총급여 '1천만원 이하'의 구간을 제외하고는 상용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비해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였다. 이후 2009년에 일용근로소득공제액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2011년은 원천징수세율이 8%에서 6%로 낮아지면서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이 감소한 때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2015년 기준으로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용근로소득자가
상용근로소득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한다.

8) 2008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통계가 최초로 집계되어 발표되기 시작함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에서
10만원을 공제하는
‘정액방식’이므로
일급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률의 개정이 없다면
일용근로자들의 세부담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며, 상용소득과의 소득세 부담이 역전되었다.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상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근로소득공제, 6%의 세율, 산출세액의 55%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추가적인 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일용근로자에 비해 소득세 부담이 더 낮아졌다. 또한 상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정률방식’인 것에 비해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에서 10만 원을 공제하는 ‘정액방식’이므로 일급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률의 개정이 없다면 일용근로자들의 세부담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표 III-1〉 일용근로소득자와 상용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세 부담 비교

(단위: 원)

총급여	구분	2008년	2009년	2011년	2015년
0~1천만원	상용	3,500	500	500	0
	일용	6,000	3,000	3,500	6,500
1천~2천만원	상용	67,500	42,000	46,500	16,500
	일용	45,000	25,500	25,500	48,000
2천~3천만원	상용	332,500	160,000	182,500	125,000
	일용	135,000	77,500	75,000	140,000
3천~5천만원	상용	532,000	556,000	628,000	700,000
	일용	396,000	300,000	284,000	416,000

- 주: 1. 일용근로소득 과세제도가 변경된 연도의 일용근로소득자와 상용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세 부담을 비교함
 2. 일용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세는 총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금액 대비 원천징수세액을 토대로 추정함 (2008~2012년: 0~1천만원 자료가 없어 0~1.2천만원으로 대체하고 1천~2천만원 자료가 없어 1.2~2천만원 자료로 대체함)
 3. 상용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세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의 총급여 구간별 총급여 대비 결정세액의 비율을 토대로 추정한 금액임
 4. 상용근로소득자의 3천만원 이상 구간은 2008~2011년은 3천~4.5천만원을 2012~2015년은 3천~5천만원 값을 사용함(2015년 일용근로소득 3천만원 이상 구간의 평균 일용근로소득이 4.2천만원이라 3천~5천만원의 값을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함)
 5. 소득세는 해당 구간의 중앙값에 구간별 총급여액 대비 소득세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값임
 6. 파란색 구간은 상용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비해 평균 소득세 부담이 더 큰 구간임

나.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소득세 부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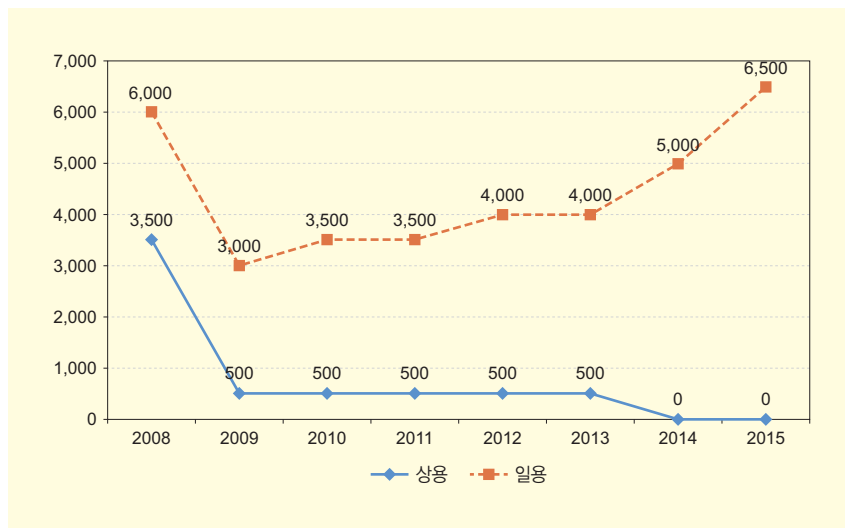
2008~2015년의 총급여 구간별 소득세 납부 추이를 보면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난다. 2009년에 근로소득 공제액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승하고 2011년에 원천징수세율이 8%에서

6%로 낮아질 때를 제외하면,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소득구간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나 가장 저소득층이라 할 수 있는 총급여 '1천만원 미만'의 상용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은 2008년 3,500원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4년 이후에는 소득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일용근로자들은 2009년 이후로 소득세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상용근로자와의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다. 총급여 '1천~2천만원' 구간의 상용근로자들은 2013년까지는 일용근로자에 비해서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였지만, 2014년 이후로 세부담이 오히려 역전되어 일용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총급여 '2천~3천만원' 구간의 상용근로자들도 2014년까지는 일용근로자에 비해서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였지만, 2015년 이후로 세부담이 오히려 역전되어 일용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총급여 '3천~5천만원' 구간의 일용근로자들은 상용근로자에 비해서 더 낮은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지만, 2012년 상용근로자의 41% 정도가 소득세를 부담하던 것에 비해, 2013년 46%, 2014년 54%, 2015년 59%로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⁹⁾

[그림 Ⅲ-1] 총급여 0~1천만원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부담 추이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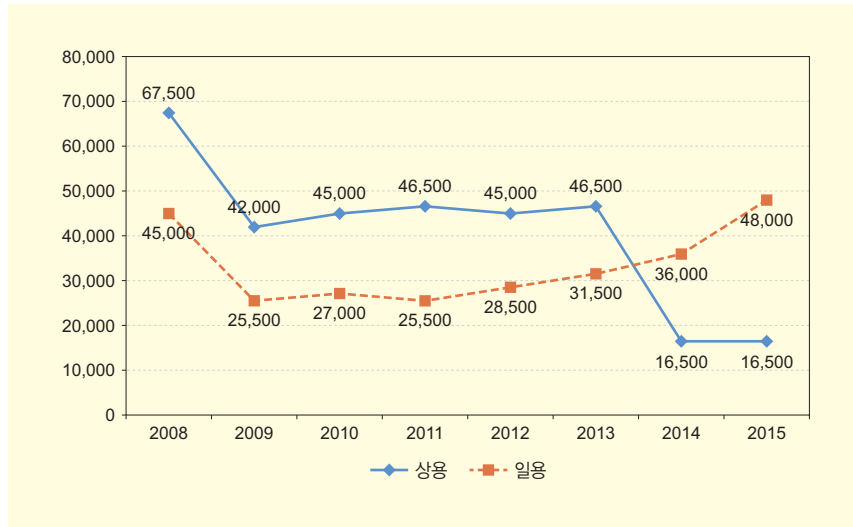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저자가 편집

총급여 '1천만원 미만'의 상용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은 2008년부터 꾸준히 감소하여 2014년 이후에는 소득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일용근로자들은 2009년 이후로 소득세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9)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상용근로자의 모든 급여 구간을 막론하고 세부담이 크게 감소한 것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 공제방식이 변경되면서 당초 정부의 "급여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다."던 주장과 달리 상당수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액이 대폭 증가하게 된 '연말정산 파동'으로 인한 수습 과정에서 각종 비과세·공제가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감소하였고, 2013년 32.2%이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14년 47.9%, 2015년 46.5%로 급증하게 되었지만 일용근로자의 과세제도에 대한 개편은 함께 이루어지지 못함

[그림 III-2] 총급여 1천~2천만원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부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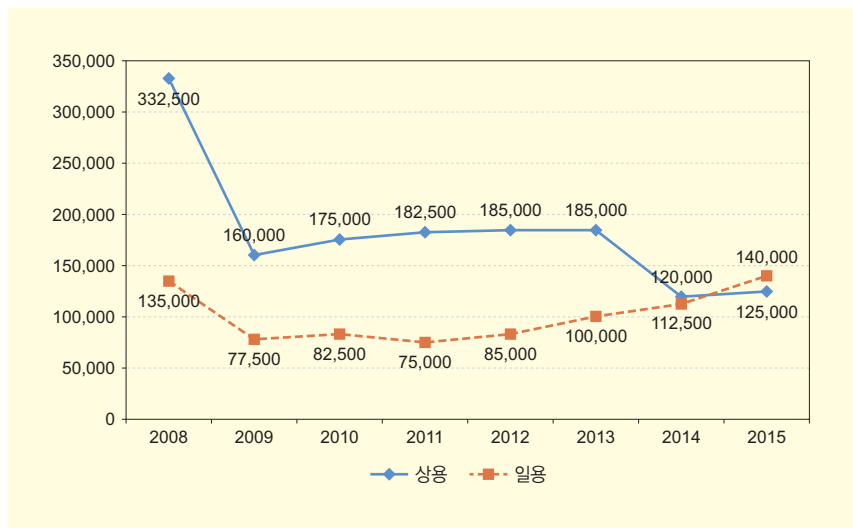
(단위: 원)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저자가 편집

[그림 III-3] 총급여 2천~3천만원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부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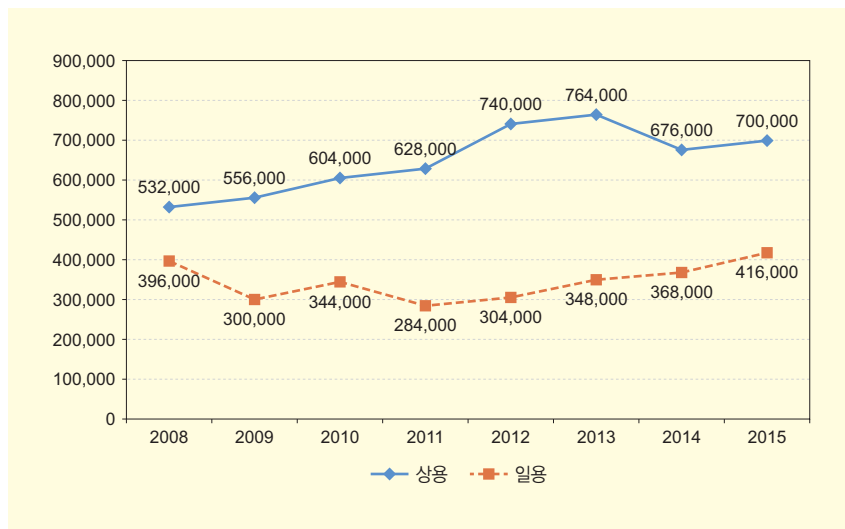
(단위: 원)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저자가 편집

[그림 III-4] 총급여 3천~5천만원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부담 추이

(단위: 원)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저자가 편집

일용근로자들의 일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공제액은 2008년 개정된 이후로 10년째 변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하고,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한 여타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일용근로자들의 일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공제액은 2008년 개정된 이후로 10년째 변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하고,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한 여타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당초의 입법목적은 분리과세를 통하여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보호하려는 취지였지만, 일용근로자들이 오히려 상용근로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거나, 그 차이가 매우 줄어들어 분리과세의 취지가 퇴색되고 세부담의 형평성이 무너지면서 소득세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용근로소득 과세제도의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세부담 형평성 훼손

상용근로소득은 과세기준이 지난 1년간의 총급여지만 일용근로소득의 과세기준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른 급여로 일용근로소득의 실제 지급형태를 반영하여 과세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세기준은 총일용근로소득이라는 실제적인 부담능력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정률 근로소득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일급 수준에
관계없이 부과되므로
일급이 137,000원 이하라서
소득세 부담이 없는 저소득
일용근로자들도 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1) 수평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과세를 하는 것이다. 일용근로소득이 똑같이 3,000만원이라면 일급이나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일급 30만원으로 100일을 일한 사람과 일급 15만원으로 200일을 일한 사람, 일급 10만원으로 300일을 일한 사람의 소득세 부담은 동일해야 한다. 하지만 <표 Ⅲ-2>와 같이 일용근로소득이 3,000만원으로 동일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급에 따라서 소득세 부담이 54만원과 27만원으로 2배 차이가 날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소득세 부담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과세기준이 총급여액이 아닌 일급 기준이라는 것과 근로소득공제가 정률공제가 아닌 정액공제라는 데 있다. 상용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정률의 근로소득공제를 하므로 다른 소득·세액 공제가 없다면 수평적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의 근로소득공제가 정률공제라면 <표 Ⅲ-3>과 같이 총일용근로소득이 동일하다면 일급과 근로일수에 따라서 소득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률의 근로소득공제는 형평성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률의 근로소득공제하에서는 $[\text{근로소득}(\text{일급}) \times (1 - \text{근로소득 공제율}) \times \text{원천징수세율} \times (1 - \text{근로소득세액공제율})]$ 의 원천징수세액이 일급 수준에 관계없이 부과되므로 일급이 137,000원 이하라서 소득세 부담이 없는 저소득 일용근로자들도 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세부담 감소를 통해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일용근로소득 과세체계의 목적과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표 Ⅲ-2〉 일급과 근로일수의 차이로 인한 총소득세 부담액 차이

(단위: 원)

일용근로소득 3,000만원				
구분	일급 30만원 100일	일급 15만원 200일	일급 10만원 300일	
1일 급여액	300,000	150,000	100,000	
- 근로소득공제	(100,000)	(100,000)	(100,000)	
= 과세표준	200,000	50,000	0	
× 원천징수세율	6%	6%	6%	
= 산출세액	12,000	3,000	0	
-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	(1,650)	0	
= 원천징수할 세액	5,400	1,350	0	
총소득세 부담액	$5,400 \times 100$ =540,000	$1,350 \times 200$ =270,000	0	

출처: 저자 작성

〈표 Ⅲ-3〉 정률의 근로소득공제 시 총소득세 부담액

(단위: 원)

일용근로소득 3,000만원				
구분	일급 30만원 100일	일급 15만원 200일	일급 10만원 300일	
1일 급여액	300,000	150,000	100,000	
- 근로소득공제	(100,000)	(50,000)	(33,333)	
= 과세표준	200,000	100,000	66,667	
× 원천징수세율	6%	6%	6%	
= 산출세액	12,000	6,000	4,000	
-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	(3,300)	(2,200)	
= 원천징수할 세액	5,400	2,700	1,800	
총소득세 부담액	$5,400 \times 100$ =540,000	$2,700 \times 200$ =540,000	$1,800 \times 300$ =540,000	

출처: 저자 작성

2) 수직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은 세금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일급에 대해 과세하고 정액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일용근로소득 과세제도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소득세 부담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일급이 크

수직적 형평성은
세금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된다.

정액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면 오히려
근로소득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는
일급이 높아서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근로소득이 2,000만원으로
2배 더 높은 경우라도
일급이 낮다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만 총일용근로소득은 낮은 일용근로자에게는 과세가 이루어지고, 일급은 낮지만 총일용근로소득은 높은 일용근로자에게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수직적 형평성이 무너진다.

〈표 Ⅲ-4〉는 일급 20만원으로 50일을 일해서 총일용근로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와 일급 10만원으로 200일을 일해서 총근로소득금액이 2,000만원인 경우의 소득세 부담을 비교하였다. 정액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면 오히려 근로소득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는 일급이 높아서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근로소득이 2,000만원으로 2배 더 높은 경우라도 일급이 낮다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정률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었다면, 근로소득의 크기에 비례하는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일급 10만원의 낮은 일급의 일용근로자에게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표 Ⅲ-4〉 일급과 근로일수의 차이로 인한 소득세 역전 현상

(단위: 원)

구분	총근로소득금액 1,000만원 (일급 20만원, 근로일수 50일)		총근로소득금액 2,000만원 (일급 10만원, 근로일수 200일)	
	정액공제	정률공제	정액공제	정률공제
1일 급여액	200,000		100,000	100,000
- 근로소득공제	(100,000)		(100,000)	(50,000)
= 과세표준	100,000		0	50,000
× 원천징수세율	6%		6%	6%
= 산출세액	6,000		0	3,000
- 근로소득세액공제	(3,300)		0	(1,650)
= 원천징수할 세액	2,700		0	1,350
총소득세 부담액	2,700×50 =135,000		0	1,350×200 =270,000

출처: 저자 작성

일용근로소득의 실제 지급 형태를 반영하여 일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소액의 일급으로 생활하는 일용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액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세제도는 결과적으로 일용근로자 내부에서 세부담의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이 모두 달성되지 못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소득세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두 번째 문제점이 발생한다.

3. 일용근로자의 양극화 심화

가. 비순수일용근로자¹⁰⁾의 증가

2008년에 738만명이던 일용근로자는 2015년에 813만명으로 7년 사이에 10% 넘게 증가하였고, 시간이 지나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전체 근로자 중에 일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30~35%에 달한다. 하지만 이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체 일용근로자 중 순수일용근로자¹¹⁾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는 2008년 210만 8천명에서 2015년에는 40%(83만 5천명)가 증가하여 294만 3천명으로 급증하였다는 점이다.

비순수일용근로자의 유형을 분류하면, 사업소득이나 상용근로소득이 있지만 일용근로를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획득하는 부류와, 청년층의 구직활동이나 실직자들의 직업 탐색 기간 동안 생계를 위하여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부류로 양극화된다.

전자의 부류는 소득 중 일부가 일용근로소득이라는 이유로 종합과세의 예외가 적용되어 낮은 소득세 구간의 세율이 중복해서 적용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누진세 적용의 예외가 되는 것은 세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후자의 부류는 높아지는 실업률과 구직의 어려움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전자의 부류와 동일한 과세체계를 적용할 경우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전체 일용근로자 중
순수일용근로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는
2008년 210만 8천명에서
2015년에는 40%가
증가하여 294만 3천명으로
급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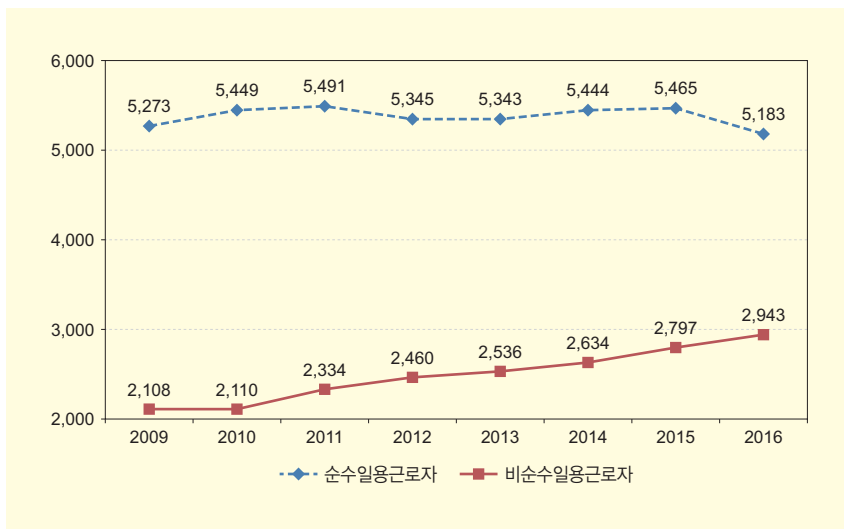
10) 일용근로자 중 상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함

11) 일용근로자 중 상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를 제외한 인원임

일용근로소득이
‘2,000만원 이상’ 구간의
일용근로자 수 비율은
2015년에 10%를 넘었으며
일용근로자 수의 증가와 함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림 III-5] 연도별 순수일용근로자와 비순수일용근로자 인원 추이

(단위: 천명)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나. 고소득 일용근로자의 증가

일용근로자의 부담능력 양극화는 소득수준별 일용근로자 비율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2008년 대비 2015년의 소득수준별 일용근로자 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일용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과 ‘2,000만원 이상’의 구간만 비율이 증가하고 나머지 전 구간에서 비율이 감소하였다. 일용근로소득이 ‘2,000만원 이상’ 구간의 일용근로자 수 비율은 2015년에 10%를 넘었으며 일용근로자 수의 증가와 함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일용근로자 내부에서도 ‘2,000만원 이상’인 계층과 ‘100만원 미만’ 계층의 비율 증가는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일용근로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인원은 10%가 넘어섰고 그들의 일용근로소득은 전체 일용근로소득의 48%에 달한다. 특히 일용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인원의 비율이 2008년 2.26%에서 2015년 5.25%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일용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이상’인 일용근로자들은 전체 일용근로소득의 31.2%를 차지하며, 개인당 소득평균이 4,200만원 이상으로 일용근로자 내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상용근로소득자 중에서도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비율이 2015

년 기준으로 61%이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상용근로자도 140만명(상용근로자의 8%)가량 된다.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6%의 낮은 세율과 누진세의 예외라는 분리과세의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소득과 부담능력에 비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소득세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용근로소득 과세제도의 세 번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Ⅲ-5〉 총소득금액 규모별 일용근로자 인원 비율

(단위: %)

구분	연도							
총소득금액 규모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100만원 미만	26.16	26.17	27.23	27.17	27.27	26.42	25.95	27.06
100만 ~ 300만원 미만	24.51	23.62	23.80	24.05	24.10	23.90	23.81	24.24
300만 ~ 800만원 미만	25.71	26.09	25.16	24.68	24.07	23.83	23.33	22.81
800만 ~ 1,200만원 미만	8.49	8.73	8.66	8.44	8.34	8.33	8.34	7.71
1,200만 ~ 1,700만원 미만	6.01	6.20	6.09	6.03	6.00	6.06	6.14	5.60
1,700만 ~ 2,000만원 미만	2.35	2.45	2.38	2.42	2.41	2.45	2.51	2.31
2,000만 ~ 3,000만원 미만	4.52	4.65	4.51	4.68	4.82	5.03	5.20	5.00
3,000만원 이상 ~	2.26	2.09	2.17	2.53	3.00	3.98	4.71	5.25

주: 노란색 부분은 2008년 대비 2015년의 비율이 증가한 곳으로 총소득금액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양극화를 보여줌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6%의 낮은 세율과
누진세의 예외라는
분리과세의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소득과 부담능력에
비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소득세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IV. 개선방안

「소득세법」 제1조에 따르면 소득세는 소득의 성격,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조달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본 목적에 기준하여 일용근로소득의 분리과세에 대해 살펴본 결과 3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분리과세의 취지와는 다르게 저소득층의 일용근로자들이 동일한 소득의 상용근로자에 비해서 더 많은 세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1】은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상향하고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방안 2】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상용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다. 두 가지 개선방안은 동시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일용근로소득의 실제 지급 형태를 과세에 반영하기 위해

**현재 10만원인
소득공제액을 현실화하거나
물가나 임금 상승률에
연동하여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없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과세기준을 일급으로 설정하고, 소액의 일급으로 생활하는 일용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는 과세하지 않도록 설정한 정액의 근로소득공제가 일용근로자 내부의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일용근로소득액이 2,000만원 이상인 비율이 10%를 넘어가고 비순수일용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일용근로자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일용근로소득자들이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부담능력에 비해 세부담이 낮아 응능과세원칙이 달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3】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되, 총일용소득금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나 일용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방안 4】는 일용근로소득을 분리과세 항목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1. 【방안 1】: 분리과세 유지,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원천징수세율 인하

일용근로소득공제 금액은 2008년 말에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10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동 기간 동안 소득세가 부과되는 일 137,000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의 비율도 늘어나 원천징수세액도 크게 상승하였다. 일반근로소득공제는 소득에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정률방식’이라 소득이 증가하면서 공제액이 증가하지만, 일용근로소득공제는 ‘정액방식’이므로 법률의 개정 없이는 소득의 증가가 공제액에 반영되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 10만원인 소득공제액을 현실화하거나 물가나 임금 상승률에 연동하여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없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또는 현재의 과세 대상 일용근로소득을 유지하면서 현재 6%인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여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법도 가능하다.

가. 장점

이 방안은 현재 일용근로소득의 과세방법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 적용하는 데 혼란도 없으며 일용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거부감이 크지 않

을 것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수준을 적절하게 현실화한다면, 제도의 큰 변화 없이도 상용근로자 및 다른 소득, 분리과세되는 소득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나. 단점

이 방안은 분리과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할 수 있으나 모든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되므로 고소득 일용근로자나 일용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능력에 맞게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소득 상용근로자와의 형평성 및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근로소득자와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2. 【방안 2】: 분리과세 유지, 소득·세액공제항목 신설

상용근로자의 경우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및 조특법상 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밖에 적용받지 못한다.

상용근로자의 대다수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연 단위로 종합되어 공제되므로 시간급·일급으로 계산되어 소득이 지급되고 원천징수해야 하는 일용근로자의 특성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보험료공제, 자녀세액공제와 같은 항목은 일급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의 부양가족 1인당 소득공제 1만원을 추가하고, 부양가족 중 70세 이상이나 장애인, 6세 이하의 자녀, 출생·입양이 있는 경우 1만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은 가능하다.

또한 현재 일용근로자는 미래 준비보다 당장의 소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상용근로자에 비해 4대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다. 정규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률이 8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률은 약 40%로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률은 20%가 채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납부한 4대 보험료의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준다면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어 일용근로자도 사회보험의 틀 안에서 보호할 수 있다.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보험료공제,
자녀세액공제와
같은 항목은
일급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분리과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할 수 있으나,
모든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혜택을 누리므로
응능부담원칙의 구현에는
한계가 있다.

〈표 IV-1〉 2016년 8월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근로형태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임금근로자	67.6	72.6	69.6
정규직	82.9	86.2	84.1
비정규직	36.3	44.8	42.8
한시직	53.1	65.1	60.9
기간제	55.3	69.0	63.8
비기간제	44.3	49.2	49.6
시간제	15.3	19.3	20.9
비전형	19.9	32.6	29.2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08.

가. 장점

【방안 2】 또한 현재 일용근로소득의 과세방법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 적용하는 데 무리도 없으며 일용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거부감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적절하게 신설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적용한다면, 제도의 큰 변화 없이도 상용근로자 및 다른 소득, 분리과세되는 소득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고, 해당 가구의 특성까지 과세에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방안은 일용근로소득이 일급·시간급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의 특성을 반영한 과세방법이라는 장점이 있다.

일용근로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만큼 소득에서 공제되도록 개편한다면 일용근로자의 보험 가입률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일용근로자를 은퇴, 건강, 실업, 산재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나. 단점

【방안 2】는 분리과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할 수 있으나, 모든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혜택을 누리므로 고소득 일용근로자나 일용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능력에 맞게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응능부담원칙의 구현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 법안은 고소득 상용근로자와의 형평성 및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근로소득자와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또한, 일용소득을 지급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상용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

자의 세대구성원·소득·보험료 납부액까지 일일이 파악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된다.

3. **【방안 3】**: 분리과세 유지, 일용근로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거나 일용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과세

【방안 3】은 분리과세라는 현재의 큰 틀은 유지하되 고소득 일용근로자 및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도 있는 일용근로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총일용근로소득이 일정금액(예를 들면 2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상인 경우나, 일용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다.¹²⁾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대략 일용근로자의 10%, 3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5%가 해당되며, 순수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약 300만명의 일용근로자도 종합과세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 장점

이 방안은 대다수의 일용근로자는 현재의 과세방식에서 변화가 없으며 일급·시간급이라는 일용근로소득의 특징에 부합하는 과세방법이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이 2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되므로 상용근로자와의 형평성도 제고되고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능력에 맞게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나. 단점

금융소득의 경우 은행 및 금융기관을 통해 원천징수되므로 정확한 소득정보를 알 수 있어 이와 같은 방식의 과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동 방법을 적용할 경우 일용근로소득도 누락되거나 탈세되는 비율을 줄여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것이냐 전체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것이냐에 따라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부담의 증가가 크지 않아 기대하던 형평성의 제고 및 능력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총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

**총일용근로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나,
일용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방안도 있다.**

¹²⁾ 현재도 금융소득은 2천만원을
기타소득은 3백만원을 기준으
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여부
를 결정한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대다수 나라는
일용근로소득과
상용근로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종합소득으로
동일하게 과세한다.

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문턱효과가 발생하여 세부담이 급등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긴다.

이 방안은 일용근로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일용근로자 78.5%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저소득 일용근로소득자의 소득과 생활 보호라는 기본적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4. **【방안 4】**: 분리과세 폐지, 일용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과세

【방안 4】는 현재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근로소득과 같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방법이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대다수의 나라는 일용근로소득과 상용근로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종합소득으로 동일하게 과세한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연말정산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의 의무도 부여된다.

【방안 4】는 기존의 분리과세를 포기하지만, 상용근로자에 비해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는 90%에 가까운 일용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현재보다 경감된다. 또한 일용근로자 중에서도 상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은 종합소득 신고의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은 누진세의 적용을 받게 되고 납세자의 실제 납부능력에 맞는 응능과세원칙이 확고해진다.

‘1,300만원 이하’ 구간의 일용근로소득자들은 일용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된다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 지금보다 1인당 4,844원의 소득세 부담이 경감된다.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에 따라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00분의 70을 공제하게 되고,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하게 된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에 따라 거주자 본인만 있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에서 150만원을 공제해준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에 따라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고,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라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까지 받는다. 이를 통해 일용근로소득금액이 1,300만원 이하인, 즉 총일용근로자의 약 83%(총일용근로자 8,126,028명 중 6,763,068명)가 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일용근로소득은 전체 일용근로소득의 약 37%에 해당되며, 해당 구간에서는 일

용근로자의 세부담이 현재보다 약 32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¹³⁾

〈표 IV-2〉 상용근로소득금액이 1,300만원인 경우 소득세

(단위: 원)

계산구조		
	총급여액	13,000,000
-	근로소득공제	-6,700,000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6,300,000
-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1,500,000
=	종합소득과세표준	4,800,000
×	세율	×6%
=	산출세액	288,000
-	근로소득세액공제	-158,000
-	표준세액공제	130,000
=	결정세액	0

출처: 저자 작성

‘1,300~2,000만원’ 구간은 일용근로자의 7%와 소득금액의 15%,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차지한다. 201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해당 구간에서는 36%의 인원(405만명 중 144만명)이 소득의 0.11%를 소득세(61조원 중 687억원)로 납부하였다. 해당 비율이 일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소득금액 ‘1,300~2,000만원’ 구간의 53만명 중 18.8만명이 총 96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현재 해당 구간에 속하는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이 현재의 304억원에서 96억원으로 약 208억원(1인당 39,430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3,000만원’ 구간은 전체 일용근로자의 5%와 소득금액의 17%, 원천징수세액의 18%를 차지한다. 201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해당 구간에서는 66%의 인원(293만명 중 192만명)이 소득의 0.5%를 소득세(73조원 중 3,640억원)로 납부하였다. 해당 비율이 일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소득금액 ‘2,000~3,000만원’ 구간의 41만명 중 27만명이 총 497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 결과 해당 구간에 속하는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이 현재의 552억에서 497억원으로 약 55억원(1인당 13,486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300~2,000만원’ 구간은
일용근로자의 7%와
소득금액의 15%,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차지한다.

13) 모든 세수 예상은 일용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은 없고,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금액임. 일용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포함되게 되면 결정세액은 증가하게 되고 기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추가되면 결정세액은 감소하게 됨

**3,000만원 이상
구간에 속하는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이
현재의 1,874억원에서
3,170억원으로
약 1,296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000만원 이상’ 구간은 전체 일용근로자의 5%와 소득금액의 31%, 원천징수세액의 61%를 차지한다. 201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해당 구간¹⁴⁾에서는 75%의 인원(328만명 중 248만명)이 소득의 1.75%를 소득세(129조원 중 2.3조원)로 납부하였다. 해당 비율이 일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소득금액 ‘3,000만원 이상’ 구간의 43만명 중 32만명이 총 3,170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 결과 해당 구간에 속하는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이 현재의 1,874억원에서 3,170억원으로 약 1,296억원(1인당 303,762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3〉 일용근로자의 세부담 변화

(단위: 명, 백만원)

구분	현재(분리과세 적용)			변경 후(종합과세 적용)		
	일용근로자	총소득금액	소득세	납부자	소득세	증감
총소득금액 규모별	8,126,028	57,939,253	305,752	778,000	376,323	+70,571
~ 1,300만원	6,763,068 (83)	21,388,597 (37)	32,758 (11)	0	0	-32,758
1,300 ~ 2,000만원	529,337 (7)	8,534,037 (15)	30,434 (10)	188,000	9,562	-20,872
2,000 ~ 3,000만원	406,691 (5)	9,944,074 (17)	55,208 (18)	270,000	49,723	-5,485
3,000만원~	426,932 (5)	18,072,545 (31)	187,352 (61)	320,000	317,038	+129,686

주: () 안은 비중(%)임
출처: 저자 작성

〈표 IV-4〉 201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급여총계		결정세액		납세 인원 비율	급여 대비 결정세액 비율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총급여 규모별						
~1천만원	3,610,221	18,061,703	59	56	0.00%	0.00%
1천~2천만원	4,046,838	61,312,400	1,438,980	68,699	35.56%	0.11%
2천~3천만원	2,930,090	72,788,069	1,920,043	363,956	65.53%	0.50%
3천~5천만원	3,288,158	128,638,319	2,480,472	2,256,639	75.44%	1.75%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년

14) 2015년 연말정산 신고현황 중 총급여 3천만원에서 5천만원 구간의 평균치를 사용함. 국세 통계연보에서 일용근로소득의 과세구간이 3천만원 이상으로만 제시되어 있어 3천만원 이상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분포는 알 수 없지만, 해당 구간의 1인당 일용근로소득액이 4,200만원이므로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의 평균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 판단함

가. 장점

일용근로소득을 종합과세하게 되면, 현재 상용근로소득의 과세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므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자가 많아지는 것일 뿐 새로운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큰 혼란이 예상되지는 않는다.

동 방안은 기존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포기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상'인 구간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세부담이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적으로 706억원의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 특히 일용근로소득이 '1,300만원 이하'인 경우 세부담이 없어져서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가벼워지고, '3,000만원 이상'이면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응능과세원칙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일용근로자 중 상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약 300만명에 대한 종합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서 누진세의 적용을 받아 실질적인 소득수준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진다.

또한 두 번째 문제였던 일용근로소득자 내부의 수평적·형평성 문제도 종합과세하에서는 발생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나. 단점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기본적으로 일급·시간급의 특성을 가지는데 세금의 부과기준이 이와 달라지면서 연말정산의 의무가 부여된다. 하지만 일용근로자는 그 정의와 같이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이므로 고용기간과 과세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연말정산기간에 고용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기간에 신고를 해야 한다. 홈택스가 잘 갖추어져 있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진행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일용근로자가 종합소득신고 경험이 없을 것이므로 납세 및 환급 절차상의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제도 정착에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기본적으로 일급·시간급의 특성을 가지는데 세금의 부과기준이 달라지면 연말정산의 의무가 부여된다.

일용근로소득
과세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려는 소득세법의
기본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IMF를 거치며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으로 비정규직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5년 일용근로자는 800만명, 일용근로소득은 58조원이나 된다. 하지만 상용근로소득에 가려 정부정책이나, 입법, 그리고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2011년 이후 일용근로소득 관련 법률은 현실에 맞게 개정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의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며 내부의 양극화가 진행되어 고소득 일용근로자는 자신들의 부담능력에 비해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의 기본 정책목적은 낮은 임금수준, 불확실한 고용환경, 열악한 복지혜택에 놓여있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소득을 보호해줌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도우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현행 과세체계하에서는 상용근로자에 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애초의 입법목적에 맞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그 방안으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과, 상용근로소득자와 같은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용근로자의 부양가족의 특성에 맞게 노령자,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공제를 해주거나,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을 고려하여 납부한 사회보험료에 대하여 공제해준다면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지고 사회보험의 틀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3,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일용근로자와 사업소득이나 상용근로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의 분리과세 제도의 개편도 고려할 수 있다.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기타소득과 같이 일용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는 일용근로소득을 상용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있다.

일용근로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일용근로소득 과세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려는 소득세법의 기본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08.
_____, 『지역별 고용조사』, 2016.

소득계층 이동과 빈곤에 대한 소고*

I. 서론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sjyoon@kipf.re.kr)

오랜시간 동안 빈곤은 정책 입안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이었다. 이는 빈곤이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절대적 빈곤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많이 해소되었으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분포의 악화와 사회 이동성의 감소 등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 사회에서 사회 이동성과 소득계층 이동성이 약화 또는 감소된다는 것은 그 사회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은 중산층 감소와 양극화 문제를 심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드러난 바 있다.

김성태 외(2012)에서는 소득 이동성의 감소가 장기적으로 중산층을 붕괴하고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Berge et al.(2012), 신관호·신동균(2014) 등 국내외 여러 연구들에서는 소득분포가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영향의 크기와 강건성 또한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희삼(2015)과 원종학(2013)에서는 소득계층 이동성의 약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계층 간 이동성이 낮다는 것은 그 사회의 공평성과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에서는 지대추구행위가 아닌 개인의 노력과 그 결과로 인해 사회 이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 본고를 심화·발전시킨 논문을 재정패널 학술대회(2017.9.15)에서 발표함 <필자 주>

즉, 사회 이동성과 소득계층 이동성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의 시발점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개입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계층과 소득계층의 고착화 문제 중에서도 빈곤의 고착화는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정책적 개입 및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다. 가난의 대물림으로 인해 빈곤층 자녀의 잠재력을 사회가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¹⁾ 빈곤의 고착화는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생산적·효과적으로 투자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소득계층 및 빈곤의 이동성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II. 소득분포 현황

소득계층 간 이동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의 소득불평등도 추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개입 이전인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는 2006년 0.330에서 2009년 0.345까지 증가하였다가 2013년 0.336으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는 다시 0.353 수준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²⁾ 정부의 개입으로 볼 수 있는 조세와 사회보험료 등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의 경우에는 2006년 0.306에서 2008년 0.314로 상승 후 2015년까지 0.295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상승으로 인해 0.304 수준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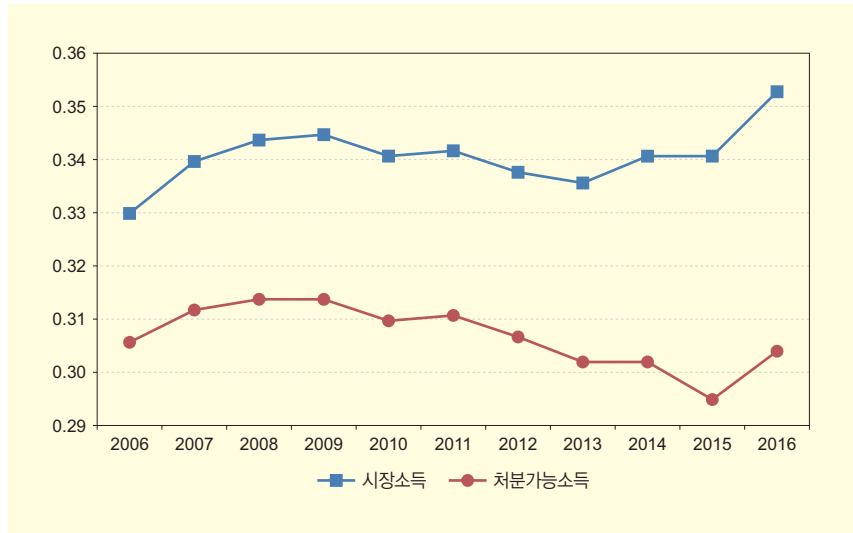
**빈곤의 고착화는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생산적·효과적으로
투자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소득계층 및 빈곤의
이동성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 김희삼(2015)

2) 저소득층의 일용직·임시직 일자리 감소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이 2016년 지니계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6166.html)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로 정의되는 조세,
사회보험료 등과 같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소득분포 개선의 효과는
2006년 0.024에서
2016년 0.049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지니계수로 살펴본 소득불평등도 추이(2006~2016년)



주: 1. 가계동향조사 기준
2. 지니계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수이며, 0은 완전 평등, 1은 완전 불평등을 의미
출처: 통계청(<http://kosis.kr>).

즉, 2012년까지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가 유사한 모습으로 변화하지만 2013년부터는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로 정의되는 조세, 사회보험료 등과 같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소득분포 개선의 효과는 2006년 0.024에서 2016년 0.049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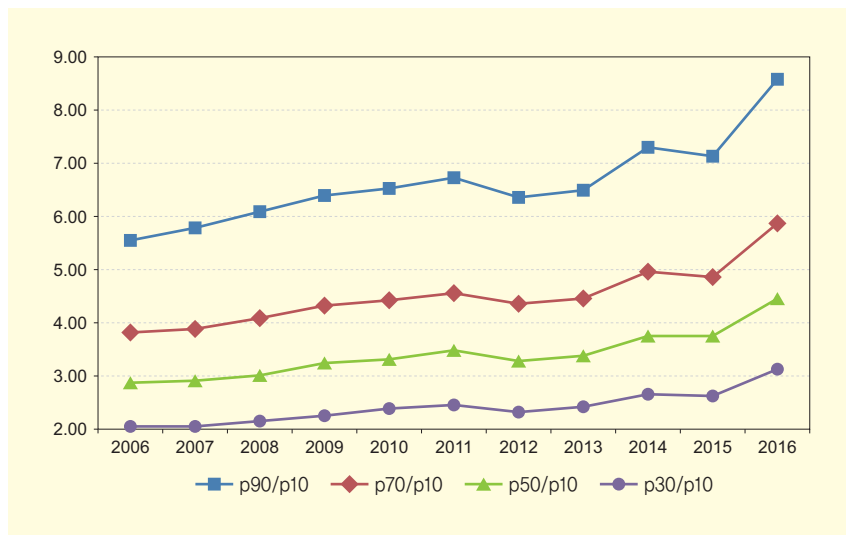
다음으로 상대적 소득수준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2]에서 보듯이 소득 1분위 대비 3분위·5분위·7분위·9분위의 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 소득계층 대비 최고 소득계층의 배율로 볼 수 있는 p90/p10은 2006년 5.57배에서 2016년 8.6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동 기간 p70/p10, p50/p10, p30/p10은 각각 3.84배, 2.88배, 2.06배에서 5.87배, 4.45배, 3.1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이 더욱

3) OECD 국가의 평균을 살펴보면, 지니계수의 절대치는 우리나라 보다 높은 수준지만,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출처: OECD stat.)

OECD 평균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시장소득(A)	0.466	0.458	0.462	0.47	0.475	0.474	0.475	0.475	0.457
	가처분소득(B)	0.317	0.305	0.309	0.31	0.31	0.312	0.311	0.311	0.336
	A-B	0.156	0.159	0.158	0.161	0.17	0.162	0.164	0.163	0.121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p90/p10 + 3.04p$ 배, $p70/p10 + 2.03p$ 배, $p50/p10 + 1.57p$ 배, $p30/p10 + 1.09p$ 배 증가하여 1분위 대비 9분의 소득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상대적 소득수준 추이(2006~2016년)



주: 1. 가계동향조사 기준
2. 시장소득 기준이며, pA는 A분위 소득의 경계값으로 A분위 계층 중에서 최대 소득값을 의미
출처: 통계청(<http://kosis.kr>).

또한 $p70/p10$ 과 $p90/p10$ 의 차이가 $p70/p10$ 과 $p50/p10$, $p50/p10$ 과 $p30/p10$ 의 차이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이 고 소득층으로 편중되어 있는 정도가 높으며, 그 정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는 소득불평등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지니계수를 개선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수행하였으나, 시장에서의 분위별 소득격차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간의 정부정책이 사후적으로 시장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사전적 차원에서의 시장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는 소득불평등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지니계수를 개선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수행하였으나, 시장에서의 분위별 소득격차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층인
2분위와 3분위의 경우,
다음 기에 각각 3분위와
4분위로 이동할 확률보다
1분위와 2분위로
이동할 확률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Ⅲ. 소득계층 이동 및 빈곤 추이

소득 이동성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소득이행행렬(income transition matrix)을 통해 상대적 이동성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표 1>에 제시된 소득10분위별 이행행렬 결과에 의하면 2007~2015년 동안 평균적으로 소득분위의 이동이 없었을 확률이 40.4%로 나타나며,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의 확률은 각각 30.1%와 29.5%로 나타나고 있다.⁴⁾

<표 1> 소득10분위별 이행행렬(2007~2015년)

(단위: %)

	2007~2015년											하향 이동	불변	상향 이동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총계			
1분위	57.91	22.44	8.09	4.17	2.55	1.59	1.21	0.91	0.70	0.43		-	57.9	42.1
2분위	22.70	40.46	19.31	8.58	3.54	1.97	1.86	0.85	0.32	0.40	100	22.7	40.5	36.8
3분위	7.67	19.07	34.66	18.96	8.88	4.83	2.65	1.34	1.05	0.89	100	26.7	34.7	38.6
4분위	4.37	7.93	17.78	30.77	18.43	10.34	5.44	2.76	1.12	1.07	100	30.1	30.8	39.2
5분위	2.78	4.27	9.33	17.54	29.93	18.14	9.59	4.98	2.28	1.15	100	33.9	29.9	36.1
6분위	2.01	2.50	4.54	9.75	18.43	29.17	18.45	9.27	4.35	1.53	100	37.2	29.2	33.6
7분위	1.50	1.39	3.15	4.43	10.26	17.55	31.87	19.53	7.69	2.62	100	38.3	31.9	29.8
8분위	1.31	1.45	1.45	3.05	4.85	8.68	17.04	35.23	20.92	6.03	100	37.8	35.2	27.0
9분위	0.83	0.48	1.28	1.44	2.59	4.14	7.51	18.59	45.17	17.98	100	36.9	45.2	18.0
10분위	0.60	0.63	0.76	0.85	1.34	1.80	3.11	5.62	16.59	68.70	100	31.3	68.7	-
총계	10.15	10.09	10.1	10.0	10.13	9.84	9.87	9.89	9.98	9.93	100	29.5	40.4	30.1

출처: 재정패널조사(NaSTaB) 제1~9차년도 자료

분위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t기에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에 속했던 가구가 (t+1)기에도 동일한 분위에 속할 확률은 각각 57.91%와 40.46%로 나타난 반면, t기에 고소득층인 10분위와 9분위에 속했던 가구가 (t+1)기에도 동일한 소득분위에 머무를 확률은 각각 68.70%와 45.17%로 나타나고 있어 고 소득층의 유지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인 2분위와 3분위의 경우, 다음 기에 각각 3분위와 4분위로 이동할 확률보다 1분위와 2분위로 이동할 확률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2분위와 3분위는 인접분위로 하향 이동할 확률이 상향 이동할 확률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⁵⁾

4) 본고의 분석에 이용된 소득은 재정패널조사(NaSTaB)의 경상소득이며,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주는 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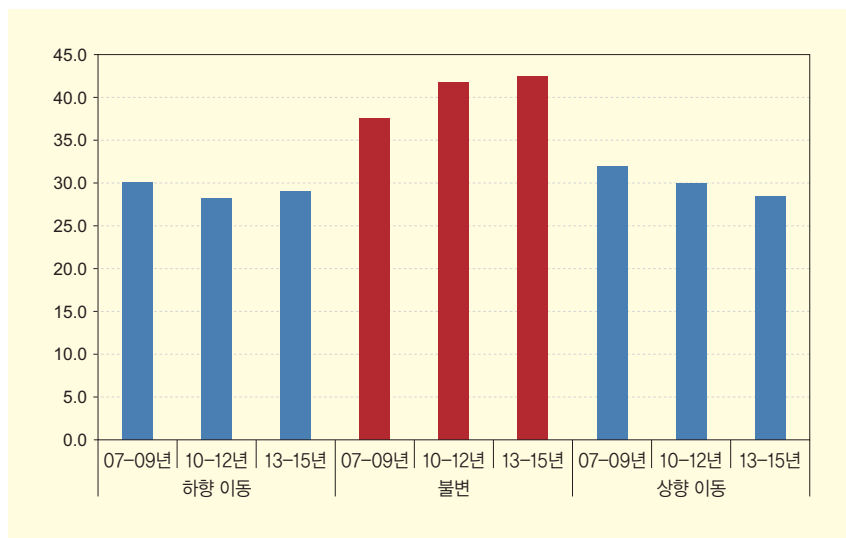
5) 9분위의 경우에도 인접분위로 하향 이동할 확률이 더 크지만 그 성격이 상이함

다음으로 2007~2015년 기간 동안의 움직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07~2009년, 2010~2012년, 2013~2015년으로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그림 3]). 먼저, t 기와 $(t+1)$ 기에 동일한 소득분위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37.6%→41.8%→42.5%로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향 이동할 확률은 32.1%→30.1%→28.4%로 낮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반면, 하향 이동할 확률은 30.2%에서 28.1%로 다소 낮아졌으나 29.2%로 다시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불변 또는 하향 이동한 확률이 67.8%→69.9%→71.7%로 증가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 이동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불변 또는 하향 이동한 확률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 이동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3] 소득 이동성 방향 추이

(단위: %)



출처: 재정패널조사(NaStaB) 제1~9차년도 자료

2007~2009년, 2010~2012년, 2013~2015년 세 기간에 대해 소득분위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듯이 1분위의 경우 t 기와 $(t+1)$ 기에 동일분위에 속해 있을 확률이 53.0%→59.9%→61.8%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증가율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 기간에 10분위가 동일 분위에 속해 있을 확률 또한 67.0%→69.4%→69.9%로 그 수준이 높고 증가추세에 있으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향 이동 확률의 감소가
2분위와 3분위
각각 -5.5%p와
-5.7%p로 다른 분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으로 1분위가 상향 이동할 확률과 10분위가 하향 이동할 확률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분위와 3분위의 경우 상향 이동 확률이 하향 이동 확률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향 이동 확률의 감소가 2분위와 3분위 각각 -5.5%p와 -5.7%p로 다른 분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3개의 기간 동안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지니계수는 0.343→0.340→0.339로 낮아졌으나, 동기간 소득 이동성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소득 이동성 분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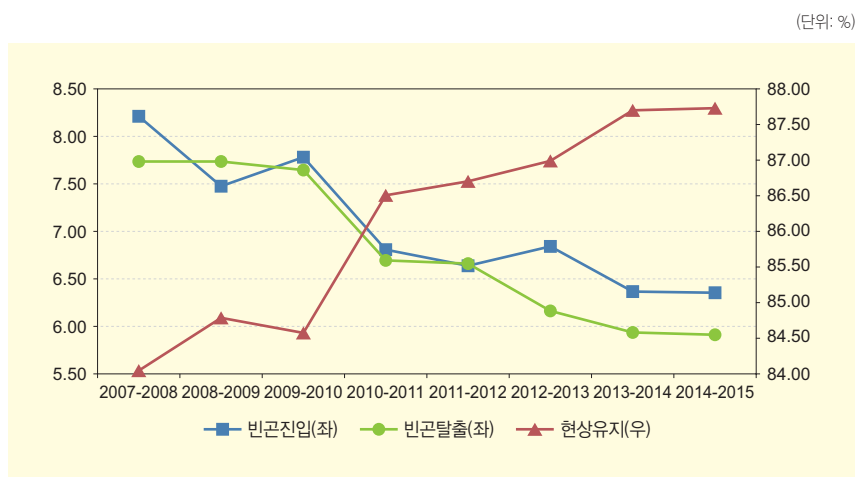
	2007~2009년			2010~2012년			2013~2015년		
	하향 이동	불변	상향 이동	하향 이동	불변	상향 이동	하향 이동	불변	상향 이동
1분위	-	53.0	47.0	-	59.9	40.1	-	61.8	38.2
2분위	21.3	38.5	40.2	21.3	41.3	37.5	23.8	41.5	34.7
3분위	28.1	31.4	40.5	26.5	34.8	38.7	27.1	38.1	34.8
4분위	31.4	26.1	42.6	28.8	33.4	37.8	28.2	32.9	38.9
5분위	36.8	25.8	37.4	31.0	31.0	38.0	32.9	32.8	34.3
6분위	39.6	26.7	33.7	34.6	31.8	33.6	36.4	31.4	32.1
7분위	37.2	30.5	32.3	34.9	35.2	29.9	40.4	31.5	28.2
8분위	37.6	34.4	28.0	38.5	35.0	26.6	37.2	37.3	25.6
9분위	37.2	42.9	19.9	34.9	46.5	18.6	35.5	47.5	17.1
10분위	33.0	67.0	-	30.6	69.4	-	30.1	69.9	-
총계	30.2	37.6	32.1	28.1	41.8	30.1	29.2	42.5	28.4
시장소득 지니계수평균	0.343			0.340			0.339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평균	0.313			0.309			0.300		

출처: 재정패널조사(NaSTaB) 제1~9차년도 자료

다음으로 소득 하위 1~3분위를 빈곤으로 정의하고, 2007~2015년 동안 t 기에서 (t+1)기로 이동과정에서의 빈곤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빈곤진입률 7.06%, 빈곤유지율 86.13%, 빈곤탈출률 6.81%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4]에서 보듯이 빈곤진입률과 빈곤탈출률은

2007→2008년 각각 8.21%, 7.73%에서 2014→2015년 6.36%, 5.91%로 감소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빈곤유지율의 경우에는 2007→2008년 84.05%에서 2014→2015년 87.73%로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빈곤의 고착화가 심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⁶⁾

[그림 4] 빈곤진입률 및 빈곤탈출률 추이



주: 빈곤은 가구 수를 반영한 경상소득 3분위 이하를 의미
출처: 재정패널조사(NaSTaB) 제1~9차년도 자료

요컨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지니계수는
낮아졌으나,
동 기간 소득 이동성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IV. 소득계층이동 및 빈곤에 대한 실증분석

여기서는 재정패널조사(NaSTaB) 제1~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이동 중 빈곤층(1~3분위)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먼저 살펴본다. 조사에 이용된 표본은 6,176가구 43,615개 관측치이며, 불균등패널(unbalanced panel)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표 3〉에서는 분석에 이용된 자료의 기초통계량을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빈곤층으로 볼 수 있는 1~3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62.9세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높고, 초기에 빈곤상태에 있었을 확률이 높으며,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빈곤층 가구 중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가 40% 수준이며, 가구주가 상

6) 2007년과 2015년 2개 연도에 근거한 소득이행행렬 분석에는 두 기간 사이의 긴 시간으로 인해 불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저소득층의 불변확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2·3분위의 인접분위 이동확률도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7) 빈곤의 결정요인을 동태적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 Probit 모델과 CCRE(conditionally correlated random effects)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소득과 관련된 변수에 대해서는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였다. 즉, 종속변수 y 는 빈곤 여부에 대한 것으로 잠재변수 y^* 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빈곤인 상태로 정의한다;

$y_{i,t} = 1 \{y_{i,t}^* \geq 0\}$ 이며, 여기서 i 는 가구, $t=1,2,\dots,9$ 는 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잠재변수 y^* 는 초기 및 지난기($t-1$)의 빈곤여부에 대한 정보 등의 함수이며 $y_{i,t}^* = \rho y_{i,t-1} + c'_{i,t} \beta + \epsilon_{i,t}$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epsilon_{i,t}$ 는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과 순수한 임의의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epsilon_{i,t} = \alpha_i + u_{i,t}$, $u_{i,t} | \cdot \sim N(0, \sigma_u^2)$,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α_i)은 초기의 빈곤 여부 등을 포함하는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alpha_i = \alpha_0 + \alpha_1 y_{i,1} + z' \alpha_2 + \eta_i$, $\eta_i | \cdot \sim N(0, \sigma_\eta^2)$.

8) '연령'의 추정치가 0보다 작고, '연령×연령' 추정치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은 낮으나, 특정 임계치 이후에는 다시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초통계량에 나타난 빈곤층(1~3분위)의 평균 연령이 높다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요컨대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층에 속할 확률은 낮으나, 특정 연령 이상 가구주의 경우에는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용직인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가족 중 취업한 가족구성원의 수도 평균적으로 1명에 미달하는 0.7명 수준이다. 또한 빈곤층은 가구당 118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는 4~7분위의 2.3배, 8~10분위의 3.2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소득분위별 주요 특성

	1~3분위	4~7분위	8~10분위
[가구] 초기상태(1=빈곤상태)	0.7	0.2	0.0
[가구주] 연령(세)	62.9	49.8	48.3
[가구주] 교육수준(1=고졸)	0.3	0.4	0.3
[가구주] 교육수준(1=전문대졸 이상)	0.1	0.4	0.6
[가구주] 성별(1=여자)	0.4	0.2	0.1
[가구주] 종사상 지위(1=상용직)	0.1	0.5	0.7
[가구주] 혼인상태(1=배우자)	0.7	0.8	0.9
[가구] 취업가족 수(명)	0.7	1.3	1.6
[가구] 정부지원금(만원)	118.0	51.0	37.1
[가구] 금융자산(만원)	931.4	1,391.9	3,701.1
[가구] 부동산·기타자산(만원)	9,418.2	13,288.4	27,841.1
[가구] 부채총액(만원)	845.2	1,235.5	2,875.2

주: 정부지원금에 공적연금 수령액은 포함되지 않음

빈곤 여부에 대한 회귀분석⁷⁾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초기 및 전기의 빈곤 상태 여부와 가구주 및 가구의 다양한 특성이 현재의 빈곤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서 관측되는 첫 번째 관측치가 빈곤상태에 있을 경우, t 기에도 빈곤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t-1)$ 기에 빈곤상태에 있었던 가구가 t 기에도 빈곤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게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빈곤상태에 있을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빈곤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남성인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빈곤층에 속해 있을 확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가족 중에서 취업한 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지원금의 경우에는 빈

곤층 여부에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한계효과의 크기가 매우 작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으로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요컨대 빈곤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효과(Average Partial Effects; APE)의 크기를 살펴보면 초기의 빈곤 여부, 전기의 빈곤 여부, 취업 가구원의 수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빈곤의 결정요인

변수	CCRE	APE
[가구] 초기상태(1=빈곤상태)	0.9346***	0.1351***
[가구] t-1기 빈곤상태 여부	0.7655***	0.1106***
[가구주] 연령(세)	-0.0473**	-0.0068**
[가구주] 연령×연령	0.0005***	0.0001***
[가구주] 교육수준(1=고졸)	-0.2280***	-0.0330***
[가구주] 교육수준(1=전문대졸 이상)	-0.4358***	-0.0630***
[가구주] 성별(1=여성)	0.1034*	0.0149*
[가구주] 혼인상태(1=배우자)	-0.0592	-0.0086
[가구주] 종사상 지위(1=상용직)	-0.3574***	-0.0517***
[가구] 취업가구원 수(명)	-0.7900***	-0.1142***
[가구] 정부지원금(만원)	-0.0011***	-0.0002***
상수	-0.4152***	
관측치 수	36,922	
Log pseudo likelihood	-11,159.4	

주: 1. 분석에 이용된 변수 중 주요 변수만을 선별하여 제시

2. * $p < 0.05$; ** $p < 0.01$; *** $p < 0.001$

다음으로는 빈곤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표본에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여 균등패널을 구성하고, 빈곤경험 횟수에 따라 그룹을 구분하였다.⁹⁾ 또한 NaSTaB 제1~9차까지 조사에 모두 포함된 3,563가구를 대상으로, 제2~9차 조사기간 중 가구가 경험한 빈곤의 경험 횟수에 따라 Group을 A에서 E로 5개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Group A는 8기간 동안 빈곤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가구이며, Group B, C, D는 각각 1~2회, 3~4회, 5~6회 빈곤을 경험한 가구들이며, 마지막으로 Group E는 8기간 동안 7~8회 빈곤을 경험한 가구를 의미한다.¹⁰⁾

요컨대 빈곤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효과의 크기를 살펴보면 초기의 빈곤 여부, 전기의 빈곤 여부, 취업 가구원의 수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 빈곤층 진입 결정요인 부분과 다르게 빈곤의 지속성과 관련해서는 균등패널을 구성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정해진 기간에 경험한 빈곤의 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1~9차까지 조사에 모두 포함된 가구를 표본으로 구성하였다.

10) 8기간 동안의 빈곤경험 횟수를 추정하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빈곤의 지속기간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당한 분석을 위해서는 survival model 등을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본고에서는 8개의 정해진 기간에서의 분석이므로, 빈곤경험의 횟수가 많을수록 빈곤의 지속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의 지속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정 나이 이상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빈곤경험 횟수에 근거한 Group 구분

	빈곤경험 횟수	빈도	비율
Group A	0	1,539	43.19
Group B	1~2	644	18.07
Group C	3~4	385	10.81
Group D	5~6	336	9.43
Group E	7~8	659	18.50
총 계		3,563	100

빈곤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ordered probit 모형¹¹⁾을 이용하였으며, 가구 및 가구의 특성은 t=1기의 관측내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¹²⁾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는데 빈곤 여부에 대한 결과와 유사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표 6〉 빈곤의 지속성 결정요인 분석(한계효과)

	Group A	Group B	Group C	Group D	Group E
[가구] 초기상태(1=빈곤상태)	-0.372***	-0.058***	0.065***	0.130***	0.236***
[가구주] 연령(세)	0.018***	0.000	-0.005***	-0.006***	-0.008***
[가구주] 연령×연령	0.000***	0.000	0.000***	0.000***	0.000***
[가구주] 교육수준(1=고졸)	0.129***	-0.004	-0.034***	-0.043***	-0.049***
[가구주] 교육수준(1=전문대졸 이상)	0.266***	-0.019***	-0.070***	-0.084***	-0.092***
[가구주] 성별(1=여자)	-0.059**	-0.003	0.014**	0.021**	0.027**
[가구주] 혼인상태(1=有배우자)	0.115***	0.013	-0.025***	-0.042***	-0.061**
[가구주] 종사상지위(1=상용직)	0.173***	-0.003	-0.045***	-0.058***	-0.068***
[가구] 취업가족원 수(명)	0.068***	0.001	-0.017***	-0.023***	-0.028***
[가구] 정부지원금(만원)	0.000**	0.000	0.000**	0.000**	0.000**

주: * p<0.05; ** p<0.01; *** p<0.001

- 11) 빈곤경험 빈도를 반영하는 잠재 변수 y^* 는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X)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identification을 위해 상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y^* = X'\beta + u_i$. 그리고 가구 및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잠재변수가 포함되는 범위에 따라 잠재변수는 Group A에서 Group E 중 하나의 그룹에 속하게 된다:
- $y_i = j$ if $\theta_{j-1} < y^* \leq \theta_j$, $j=1, 2, 3, 4, 5$. 여기서 $\theta_0 = -\infty$ 이고 $\theta_5 = +\infty$. 예컨대 Group A에 속하는 가구 $i=k$ 는 $-\infty = \theta_0 < y_k^* \leq \theta_1$ 에 포함되어 $y_k=1$ 로 나타나며, Group E에 속하는 가구 $i=l$ 은 $\theta_4 < y_l^* \leq \theta_5 = +\infty$ 에 포함되어 $y_l=5$ 로 나타난다.
- 12) t=1기의 정보를 바탕으로 t=2기 이후의 빈곤경험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이는 현재 시점을 1기로 가정하고 그 이후의 빈곤경험에 대해 추정하는 것이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의 지속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정 나이 이상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t=1기에 빈곤을 경험한 가구가 8기간 동안 빈곤을 7~8회 경험할 확률은 t=1기에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보다 23.6%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고, 여성일수록, 그리고 취업 중인 가구원의 수가 적을수록 빈곤의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금과 빈곤의 지속성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크기는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지난 10여 년 동안 시장소득 지니계수로 측정된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의 소득불평등도는 큰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정부정책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저소득층 대비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시장소득은 동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정부의 정책효과가 시장에서의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만큼 작동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소득이행행렬을 통해 소득 이동성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소득계층 이동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소득 이동성이 나타나지 않고 동일 분위에 머무르는 비중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이고, 상향 이동의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의 활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현재 심화되고 있는 중산층 붕괴 및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정성, 공평성 및 투명성도 악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¹³⁾

빈곤지위 이동성의 경우에는 2007년 이후 빈곤진입과 빈곤탈출의 확률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빈곤상태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증가추세여서 빈곤의 고착화가 심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 수행한 빈곤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과 빈곤의 지속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게,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성별, 상용직 여부 및 취업가구원의 수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이를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장기적 측면에서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초기의 빈곤 여부 및 전기의 빈곤 여부가 현재의 빈곤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빈곤가구

**소득계층의
이동성 확대 및
빈곤의 고착화 방지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개입,
특히 일자리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3) 본고에서 분석한 내용은 상대적 개념에 근거한 것으로 절대적 개념에서의 분석내용은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음

**빈곤층 가구의 환경,
특성 등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부의 지원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 및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의 지원금이 빈곤의 결정에 경제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분석결과는 현 제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빈곤층 가구의 환경, 특성 등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¹⁴⁾을 통해 정부의 지원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성태·전영준·임병인, 「우리나라 소득 이동성의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제60집 제4호, 2012, pp. 5~43.
- 김희삼,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KDI Focus』, 통권 제54호, 2015.
- 신관호·신동균,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한국경제의 분석』, 제20권, 제1호, 2014, 4.
- 원종학, 「소득계층 이동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8, pp. 6~21.
- 윤성주, 「소득계층 이동성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고찰」, 『2017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Berg, A., J. Ostry, J. Zettelmeyer, “What makes growth sustained?,”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98, 2012.

¹⁴⁾ 이를 위해 고령층가구, 근로가
능가구 등을 구분한 연구가 추
가적으로 필요



Richard H. Thaler 교수의 행동경제학에 대한 기여

이은경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2017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재정포럼』에서는 201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Richard H. Thaler의 업적을 평가해 보는 특집을 마련하였다. <편집자 주>

Richard H. Thaler 교수의 행동경제학에 대한 기여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2017년 노벨경제학상은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에 큰 공헌을 한 Richard H. Thaler(리차드 세일리) 교수에게 돌아갔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심리학적 특성을 경제학에 반영하여 전통 경제학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현상들, 예를 들면 손실회피적 성향, 현재를 더 중시하는 경향 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전통 신고전학과 경제학에서는 경제주체와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합리성, 완전 정보, 효용 극대화 등 여러 가지 단순화된 기본 가정들을 사용하는데, 행동경제학은 이러한 가정들에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실제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 자기통제 의지 부족, 자신의 효용만이 아닌 사회적 선호(공정성)를 고려하여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Thaler 교수는 이러한 심리학적 특성이 인간의 의사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실은 전통 경제학 모형이 예측하는 것과 체계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Thaler 교수가 행동경제학에서 기여한 점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대해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소유효과¹⁾(endowment effect)와 항목별로 예산을 분리하여 운영하므로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을 설명하는 심적 계정(mental accounting)을 제안한 것이다. 둘째, 인간은 자기통제 능력이 부족하여 현재의 행동이 미래의 계획과 일치할 수 없는데, 정책적으로 개인이 생애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넛지 이론(nudge theory)을 제안하였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퇴직연금 증대를 위해 401(k)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 변경 정책을 소개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선호, 특히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선호가 개인의 의

1) 학자들에 따라 부존효과, 보유효과 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재무학 분야의 창시자로서 인간의 심리적 특성은 시장에서 다른 경제주체들과 상호관계를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으며 투자자의 심리가 금융시장의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었다. 따라서 Thaler 교수의 업적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인접학문인 마케팅, 재무학, 법 등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문에서는 Thaler 교수가 가정한 세 가지 심리적 특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선행연구와 더불어 Thaler 교수의 업적을 보다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본문은 노벨상 공식 홈페이지에서 수상자의 업적에 대해 정리해 놓은 페이지를 토대로 Thaler 교수의 주요 논문과 저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II. 제한적인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Thaler 교수에 따르면 전통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가정과 달리 인간의 합리성은 제한적이며 그로 인해 소유효과와 심적 계정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소유효과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고, 심적 계정은 내부적으로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소비 항목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계산을 한다는 것이다.

1. 선행연구

폰 뉴만과 모젠슈타인(1944)은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핵심 모형인 기대효용이론(expect-

ed utility theory)을 고안하였다. 그러나 1951년 Maurice Allais(1988년 노벨경제학 수상자)는 인간의 실제 행동은 기대효용이론에서 예상한 것과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Herbert Simon(1978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개인은 생애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해가 아닌, 자기가 부여한 제약조건들을 만족시키는 해를 찾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Thaler 교수의 심적 계정 이론의 근간이 되고 있다.

심리학자이자 200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Kahneman & Tversky(1979)의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 따르면 개인은 위험이 수반되는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기대효용이론에서 예상했던 것에서 체계적으로 벗어나는 결정을 한다고 하였다. 전망이론의 4가지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은 부(소비)의 수준에서 효용을 얻기보다는 어떤 기준점(reference point) 대비 상대적인 이득과 손해에서 효용을 얻는다. 둘째, 개인은 위험 회피적 성향이 있어서 이득보다는 손실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셋째, 이득과 손해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이에 반응하는 민감도는 감소한다. 예를 들면 100달러라는 같은 이익(또는 손해)이 증가하더라도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증가하는 것이 10,100달러에서 10,200달러로 증가하는 것보다 효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넷째, 개인은 결과에 주관적인 확률 혹은 결정가중치(decision weight)를 부여하여, 작은 확률로 일어날 일은 과평가(overweighting)하고 높은 확률로 일어날 일은 저평가(underweighting)하는 경향이 있다.

Thaler 교수는 전망이론을 경제학에 접목시킨 최초의 경제학자이자, 준거점(reference point)과 손실회피적인 성향의 중요성을 보였다.

2. 손실회피성향에 의한 소유효과(endowment effects)

Thaler 교수는 1974년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베이 질문을 던졌다.

(a) 당신이 (만약 병에 걸리면) 일주일 안에 사망하는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었다고 가정하자. 질병에 노출 시, 실제 병에 걸릴 확률은 0.001%이다. 당신은 치료약 구입을 위해 최대로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b) 위 질병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지원자를 모집하고자 한다.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병에 걸릴 확률은 (a)와 같이 0.001%이다. 당신은 최소 얼마를 받으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겠는가?

두 가지 상황 모두 질병에 걸려 사망할 확률은 0.001%로 같지만 응답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조사결과, 치료약 구입(a)에는 200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고, 위험한 프로그램에 지원(b)하기 위해서는 10,000달러는 받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강을 판매(sell health)하는 데 필요한 보상(b)보다 건강을 구입(acquiring health)하는 데에 돈을 덜 쓰려고 하는 경향(a)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다른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소유하고 있는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동일 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더 낮은 가격에 하려는 경향이 있다. 신고전학과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지불가격

(willingness to pay)과 수용가격(willingness to accept)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Thaler 교수는 이를 전망이론으로 설명한다. 손실회피적 성향 때문에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잃는 손실은 자신이 가지지 않은 동일한 물건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이 필요한 것이다. Thaler 교수는 이를 소유효과로 명명하고, 이것이 지불가격과 수용가격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라고 해석하였다.

소유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는 직접 지불한 비용(out-of-pocket cost)과 기회비용의 차이이다.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직접 지불한 지출은 손실로 인식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기회비용은 발생할 수 있었던 이득(foregone gains)으로 인식하여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기업들은 마케팅 방법으로 이를 활용하는데, 신용카드 사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현금 거래자보다 신용카드 거래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한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하면 할인해 준다고 표현한다. 즉,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된 비용이 실현된 손실이라기 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이득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Thaler 교수가 전망이론을 사용하여 소유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후속 연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Tversky & Kahneman(1991)과 Koszegi & Rabin(2006)은 소유효과를 정식으로 이론 모형에 반영하였는데, 손실회피적 개인은 현재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득보다 손해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므로 현상유지를 선호한다. 이러한 현상유지 선호 편향(status-

quo bias)는 이후 논의될 연금저축 증대를 위한 디폴트 옵션 설계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소유효과는 재산권의 초기 배분이 마지막 자원배분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법 경제학의 초석이 된 코즈 이론(최종 자원배분은 거래비용과 소득효과가 없다면 초기 자원배분과 독립적이다)과 배치된다. 따라서 Thaler 교수는 법경제학에도 행동경제학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3. 심적 계정(mental accounting)

손실회피 성향에 따른 소유효과는 선호가 기준점(소유)에 의존하기는 하지만, 개인의 선호를 최적화한다는 점에서 전통 경제학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심적 계정은 제한된 인지력이 소비, 저축, 그리고 가구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심리학적 이론으로, 기존 경제학 이론(소비자의 후생 극대화)과 큰 차이가 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이 종합적이라기보다는 단편적이어서, 개인은 지출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관리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면 제한적 합리성을 지닌 개인은 의사결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지출항목을 가구, 음식, 옷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계정에 대해 독립된 회계로 접근한다. 각 계정은 각각의 예산이 있고, 독립된 기준점을 가지며, 계정 간 대체 혹은 이동을 제한한다.

이렇게 별도의 계정을 운영하는 것은 낭비를 막는 자기통제 기전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예금계좌에 저축한 돈이 있고, 신용카드 빚이 있는 사람을 가정하자. 신용카드 빚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예금계좌에 있는 저축으로 신용카드의 빚을 먼저 갚는데

사용해야 하겠지만, 자기통제가 부족한 사람은 빚을 갚은 후 또 다시 빚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예금을 별도의 계좌로 운영하고(현재 금액을 기준점으로 하여 현상유지), 이를 신용카드 빚을 갚는 데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즉, 두 계좌를 별도로 관리하여 돈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자기 통제 기제(commitment device)로 활용한다.

Hastings & Shapiro(2013)는 심적 계정에서 계정 간 돈의 이동이 제한적인 것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제공하였다. 2008년 일반 가솔린 가격이 50% 하락하였을 때, 소득효과로 인한 실질 소득 증대가 다른 재화의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불필요한 프리미엄 가솔린 수요를 증가시켜 계정 간 이동이 어렵다는 것을 보였다.

뉴욕 택시기사들의 노동 공급 결정도 심적 계정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뉴욕 택시기사는 스스로 오늘 벌어야 할 준거소득(reference point)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운전한다. 매일 독립적인 심적 계정이 있고, 택시에 대한 수요가 많은 날에는 목표달성이 빠르기 때문에 운전을 적게 하고, 수요가 적은 날에는 목표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운전을 오래 한다. 결국 뉴욕의 택시 운전기사는 노동의 시간당 임금이 높은 날 노동공급을 줄이고, 시간당 임금이 낮은 날 오히려 노동공급을 늘리는데, 이는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과 배치된다.

심적 계정의 준거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통 경제학에서 예상하는 소비의 결정과 다른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개인이 소비를 통해 얻는 효용에는 구입 효용(acquisition utility)과 거래 효용(transaction utility)이 있다. 구입 효용은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와 비슷한 개념으로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

에서 지불가격을 뺀 수치이다. 반면 거래 효용은 지불가격에서 기준가격(소비자가 기대한 혹은 정당하다고 느끼는 가격으로 예를 들면 인터넷 최저가)을 뺀 값이다. 따라서 거래 효용은 소비자가 좋은 가격(good deal)에서 얻는 부가적인 가치 혹은 나쁜 가격(bad deal)에서 얻는 효용의 손실을 반영한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소비자 잉여가 0보다 크면 소비를 하게 되지만, 행동 경제학에서는 소비자 잉여가 0보다 크더라도 예상보다 가격이 부당하게 높으면, 즉 나쁜 가격이면 구입을 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III. 자기조절능력의 한계(limited self-control)

전통 경제학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소비량을 결정하는 시점 간 선택(inter-temporal choice)을 모형화 하기 위해 Fisher(1930)와 Samuelson(1937)의 지수할인모형(exponential discounting model)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는 선호 역전이나 자기통제 기전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Thaler 교수는 인간은 인지력, 자기조절 능력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자유주의적 개입(libertarian paternalism)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된다. 이는 정책결정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넷지 이론을 이용하여 국민후생을 증진시키는 정책적 틀을 제공하였다.

1. 선행연구

철학, 심리학, 사회과학 등 다른 학문에서 인간 의지력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1960년대 심리학에서 월

터 미셜이 시도한 마쉬멜로 테스트이다. 마쉬멜로 테스트란, 지금 마쉬멜로 한 개를 선택하지 않고 미래 마쉬멜로 두 개를 기다릴 수 있는지를 자기통제력의 지표로 가정하여 성인이 된 후 교육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한 것이다. 사람들은 현재 소비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현재편향적 할인(hyperbolic discounting)을 한다. 현재가 아닌 미래에 저축을 더 하겠다고 미루는 현상, 금연, 금주,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내일로 계속 미루는 현상이 현재편향적 할인 모형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미래의 혹은 생애 전체의 효용극대화를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약간 포기해야 하는 행동을 계속 미루기 때문에 자기통제기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나 대학등록금 대비 저축 상품 판매, 과식하면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약이나 술을 마시면 혐오감을 일으키는 약제 개발 등이 모두 이러한 자기통제기전에 해당한다.

2. 계획자-행동자 모형(planner-doer model)

계획자-행동자 모형은 인간을 현재를 중시여기는 행동자와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자, 이렇게 두 가지의 양면이 있다고 가정한다. 계획자는 생애 효용을 극대화하는 반면, 행동자는 근시안적으로 오직 현재만 중시한다. 계획자가 생애효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의지력을 사용하여 행동자의 현재 소비를 줄이고 재량권을 축소하여야 한다. 현재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지력이 필요한데 이는 심리적 비용을 수반한다. Thaler & Shefrin(1981)은 자기통제 문제를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로

해석하였다. 계획자는 주인에 해당하고 행동자는 대리인과 매칭된다. 그리고 인간은 장기통제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통제 능력을 발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주도록 정부가 정책 옵션을 잘 설계하면 개인의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은퇴연금 가입을 의무가입으로 하는 것은 의지력을 발휘할 때 드는 심리적 비용을 절약하기 때문에 총연금저축을 증가시킨다.

3. 정책과의 연관성: 넛지 이론의 적용

인간은 인지적 능력과 의지력의 한계로 인해 개인이 늘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흡연을 그만두고 싶고, 은퇴 후를 생각해서 저축을 더 하고 싶지만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행동경제학은 장기적 관점에서 개인의 후생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고안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Thaler 교수는 법학자인 Cass Sustein과 함께 2008년 『넛지』라는 저서를 발간하고 자유주의적 간섭주의(libertarian paternalism)를 제안하였다. 자유주의적 간섭주의는 개인이 후생 극대화를 위해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소한의 간섭·개입을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개인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개입주의’이지만, 선택의 폭을 제한하지 않고, 선택의 종류를 강요하지도 않으며, 언제나 선택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자유주의’에 해당한다. Thaler & Sustein(2008)의 넛지 이론은 정부가 정책을 잘 설계

하여 국민이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부가 선호하는 옵션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비용(예를 들면 서류작성)을 치르도록 설정하였다.

넛지 이론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현재의 선택이 장기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연금, 의료, 교육 등 다방면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오바마 정부는 2015년 9월 15일에 국민을 더 잘 섬기기 위해 행동과학의 통찰력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executive order)에 사인하였다. 실제로 『넛지』의 공동저자인 Sunstein은 백악관의 정보규제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에서 4년간 복무하였고, 백악관 내에 사회행동과학팀(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team)²⁾을 창설하여 새로운 정책을 고안할 때 행동경제학적 틀을 적용하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넛지 방식은 전통 경제학에서 제안하는 정책적 틀(조세 인센티브 등 경제적 메커니즘)보다 효과적이므로 병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넛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도한 대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때 디폴트 옵션의 설계가 핵심이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결정 이후 다른 옵션으로 변동하지 않고 그대로 머무르기 때문이다. 디폴트 옵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는 의료, 연금 분야 등에서 찾을 수 있었다. 다음 예는 2008년 발간된 저서 『넛지』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먼저 디폴트 옵션을 효과적으로 설계하여 정책개입에 성공한 사례는 퇴직연금 저축률 증대 정책(스마트 프로그램)이

2) 51개 국가들이 이러한 넛지 유닛(nudge unit)과 비슷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디폴트 옵션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예로 메디케어 Part D가 있다.

가. 퇴직연금 제도: 401(k) plan

Thaler 교수는 퇴직연금의 낮은 저축률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401(k)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디폴트 옵션 변경을 제안했다. 당시 디폴트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면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동의방식, 즉 옵트인(opt-in) 방식이었고 이때 기여율과 투자운영방식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Thaler 교수는 퇴직연금에 자동가입(특정 저축률과 투자운영방식 명시)을 디폴트 옵션으로 하고 원하면 탈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가입방식, 즉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행동경제학에서 제안한대로 옵트아웃 방식으로 전환하자 퇴직연금 가입률은 49%에서 86%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Madrian & Shea, 2001). 그리고 옵트아웃 방식에서 탈퇴율은 옵트인 방식보다 0.3~0.6%p 높긴 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옵트아웃 방식 대신 퇴직연금 저축액을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가입 희망 여부를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고용 후 첫 월급을 받기 위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예 혹은 아니오로 체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선호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혹은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입 근로자 오리엔테이션에서 나누어주는 입사카드에 정해진 기여율과 투자방식하에서 퇴직연금 가입에 동의 혹은 비동의하는지 체크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선호 표출을 의

무화하여 퇴직연금 가입률은 9%에서 34%로 25%p 상승하였다. 이때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에게 더 많은 옵션(투자방식)을 줄수록 가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옵트아웃 방식에서 설정하는 기본 디폴트 기여율은 2~3%로 매우 낮고, 자산 운영방식도 매우 보수적이다. 그러나 관성 혹은 현상태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사람들은 처음 가입된 옵션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므로, 저축률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디폴트 옵션에서 제시하는 낮은 저축률에서 머무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Thaler & Benartzi(2004)는 사회 전반적으로 퇴직연금을 증대시킬 수 있는 Save More Tomorrow(SMarT) 프로그램을 고안하였다. 스마트 프로그램은 퇴직연금에 자동가입 및 임금인상시 연금기여율도 자동 인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스마트 프로그램의 특징은 첫째, 근로자는 임금인상이 발생하기 한참 전에 기여율 인상을 약속하고, 둘째, 기여율 인상은 임금인상 직후 첫 월급일자에 발생하도록 하여 집에 가져가는 임금 감소가 없도록 하며(손실회피적 성향 고려), 셋째 기여율이 미리 정해둔 최대치에 이를 때까지 임금인상일에 같이 인상되도록 설정하며(현상태 유지 선호 경향으로 인해 사람들이 현 플랜을 유지), 넷째, 근로자는 원하면 어느 때라도 이 플랜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마트 프로그램 가입이 퇴직연금 저축 인상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일대일 컨설턴트 면담을 제시한 후, 반응에 따라 네 개 그룹으로 나누어 향후 3년간 연금 기여율의 추이를 살펴보았다(<표 1> 참조). 그룹 1은 연금 기여율 인상 관련 컨설턴트와 면

답을 거절한 그룹인데 이들의 초기 기여율은 6.6%로 비교적 기여율이 높은 그룹이다. 그룹 1의 기여율은 이후 3년간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룹 2는 컨설턴트와 일대일 면담을 하고 임금의 5%p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기여율 인상을 즉각적으로 수용한 그룹이다. 면담자 중 25%가 기여율 인상에 즉각 동의했는데, 이들의 평균 기여율은 4%에서 9%로 증가하였고 이후 3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룹 3은 컨설턴트와 면담 후 즉각적인 기여율 인상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스마트 프로그램 가입(임금인상 시 기여율도 3%p씩 인상)에 동의한 그룹이다. 주의할 점은 이들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3.25~3.50%p로 기여율 인상보다는 약간 높기 때문에, 기여율 인상분을 제하고서도 집에 가져가는 임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룹 3은 가장 낮은 3.5%의 기여율에서 시작하였지만 3년 동안 4번의 임금인상을 경험하고 기여율이 13.6%까지 인상되었다. 마지막으로 컨설턴트와 면담 후 즉각적인 기여율 인상도, 스마트 프로그램 가입도 모두 거절한 그룹 4는 초기 기여율은 6.1%로 높은 편에 속했으나 향후 3년 동안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연금저축 인상이 가장 높았던 그룹은 컨설턴트와 일대일 면담을 받고 스마트 프

로그램에 참여하였던 그룹 3이다. 이는 퇴직연금 저축을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세미나 개최를 통한 정보 제공, 웹페이지에 접속해서 직접 기여율 변경 등)보다도 컨설턴트가 직접 면담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는 방식, 즉 절차를 간소화시켜 준 방식이 기여율 인상에 가장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넷지 이론에서 정부의 역할은 스마트 프로그램 가입 장벽을 낮추어주는 것이다. 1998년 6월부터 재무부의 연금정책 담당자는 401(k) 및 다른 연금저축의 자동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하여금 관련 규정을 발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스마트 프로그램 가입 기업에 규제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었다. 401(k) 퇴직연금에 자동가입 및 기여율 자동 인상을 디폴트로 하는 스마트 프로그램은 2006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연금보호법 통과 이후 410만명의 미국인이 스마트 프로그램에 가입했고, 2013년까지 연평균 퇴직연금이 약 76억달러 증가하였다. 영국도 최근 자동가입이 디폴트인 개인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는데, 탈퇴율은 12%에 불과했다. 덴마크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 본 결과, 자동 퇴직연금 가입 플

〈표 1〉 그룹별 연금기여율 추이를 통한 스마트 프로그램의 효과성 비교

(단위: %)

연금기여율	초기	1번째 임금인상 후	2번째 임금인상 후	3번째 임금인상 후	4번째 임금인상 후
그룹1: 컨설턴트 면담 거부	6.6	6.5	6.8	6.6	6.2
그룹2: 컨설턴트 면담 후 5%p 기여율 인상 수용	4.4	9.1	8.9	8.7	8.8
그룹3: 컨설턴트 면담 후 스마트 프로그램 가입	3.5	6.5	9.4	11.6	13.6
그룹4: 컨설턴트 면담 후 기여율 인상과 스마트 프로그램 가입 모두 거절	6.1	6.3	6.2	6.1	5.9

출처: Thaler(2015), Misbehaving, Figure 25(p. 318.)

랜은 다른 저축을 구축하지도 않고 부채를 증가시키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hetty et al., 2015).

나. 메디케어 파트 D(Medicare Part D)

2003년 부시 대통령의 메디케어 파트 D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의료보험)에서 처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처방약에 대한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방식은 민간 의료보험회사들이 수십개³⁾의 다양한 보험 플랜을 제시하고, 소비자(65세 이상 노인)가 가입 여부, 그리고 어떤 플랜에 가입할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디폴트 옵션은 미가입이었으며, 자동가입 대상인 일부 노인 그룹(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에 이중가입이 가능한 저소득층 그룹)은 보험 플랜을 선택하지 않으면 임의로 플랜이 배정되었다는 것이 메디케어 파트 D 정책 디자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메디케어에 처방약 커버리지를 추가하는 파트 D 가입을 동의해야 가입할 수 있는 옵트인 방식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노인들은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선택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수십개의 보험상품을 이해해야 하는 복잡성이 수반되어 오히려 가입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또한 메디케이드에도 가입가 능한 저소득층 노인들은 파트 D에 자동가입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복용해왔던 처방약을 살펴 보고 이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플랜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배정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같은 복용약을 가지고도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파트 D 가입을 위해 정보를 구하는 과정의 복잡성은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되었다. 자신에게 최적의 플랜을 찾기 위해서, 즉 복용하는 처방약 비용을 최소화하는 플랜을 추천받기 위해, 메디케어 웹페이지에서 도움을 얻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노인들은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고, 웹 페이지에 약의 종류(정확한 스펠링 요구), 약의 사이즈, 복용 빈도 등 입력해야 할 정보가 많다. 또한 이 모든 절차를 이행하면 최종적으로 세 개의 플랜을 소개해 주는데, 약값이 매달 변동하기 때문에 접속 시기에 따라 제안해 주는 플랜이 변화한다. 이렇듯 정보 획득의 어려움과 가이드라인의 부족 등으로 인해 가입을 미루거나, 필요한 약을 커버하는 보험상품을 찾지 못하고 잘못된 매칭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교육수준이 낮은 그룹에서는 자신이 필요한 플랜을 찾아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더욱 크다. 그리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동시가입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우, 임의배정 후 다른 플랜으로 변동하지 않고 정해진 플랜에 머물러 있는 성향이 크다. 따라서 약제비 지출이 증가하거나, 약제비를 감당하지 못해 필요한 약제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켜 정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메인(Maine) 주에서는 처방약 커버리지를 임의 배정(random assignment)하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인지하고, 개인을 위한 최적의 플랜과 매칭시키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배정 방식(int-

3) 주마다 처방약만 커버해주는 단독 플랜 혹은 메디케어와 연계된 플랜을 제시하는데 단독 플랜은 45~66개, 연계 플랜은 15~142개로 큰 편차가 있다.

elligent assignment)을 실시하였다. 효율적 매칭방식은 지난 3개월간 처방약 복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10개 정도의 적당한 플랜을 검토하고, 만약 커버리지가 복용약의 80%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플랜이 변동된다. 즉, 노인 개인에게 필요한 약의 최소 80% 이상을 커버해주는 보험 상품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다. 장기기증

장기기증은 1954년 신장기증을 시작으로 급속도로 증가해왔다. 기증받을 장기는 주로 뇌사자로부터 득하게 되는데, 미국 대부분의 주는 장기기증에 명시적인 승인이 필요한 방식(explicit consent rule)을 적용하고 있다. 명시적 승인 방식에서는 장기기증을 원하면 운전면허증에 체크하고 장기기증 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장기기증자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들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장기기증에 호감이 있어도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장기기증을 막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아이오와 주에서 조사해본 결과 97%의 사람들이 장기기증에 대해 호감을 보였으나 43%만이 자동차면허증의 장기기증 박스에 체크를 하였다. 또한 개인적으로 장기기증을 원한다고 답한 사람 중 64%만이 면허증에 체크하였고, 36%만이 장기기증 카드에 사인하였다.

장기기증을 활성화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국가가 개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보고 사망 시 가족 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적출하는 방법이 있다. 각막 기증이 그러한데, 몇몇 주에서 부검의에게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각막을 적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그 결과 각막이식이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조지아 주에서는 1978년 각막기증이 25개에서 1000개로 증가하였다.

장기기증을 활성화하는 또 다른 방식은 장기기증에 대해 명시적 동의가 아닌 암묵적 동의(presumed consent)로 디폴트 옵션을 바꾸는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모든 이가 장기기증에 동의하였다고 가정하고, 기증을 원치 않는다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등록 취소 절차는 매우 간편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Johnson & Goldstein(2003)은 다음 세 가지 방식의 장기기증 참여율을 비교해 보았다. 첫 번째는 동의 방식(장기기증을 하지 않는 것이 디폴트, 원하면 기증자로 가입하는 옵트인 방식), 두 번째는 자동가입 방식(장기기증을 하는 것이 디폴트, 원하면 기증자 리스트에서 탈퇴하는 옵트아웃 방식), 세 번째는 ‘장기기증을 하겠다’와 ‘하지 않겠다’ 두 가지 옵션 중 선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첫 번째 옵트인 방식에서는 42%만 장기기증을 선택하였고, 두 번째 옵트아웃 방식에서는 82%가 장기기증에 머물러 있고(18%만 탈퇴), 세 번째 선호표출을 강제화 하는 방식에서는 79%가 장기기증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장기기증에 대한 암묵적 승인뿐만 아니라 선호를 드러내도록 의무화하는 방식도 장기기증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명시적 승인이 디폴트이지만 유럽(예, 스페인,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등)에서는 암묵적 승인이 디폴트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유럽국가에서 장기기증 동의는 90% 이상인 데 비해 미국은 20%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암묵적 동의 방식이 장기기증 참여를 높이는 방식이지만, 이렇게 민감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철회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 반드시 장기기증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선호를 조사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수도 있다.

선택을 의무화하는 방식(mandated choice or prompted choice)은 운전자가 자동차 면허 갱신 시 장기기증을 원하는가에 대해 반드시 명시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선택지는 ‘장기기증을 원한다’ 혹은 ‘원치 않는다’ 두 가지이다. ‘잘 모르겠음’이라는 옵션을 주면 결정을 최대한 미루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답을 거부하거나 공란으로 두면 장기기증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한다. 만약 아무런 선택하지 않으면 장기기증 의사가 없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암묵적 동의 방식보다는 장기기증자가 적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다. 실제로 일리노이 주에서 강제적 선택 방식을 취하고 있고, 알래스카와 몬타나 주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장기기증률을 80%까지 높이는 데 성공하였다.

암묵적 동의나 선택의 의무화가 장기기증자 수를 늘리는 데 효율적인 방법이겠지만, 명시적 동의를 법으로 정한 대부분의 주에서도 간단한 절차로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가장 좋은 예로 2006년 일리노이는 개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하면 향후 장기기증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가족으로부터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치 않도록 하는 Illinois First Person Consent Registry를 만들었다. 현 시스템하에서는 면허증 뒤에 장기기증에 동의한다고 사인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고 가족이 원하면 장기기증을 취

소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온라인으로 동의가 가능하여 등록비용을 낮추고, 사회적으로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실천하고 있는 일임을 알렸다.⁴⁾ 또한 MySpace라는 SNS에 링크되도록 하여 내가 하는 선행을 다른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일을 보고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는 좋은 넋지의 예가 될 것이다.

IV.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

경제학에서 인간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가정하지만 공정성(fairness)과 형평성(equity)과 같은 사회적 선호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Thaler 교수에 따르면 공정성에 대한 선호로 인해 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고, 개인 간 상호관계에서도 공정성을 존중하고 다른 이가 공정성을 해칠 경우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징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1. 가격과 임금 선정에 있어서의 공정성(fairness)

로버트 솔로와 조지 알커로프는 기업이 불황기에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이유를 공정성에 대한 의식 때문으로 설명한다. Kahneman, Kne-

4) 미국인 중 장기기증을 받기 위해 97,000명이 대기 중인데, 4,700명이 일리노이 주민이고, 일리노이 주민 중 87%는 장기기증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60%는 등록하였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tsch & Thaler(1986b)는 전화 서베이를 통해 토론토와 밴쿠버 지역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철물점에서 눈치우는 삽을 15달러에 팔고 있다. 대형 눈보라가 온 이후 가게는 삽의 가격을 20달러로 인상하였다. 이는 완전히 공정하다, 수용가능하다, 불공정하다, 완전히 불공정하다 중 하나로 평가해 보시오.”

82%의 사람들이 삽의 가격을 올리는 것을 불공정하다고(very unfair or unfair) 응답하였다. 사람들은 거래의 기준을 현재 가격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기준점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즉, 시장에서 수요 충격이 왔을 때 수요 공급의 균형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부당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에서는 재화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가격 인상의 이유가 투입 재료비 인상 때문이라면 이를 수용하는 비율이 높는데, 시장 지배력 강화 때문이라고 하면 부당하게 인식한다. 따라서 가격은 수요 변화보다는 비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격 인하보다는 가격 인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기준점 대비 가격의 상대적 변화에 있어서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하다(구조화 효과: framing effects).⁵⁾ 예를 들어 새 차 가격을 200달러 인상해야 할 때, 정상가격이 200달러 인상되었다고 하는 것보다 정가에 대한 할인이 200달러 감소하였다고 하는 것을 덜 부당하게 받아들인다. 이는 손실 회피적인 성향 때문인데, 정가의 인상은 손실로 인식하고, 할인의 감소는 받

생할 수 있었던 이득의 감소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반면, 가격 인하는 정가의 하락보다는 할인으로 표현(framing)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할인이 사라지면, 즉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손실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도 공정성에 대한 선호가 경제적 임금(sticky wage) 퍼즐을 설명할 수 있다. 경기불황이 발생했을 때 기업은 명목임금 삭감을 주저하게 되는데, 이는 근로자가 임금삭감을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 근로자가 시간당 9달러를 받고 있었으면 일반적으로 9달러가 기준 임금이 된다. 경기침체가 발생하였을 때, 현재 근로자의 임금을 9달러에서 7달러로 낮추는 것은 현 근로자의 퇴사로 7달러에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더 부당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것은 같더라도 명목임금 삭감보다는 인플레이션하에서 동일한 명목임금 유지를 더 공정하다고 느끼는 화폐적 착각(money illusion)이 발생한다.

2. 개인간 상호관계에 있어서의 공정성

Thaler 교수는 독재자 게임(dictator game)이라는 실험을 통해 개인 간 상호관계에서 공정성 효과를 살펴보았다. 코넬대학교의 학부 심리학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20달러를 분배하고, 같은 수업을 듣는 불특정 1인과 나누어 갖게 된다고 하였다. 본인이 더 큰 액수를 갖도록 분배(18달러는 본인, 2달러는 상대방)하는 방식과 반반

5) 매우 위험한 수술을 앞두고 환자의 동의를 얻을 때, 의사가 환자에게 “이 수술 후 90%의 환자들이 5년 이상 생존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수술 이후 10%의 환자들이 5년 내 사망하였습니다”라고 고지하는 것보다 수술 동의를 받기 더 쉬울 것이다(Sunstein & Thaler, 2003).

씩 같은 액수로 분배(각 10달러씩)하는 방식 2가지 중 선택해야 한다. 실험결과, 76%의 학생이 돈을 10달러씩 공평하게 나누는 두 번째 방식을 택하여 개인은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공정성 혹은 형평성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만약 배분방식을 두 가지 옵션으로 제한하지 않고 독재자가 자유로운 방식으로 배분할 수 있다면, 평균적으로 독재자는 유산의 28%를 가져간다. 36%의 독재자만 이기적인 인간처럼 행동하여 모든 돈을 가져가고, 17%의 독재자는 돈을 똑같이 나누어 공평성에 대한 강한 선호를 드러내었다.

두 번째 실험은 징벌게임(punishment game)이다. 다른 수업에 가서 이전 수업에서 진행되었던 독재자 게임에 대해 설명한 다음 당신이 독재자 게임에 참여한 두 명의 학생 A, B와 짝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다. 이때 학생 A는 첫 번째 옵션(20달러 중 본인이 18달러를 갖고 2달러를 다른이에게 배분)을 선택한 학생이고, 학생 B는 두 번째 옵션(20달러를 반반씩 나누어 가짐)을 선택한 사람이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 어떤 선택을 하겠는지 질문하였다.

- 1) 본인이 5달러를 갖고, 학생 A는 0달러, 학생 B는 5달러를 가질 수 있다.
- 2) 본인은 6달러를 갖고, 학생 A는 6달러를 갖고, 학생 B는 0달러를 가질 수 있다.

첫 번째 옵션은 본인이 1달러를 덜 받게 되지만, 공정하게 나눈 다른 학생에게 상을 주고 이기적인 배분을 한 학생에게는 벌을 준다. 두 번째 옵션은 본인의 수익은 1달러 증가하지만, 불공평한 배분을 한 학생에게 상을 준다. 실험결과

74%의 학생들이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였다. 이는 20달러를 나누는 첫 번째 실험에서 불공정한 행동이 비록 자기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심지어 자신이 경제적 대가(1달러)를 치루더라도 불공정하게 행동한 이를 처벌하고자 함을 나타낸다.

Kahneman, Knetsch & Thaler(1986a)는 최후통첩 게임(ultimatum game)과 관련된 실험도 하였다. Player 1은 유산의 배분을 제안하고, Player 2는 제안을 수용 혹은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그 제안에 따라 돈을 배분하지만, 제안이 부결되면 두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실험결과, Player 1은 반반 배분을 제안하게 되며, Player 2는 그 제안을 수용하게 된다. 그러나 Player 1이 Player 2의 몫을 25% 미만으로 제시하게 되면 Player 2는 이를 거부한다. 즉, Player 2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자신에게 불공정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징벌하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불공정함을 징벌하려는 이러한 행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게 된다.

V. 결론

Thaler 교수는 행동경제학에 이론적 그리고 실증적 토대를 제공한 업적을 인정받아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행동경제학은 전통 경제학의 가정(완전 정보, 완벽한 합리성, 이기적으로 자기 효용만 극대화, 강한 자기통제 능력 등)에 대해 회의를 품고, 실제 인간의 심리적 특성(제한된 합리성, 자기통제 능력의 부족, 사회적 선호)을 가정하였다. 그 결과, 행동경제

학은 소유효과, 심적 계정, 계획자-실행자 모형, 공정성에 대한 선호 모형 등을 통해 전통 경제학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인간의 행동을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여 이해하려고 하였다.

행동경제학은 넋지 이론을 통해 많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활용되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넋지 이론은 정부가 디폴트 옵션을 잘 설계하여 제시함으로써 개인이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를 제안한다. 정부가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입 절차를 단순화하여 동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제안해야 하는데, 자동가입 원칙에 탈퇴 장벽을 만드는 옵트아웃 방식을 디폴트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인간은 현상태를 유지하려는 심리적 특성이 있으므로, 정부가 제안한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고 유지하게 될 것이다.

넋지 이론을 적용한 정책 성공사례로 퇴직연금 저축 증대를 유도한 스마트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미국의 401(k) 퇴직연금 가입과 기여율 인상을 목표로 하여 스마트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데, 퇴직연금에 자동가입을 디폴트로 하고 임금인상 시 기여율이 자동 인상되도록 연동하였다. 이때 정부가 유도한 결정을 철회(퇴직연금 탈퇴)하려면 작은 비용(서류 작성)을 치르게 하여 현상태를 유지하려는 인간의 심리로 인해 정부가 원하는 선택을 유지하게 된다.

최근 조세재정정책 분야에서도 행동경제학적 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08년 저서인 『넋지』에서 소개한 대표적인 예로서 납세 순응도(tax compliance) 제고나 학자금 대출 장려 정책을 들 수 있다.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판단했을 때, 주류 경제학에서는 경제적 인센티브(조세감

면 등)라는 정책적 틀을 사용하는데 행동경제학에서는 정책 디자인만 제대로 해주면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비용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미네소타 주에서는 납세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4개의 그룹에게 각각 납세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그룹의 납세 순응도가 가장 크게 향상되는지 측정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세금이 교육, 치안 등 다양한 좋은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다. 두 번째 그룹은 납세 회피 시 징벌의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세 번째 그룹은 납세를 위한 서류 작성 관련 불확실성이나 혼란이 있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받았다. 네 번째 그룹은 미네소타 주민의 90%가 이미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 네 그룹 중 납세 순응도가 가장 크게 제고된 그룹은 네번째 그룹, 즉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알려준 그룹이다. 즉, 납세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웃들이 납세행위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단순히 고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미국 대학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대출(Stafford loans)과 민간이 제공하는 대출이 있는데, 정부 대출이 비용이 낮고 안정적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 학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 학생들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직접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지원 절차가 단순한 민간 제공 대출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너트는 관련 서류에 응답해야 할 질문 수를 줄이고, 연말정산에서 파악할 수 있는 소득 정보를 학자금 대출 지원 시 활용하도록 연동하는 등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행동경제학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인접 학문인 경영학, 법학, 정책학 등에서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본문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Thaler 교수는 Robert Shiller 교수(2013년 노벨경제학수상자)와 함께 행동재무학(behavioral finance)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재무학에서 투자자의 심리 모형을 반영하여 주식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주식 프리미엄 퍼즐(equity premium puzzle)⁶⁾을 설명하였다.

행동경제학은 더 이상 전통 경제학과 배치되는 학문이 아닌, 주류 경제학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의 필드로 성장해 왔다. Chetty(2015)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적 요소를 경제학 모형에 반영할 것인지는 전통 경제학 모형에서 어떤 함수를 가정할 것인지를 가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동경제학적 틀을 적용하여 경제학이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을 해석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제안할 것을 기대한다. KIP

〈참고문헌〉

- Allais, M., "Le Comportement de l'Homme Rationnel devant le Risque: Critique des Postulats et Axiomes de l'Ecole Americaine," *Econometrica*, 21, 1953, pp. 503-546.
- Chetty, Raj, "Behavioral Economics and Public Policy: A pragmatic Perspective," NBER WP, 2015.
- Fisher, I., *The Theory of Interest, as Determined by Impatience to Spend Income and Opportunity to Invest it*, New York: Macmillan, 1930.
- Hastings, J.S. and J.M. Shapiro, "Fungibility and Consumer Choice: Evidence from Commodity Price Shock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8, 2013, pp. 1449-1498.
- Johnson, E.J. and D. Goldstein, "Do Defaults Save Lives," *Science*, 302, 2003, pp. 1338-1339.
- Kahneman, D., J.L. Knetsch, and R.H. Thaler, "Fairness and the Assumptions of Economics," *Journal of Business*, 59, 1986a, S285-S300.
- _____, "Fairness as a Constraint on Profit Seeking," *American Economic Review*, 76, 1986b, pp. 728-741.

6) 주식 프리미엄 퍼즐이란 전통 경제학 모형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채권에 비해 주식에 대한 수익률이 너무 높은 현상을 일컫는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거래 주체는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었을 때 베이즈 룰에 따라 신념을 업그레이드 하지만, Tversky & Kahneman(1974)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에 과잉반응(overreacting)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 Kahneman, D. and A. Tversky,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 1979, pp. 263–291.
- Kőszegi, B. and M. Rabin, "A Model of Reference-Dependent Preferenc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1, 2006, pp. 1133–1165.
- Madrian, B.C. and D.F. Shea, "The Power of Suggestion: Inertia in 401(k) Participation and Savings Behavior,"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 2001, pp. 1149–1225.
- Samuelson, P.A., "A Note on Measurement of Utility," *Review of Economic Studies*, 4, 1937, pp. 155–161.
- Simon, H.A., "A Behavioral Model of Rational Choi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69, 1955, pp. 99–118.
- Sunstein, C.R. and R.H. Thaler, "*Liber-tarian Paternalism Is Not an Oxymoron*,"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70, 2003, pp. 1159–1202.
- Thaler, Richard H., *Misbehaving: The Making of Behavioral Economic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5.
- Thaler, Richard H. and Cass Sustein, "Libertarian Paternalism is Not a Oxymoron," *University of Chicago Law & Legal Theory Working Paper*, No 43, 2013.
- _____, *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 London, 2008.
- Thaler, Richard H. and H.M. Shefrin, "An Economic Theory of Self-Contro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 1981, pp. 392–406.
- Thaler, Richard H. and S. Benartzi, "Save More Tomorrow™: Using Behavioral Economics to Increase Employee Sav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2, 2004, S164–S187.
-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Scientific background on the Sveriges Riskbank Prize in Economic Sciences in memory of Alfred Nobel, "Richard H. Thaler: Integrating Economics with Psychology," 9 October, 2017.
- Tversky, A. and D. Kahneman, "Loss-Aversion in Riskless Choice: A reference-Dependent Model,"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 1991, pp. 1039–1061.
- _____.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Science*, 185, 1974, pp. 1124–1131.
- Von Neumann, J. and O. Morgenstern,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4.



| 공공정책포럼 |

■ 제50회 공공정책포럼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및 정부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격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포노 사피언스 시대와 4차 산업혁명

개요

- 주 제 포노 사피언스 시대와 4차 산업혁명
- 일 시 2017년 10월 16일(월), 07:30~09:30
- 장 소 서울 팔레스호텔 로얄볼룸A(1F)
- 진행순서
 - 07:30~08:00 조찬
 송대희 좌장
 - 08:00~08:40 주제 발표
 최재봉 성균관대학교 교수
 - 08:40~09:30 자유토론
 - 09:30 폐회

* 본 원고는 2017년 10월 16일 서울 팔레스호텔 로얄볼룸(1F)에서 『포노 사피언스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개최한 제50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발표 및 토론요약입니다. 주제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 기관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인사말씀

송대희/좌장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변화를 지혜롭게 활용하고 발전시켜서 국가 경제 성장과 조직 발전을 도모하느냐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해주실 최재봉 교수님은 삼성전자 등 다양한 곳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하여 기술 자문 역할을 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유익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주제발표 요약

포노 사피엔스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최재봉/성균관대학교 교수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이고 좋은 인사이트(insight)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과 대응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설립될 만큼,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에 가장 관심이 높은 나라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정의된 바가 없고 학계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무엇이다’라고 얘기된 바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이 너무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이것이 인공지능로봇 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기술이 현재 우리 생활에 특별한 파급 효과를

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은 무엇일까요? 시장은 혁명적 변화를 이미 겪고 있고 양적으로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라고 하여 저성장 저소비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질적으로는 더 무섭습니다. 대다수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웬만한 업무를 해결합니다. 현재 방송사가 파업을 하고 있지만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방송 파업으로 인해 불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불편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 산업이 전부 재편되고 있습니다.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이나 중국 알리바바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 세계 시장은 이미 모바일 유통으로 완전히 전환체제를 갖추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난 30년간 가장 안정된 직장이라고 불리던 은행, 방송, 유통이 현재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질적인 변화가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소비자,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혁명이라는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본질입니다. ‘왜 시장 혁명이 왔느냐?’는 것을 잘 이해하면 왜 인공지능, 빅데이터라는 신기술이 각광받는 시대가 됐는지를 알게 되고 결국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계공학과 출신의 엔지니어입니다. 사물인터넷, 웨어러블(wearable) 제품 등 최첨단 IT 기술을 융합한 제품들은 사업화가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엔지니어들끼리만 모여 고민을 해서 그렇다는 결론이 오래전에 났습니다. MIT 미디어랩이나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인간중심 연구를 하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심리학, 진화론, 소비행동학 등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으셔서도 기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과 함께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의 내면을

파악하고 스토리화하여 거기에 기술을 입혀서 미래제품을 디자인하는 일을 10년간 하다보니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시장혁명 변화가 그 촉발 기술에 있지만 본질은 인류, 소비자가 집단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소비자가 급격하게 변화해서 시장혁명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지난 30년 동안 일정 소비패턴을 유지하던 소비자의 적어도 10억 명 이상이 소비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렇게 소비하는 것이 훨씬 스마트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10억명이 한꺼번에 이러한 소비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은 단편적으로 본다면 은행에서 대기표를 받아 오랜시간에 걸쳐 송금하는 것보다 ‘폰’으로 하는 것이 쉽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뇌를 가진 인간은 생각을 만드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정보를 보고 복제해서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인간 10억명이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심리 변화를 일으켰다면 보고 있는 정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달라졌으니 생각이 달라졌다는 뜻인데 그것을 일으킨 사건이 무엇이였을까요? 바로 스마트폰의 등장입니다. 정보를 보는 창구, 방식, 내용까지 변화된 것입니다. 그 원년을 20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데요. 2010년이 되어 보다 대중화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팔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급격히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접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대중매체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 왔습니다. 아침이면 신문이 오고, TV가 나오고 라디오를 듣고, 이것이 일반 시민들의 정보 습득 행위였습니다. 내용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사회라 하면 언론 기관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뉴스라고 전해줍니다. 즉, 신문 일면 탑에 올라온 것

이 제일 중요한 뉴스구나 하고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기관들이 전해줍니다. 지금은 신문구독률이 15% 이하입니다. 회사를 제외하고 가정에서 구독하는 것만 보면 5%를 넘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신문을 아예 안본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사회 이슈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제 더 이상 언론 기관이 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정합니다. 사람들은 스마트 폰을 열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뉴스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즉,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정보의 중요도를 결정하고, 정보선택 방식 자체가 터치 하나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중매체가 모든 계층을 지배하는 시대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동시에 콘텐츠도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sk텔레콤 빅데이터 담당자를 만났는데 동영상 소비량의 30% 이상이 이미 유튜브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는 개인이 만드는 동영상이 올라가는 곳입니다. 대중매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만 소비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이제 대중매체 이외의 것을 통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복제를 하고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분량은 얼마 정도일까요? 일반적으로 모바일 트래픽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보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데 2010년 이후 5년 동안 무려 50배가 늘었습니다. 2009년, 10년과 현재를 비교하면 LTE의 보급으로 이 데이터가 무려 10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마트폰 사용자는 일반 휴대폰 사용자에 비해 100배의 정보를 본다는 것이고 정보를 보는 순간 뇌는 복제하니까 역설적으로는 생물학적 뇌 활동량이 100배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인류에서 전혀 다른 인류로 진화했다고 해도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인류를 스마트 신

인류 또는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ce)라고 정의합니다. 유행어처럼 등장한 단어인데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에서 2015년에 이 단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포노 사피엔스가 전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아주 정교하고 튼튼한 소비 중심의 시장 생태계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 생태계라고 한다면,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 운송하는 기업, 이것을 보험으로 커버해주는 기업, 판매하는 기업, 운행에 필요한 석유화학 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생겨납니다. 주로 선진국이 이런 소비 중심 시장생태계의 모범을 보여주고 추격국가들은 그것을 카피하면서 정교하게 시장을 형성해 왔습니다. 지난 30년간 한 번 그 자리를 차지한 대기업들은 그 지위를 안정적으로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인류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기업들은 소위 플랫폼 기업입니다. 신인류의 시간을 스마트폰을 통해 빼앗은 기업들을 의미하는데 유튜브,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글로벌한 플랫폼들이 먼저 등장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장 대표적 기업입니다. 2014년부터는 이러한 기업들이 대중매체가 가지고 있던 광고수익을 엄청난 속도로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니 투자펀드가 몰리게 되고 최근에는 여기에 5천조원 정도의 자본이 몰렸습니다. ‘폰’으로 택시도 부르고, 여행도 다니고, 편의점 결제도 하고 유통도 이것으로 바꾸는 등 변화가 발생합니다. 즉, 지난 30년간 견고하게 유지된 생태계를 위협하는 ‘폰’을 든 인류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이 수십조원의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소위 신산업의 거대 생태계가 형성

됩니다.

2015년부터는 대규모 투자 펀드가 신산업으로 더욱 몰리게 되는데 이유는 명백합니다. 저성장 저 소비로 이전 시장에서는 확대 가능성이 떨어졌고 매출도 오르지 않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대한민국도 2% 성장으로 거의 멈춰버렸고 심지어 초고속 성장을 하던 중국 시장도 내려앉았습니다. 기존 시장의 매력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신산업이 성장하면서 기존 기업이 가지고 있던 매출까지 신산업 기업에 빼앗긴 것입니다. 반면 신산업 시장의 경쟁은 치열하지만 성공한 기업들은 지난 5년간 30% 이상의 고도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투자펀드는 신산업에 매력을 느끼겠지요. 사람들의 시간만 뺏었을 뿐인데 이제 100조원 이상의 기업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기업들이 300조원가 되고 500조원이 되더니 700조원의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 거대 투자 펀드들은 신산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럼 30년간 기존 시장을 지배하던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매출의 확대 가능성은 없고 투자 자본들은 기존 산업에 아무 관심도 갖지 않게 됐습니다. 이 기업들은 당연한 결과지만 생존 전략을 모색하게 되죠. 줄어드는 시장은 축소하고 수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대표적 기업이 바로 미국의 월마트입니다. 2015년 5월에 아마존의 시가 총액이 월마트를 넘어섰고 지금은 3배가 넘습니다. 이에 월마트로는 2016년에 251개의 지점을 폐쇄했고 그 돈으로 jet.com이라는 온라인 회사를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포노 사피엔스 시장에 진출합니다. 올해는 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혁명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로봇이라는 것은 아직 실질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시장을 바꾸는 것

은 자본입니다. 심지어 워렌 버핏도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 인생 가장 잘못된 투자가 실물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에 투자하지 않은 것이다.” 이라고 나니 투자 펀드들이 신산업으로 더 투자를 옮겨가고, 결국 글로벌 시장의 기존 맹주 기업들까지 전략을 전면 수정합니다. 제가 최근 많은 기업들에 불러가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너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매출 데이터와 현재의 펀드 흐름을 봐서는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10년 뒤 미래가 없다고 이미 답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혁명의 본질입니다.

이런 혁명을 만드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새로운 인류의 탄생입니다. ‘폰’을 든 인류란 뜻이 이런 겁니다. ‘폰’을 마치 신체의 일부처럼 쓰는 것이죠.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의 그 본질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알 수가 없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분명합니다. 오롯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살아온 인류가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걸까요? ‘폰’이라는 디지털 커넥터(digital connector)가 손에 달려있다고 보면 확실해 집니다. 어떤 인류일까요? 사실 저 같은 베이비붐 세대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밀레니엄 세대라고 불리는 1982년부터 2000년에 태어난 세대가 이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통 이야기 됩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유소년 시절부터 컴퓨터와 인터넷 게임을 너무나 즐겼던 세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축구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했던 것처럼 이 세대는 컴퓨터 게임을 스스로 학습하며 잘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라난 세대에 스마트 폰이 들리게 됩니다. 바로 인터넷 게임기가 손에 들린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에서 게임 개발이 가장 어려

운 레벨이라고 합니다. 게임을 즐기던 이 세대는 왜 ‘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느냐는 의문을 가지면서도 ‘은행도 바꾸고 택시사업도 바꿀 수 있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분야는 낮은 레벨의 개발입니다. 이렇게 ‘폰’을 든 인류를 위한 택시사업, 은행사업 등 많은 것들이 2010년 이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2013~14년까지는 이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45세 이상의 기존 주력 소비 세대가 불편해 했기 때문입니다. 신문명에 대한 두 인류의 저항이 거세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마존이 처음으로 월마트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시기와 맞아 떨어집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류가 전체적으로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유발 하바리(Yuval Noah Harari)의 베스트셀러 『사피언스(Sapiens)』를 보면 인류가 새로운 문명, 도구를 받아들이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나와 내 자식의 번성 가능성입니다. 생존의 가능성, 유전자를 퍼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순간 인간은 선택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2015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발생합니다.

스마트폰 뱅킹이 미래에 훨씬 더 전망이 좋다고 대중이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중이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저항하던 사람들이 학습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더 나은 문명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카카오 뱅크가 설립된 지 한 달 만에 300만개의 계좌가 생겨납니다. 결국 대한민국에도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명절에 집에 갔더니 70대 할아버지께서 카카오톡을 배우신 다음 가족 단체 방에서 함께 안부를 묻고 이에 답하느라 피곤해졌다는 기사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70대 분들이 자기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문명은 ‘메이저’

문명이 됩니다.

미래 제품을 만들다 보니 인류가 바뀌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삼성그룹 사장단 회의 때 초청을 받아 사물인터넷 시대의 미래라는 굉장히 기술적인 강의를 부탁받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하고 계신 기술중심 R&D는 모두 멈추시고 엔지니어들에게-적어도 3개월만이라도-‘폰’을 든 새로운 인류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소비 생활을 하는지 그걸 학습하게 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이 원하는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설계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인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한 이야기가 맞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시장을 추적해 왔는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너무 잘 맞고 속도도 너무 빨라서 제가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이 정도면 ‘문명교체’가 시작됐다고 말해도 되겠다 싶습니다. 청동기에서 철기로의 문명교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습시다.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자본의 흐름이었습니다. 자본이 어떤 기업을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평가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 기업의 가치, 또 사회가 인정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가 연구하는 IT기업 중심으로 2015년까지 시가총액 기준의 기업 랭킹을 계속 분석해왔습니다.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롤이 명백합니다. 제조업입니다. 최고의 제조 과학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어렸고 그걸 공장을 통해서 생산하고 전 세계에 판매함으로써 최고의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최고의 과학기술을 가진 기업이 언제나 top 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근대사 200년의 교훈입니다. 어느 국가든, 어느 기업이든, 과학기술이 먼저입니다. 특히 1990년을 보면, 놀랍게도 10개 중에 8개

가 일본 기업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선진국하고도 붙어보자’하고 시작된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88 올림픽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당시 세계 최고 기업들인 일본 기업들을 벤치마킹하고 그 도전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일 수 있었죠. 유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로 수탈당했던 국가 중에 선진국이 된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고 1950년 이전까지 세계 전쟁에 참여할 자체 기술을 하나도 가지지 못했던 국가가 그런 걸 해본 사례가 없습니다. 분석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30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 1위, 자동차 5위, 철강 3위, 조선 1위를 차지하고 세계 최고의 빌딩도 우리나라 기업이 시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을까요? 우리가 축적된 기술, 자원, 자본도 없었는데 이걸 만들어낸 원동력은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해 왔습니다. 역시 사람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답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하다가 정답은 아니지만 이것도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의 달인’입니다. 동남아를 가면 만두를 만드는 많은 분들이 그냥 시간을 따라 천천히 만듭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1분에 30개씩 만들려고 그 난리일까요? 타이어를 쌓는 분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10년을 갈고 닦으셨다고 합니다. 생활의 달인 PD가 프로가 재미있지만 출연진이 1년도 안돼서 바닥이 나면 어찌나 걱정했는데 10년 넘은 지금 아직도 출연 예정자가 줄을 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엔 왜 이렇게 달인이 많은 걸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달인처럼 생활해 오신 분들 아니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이 기적을 낳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잠재력을 이미 증명했다

고 봅니다. 지난 100년 동안 그 어떠한 국가도 해 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0년을 정말 목표만 잘 세우고 1990년에 했듯이 제대로 앞길을 인도해주면 우리의 후손 세대도 잘 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중요합니다. 시대와 시장의 변화를 정확하게 보고 그 방향성만 제대로 인도해준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다고 검증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2010년 이후의 변화를 보면 확실한 건 제조의 시대가 갔다는 것이고 2015년이 되니까 글로벌 top 10에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단 2곳뿐이었습니다. 1위 애플 그리고 10위 삼성전자입니다. 자본은 다른 길을 택했고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가 이 자리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017년 7월 21일 종가 기준 글로벌 top 10에 무려 7개가 IT 기업입니다. 특징을 보면 첫째, 이들은 모두 포노 사피엔스 중심 플랫폼 기업입니다. 두 번째, 공장이 없습니다. 7개 기업 중 제조를 가진 기업은 그나마 애플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제조를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쓸데없는 것입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입니다. 인간생활과 상관없습니다. 1위가 애플인데 아이폰 없으면 죽습니까? 아닙니다. 2위 구글. 없으면 안되나요? 3위 마이크로소프트. 그나마 이것은 없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테니까요. 4위 아마존. 역시 없으면 죽나요? 5위 페이스북. 오히려 하면 욕먹는 것입니다. 업무시간에 하면 혼납니다. 하지만 세계 5위 기업입니다.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저 세계 5위 기업에 들어갈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일반 커리큘럼에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상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

계 5위 기업에 모인 자본이 3,400조원입니다. 제가 배운 비즈니스 상식으로는 이 기업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3,400조원이 틀렸든지 제 상식이 틀린겁니다. 역사적으로 3,400조원의 자본이 풀린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틀린거죠. 전혀 다른 상식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문명의 교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혁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텐센트는 8월 7일 기준 시가총액 433조원입니다. 10월 13일 현재 알리바바의 시총은 535조원입니다. 아마존을 처음으로 알리바바가 꺾었습니다. 중국은 제조국가가 아닙니다. 중국 시장 1, 2위 모두 플랫폼 기업입니다. 방송산업도 다 바뀌고 있고 중국은 시장 자체가 데이터 기반 마켓으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빅데이터가 왜 중요하나요? 포노 사피엔스는 모든 것을 터치로 합니다. 그 데이터를 모으면 과거에는 알 수 없었던 소비자들의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빅데이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이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특별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실제 많은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7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4천조원을 넘는 자본을 들여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에서 인재 쟁탈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사물인터넷 등에서는 아직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갈 수 없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면서 현재 상황에서 다음 산업으로 움직여가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혁명의 본질은 인류 변화란 것입니다. 달라진 인류의 선택에 의해 시장은 교란 상태에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1위 삼성전자가

400조원까지 가는 겁니다.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수혜 기업이죠. 빅데이터 사업을 하려면 터치를 저장해야 하니까 제일 필요한 것은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재계 2위가 sk 하이닉스가 됐죠. 자본은 명백합니다. 포노 사피엔스 마켓 확대에 따라 수혜를 본 기업에만 무조건 투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제조를 하더라도 포노 사피엔스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략의 방향 자체가 ‘폰’이라는 디지털 커넥터를 든 인류가 좋아할 만한 지능화된 제품, 이것이 커넥티드 카, 자율주행차, 스마트스피커 등입니다. 직접 옷을 입고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 주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문이 떨어지면 제조를 하는 스마트 팩토리도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정의가 되어야 5천조원으로 투자할 기술들이 발전하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것 이 전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는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의응답

최경규/동국대학교 교수

Q: 월드이코노미포럼의 화두도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이 각 국가 별로 규제도 다르고 가상화폐를 화폐로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각국 중앙은행의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가상화폐를 사는 것이 좋은지 등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A: 인류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의 등장은 지금 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배력의 힘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은행에 계좌가 있다는 것을 은행밖에 검증해줄 수 없지만 블록체인이 형성되면 일반적인 상거래를 은행 도움 없이 우리끼리 계좌를 만들어 할 수 있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그것이 진짜 관철을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해보니 관철다고 검증되면 다 쓰자는 겁니다. 생각해보시면 수십조원의 은행거래를 하는데 서로 믿고 은행 계좌를 우리끼리 만들자는 것이 되면 은행에 맡기는 수수료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검증이 필요해서 비트코인을 만든 것이고 결국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두 개는 서로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블록체인은 확대 가능성이 크지만 비트코인은 국가 개념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병욱/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

김원식/건국대학교 교수

Q: 원자력이 최근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안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4차 산업시대에서 원자력의 안전과 안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연계를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거쳐야 할지에 대해서라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A: 제가 계속해서 IT 플랫폼 기업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TV 광고를 보신 적 있나요?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구글과 페이스북은 광고 사업 세계 1, 2위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대중매체를 통해 광고하면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요즘은 스스로가 좋아서 찾아오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TV를 보는 사람은 55세 이상입니다. 원자력 안전을 TV에 광고하면 55세 이상은 이해합니다. 나머지 젊은 사람들은 인터페이스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것이 좋구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진짜 배경은 진실입니다. 기술적으로 원자력의 안정성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 가리고 숨겨왔습니다. 이것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간의 기본 심리에서 보면 거짓말 하는 사람들을 가장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과학기술적으로는 안전할 수 있고 실제 미국도 그렇게 결정을 내렸지요. 우리가 아직 그 터닝 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진짜 지식이 계속해서 축적되어 사람들이 판단하는 시대가 됐고 자발적 선택이 생겨날 때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시대가 젊은 시대 시각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 혁명적 흐름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Q: 4차 산업혁명에서 정부가 갖춰야 할 인프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제가 지난 한 해 삼성에 가서 200번 넘게 한 이야기인데요. '생각을 바꿔라'입니다.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 소비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어제 본 뉴스가 모두 다를 것입니다. 빅데이터를 보고 소비자 각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내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다음을 기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과거의 상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섹터 하나를 볼 수 없고 세대별로 연령별로 모두 다릅니다. 다양한 섹터를 분석하고 만족시켜 줄만한 정책이 무엇이며 적절한 수준에서 미래발전적 전략에 포함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빅데이터에 치중해서 좋아하는 것만 분석해서는 미래를 맞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맞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섹터별로 세분화된 관심사에서 '좋아요'를 끌어낼 것인가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영두/한국가스공사 기술부사장

Q: 에너지 업계에서 계속 근무해왔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한 생각이 있으나 화두가 워낙 세다보니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해야 할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A: 어렵습니다. 6년 전인 2011년을 보시면(자료집) 10개 top 10 기업 중 에너지 기업이 6개 기업입니다. 이게 정상이지요. 인간은 에너지가 없으면 죽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가 총액 1위를 달리던 엑손모빌의 시가총액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10위에 있는데 시가총액은 그대로입니다. 나머지 4천조원의 자본이 그 위에 올라탄 것입니다. 흔들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단기적으로 펀드가 몰리고는 있지만 온라인 오프라인 신산업계에서 다시 밸런싱을 하겠지요. 저는 2025~2030년부터는 에너지와 제조가 다시 중요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생존을 해야 합니다. 변화를 잘 해야 할텐데요. 가스공사의 경우도, 원자력도 왜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는가 보면 소통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 선택이 만들어내는 시대인데, 그것을 소홀히해서 가치가 폄하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건강과 에너지가 어떻게 상충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지만, 에너지가 우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갈 것인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소통의 채널을 만들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갑순/동국대학교 교수

Q: 아까 학교 커리큘럼 말씀도 해주셨지만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조직 변화도 결국 사람이 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직문화도 따라줘야 할 것인데요. 새로운 인재가 유입되는 방향으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직문화에서 필요한 인재상에 관해서 여쭙보고 싶습니다.

A: 제가 캐나다의 카이스트와 같은 워털루대학에서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이 학교의 특징이 4개월씩 일과 학업이 번갈아 진행되는 것입니다. 구글, 아마존 등 세계 5대 기업이 자신들 직원들을 보냅니다. 1년 내내 상주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골라내는 겁니다. 4개월 일할 때 마음에 드는 인재를 스카우트합니다. 대학교 1학년이 구글에서 자기들끼리 팀을 이뤄 4개월 동안 구글 프로젝트를 하나씩 하는데 총 5번을 합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생이 무슨 일을 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이 4개월 동안 기업에서 일할 때 받는 월급이 400만원이 넘습니다. 개념(생각)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능으로는 그 능력을 평가할 수 없으니 데려가서 4개월 동안의 업무 수행 능력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 번에는 우리에게 안와도 되는 것이고, 마음에 들면 계속 키워서 그 기업의 핵심 인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 수업 시간에 실제 기업현장에서 있었던 일들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교수도 수업 콘텐츠를 안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시장 경험을 계속 축적하면서 관련 과목을 만들게 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변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성공한 기업사례를 자료집에 참고하시라고 정리해 두었는데, 결국 결론은 포노 사피엔스가 남기는 흔적이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식을 버리고 빅데이터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는 통계분석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매일 1억명이 편의점에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실시간 판매 1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면 어제와 오늘 데이터를 비교해서 생산량을 조절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저절로 생각나게 됩니다. 이러면 기업문화는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소비와 미디어에 각 계층별로 타깃을 만들어냅니다. 제일 경계해야 할 대기업 문화는 옛날

에 다 해봤다는 태도이고 임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50대 브레인으로 업무가 진행되면 기존 신문명과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포노 사피언스를 본능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기획하고 그들의 언어로 풀게 해서 그들이 '오케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원의 경험과 노하우에만 의존하지 말고 빅데이터를 잘 파악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권해상/국가경영연구원 원장

Q: 정부정책도 '좋아요'를 고려하여 미래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좋아요'에만 의존하다 보면 윤리라는 가치와의 충돌도 있을 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윤리적 가치와 밸런스를 맞추면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A: 아주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미국의 모든 언론 기관들이 클린턴의 당선을 기대하고 보도했는데 여지없이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이것이 '좋아요'의 폐해일 수도 있고요. 결국 인간은 지식의 기반에 의해서 선택을 이성적으로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브렉시트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지식인들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면 안된다고 했지만 영국의 청년들은 브렉시트를 찬성했습니다. 진화사회학을 연구한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예측한대로 사회가 가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들의 선택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하시는 바가 우려가 되는데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먼저 정말 인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맞지만 적어도 과거처럼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을 어느 쪽에서 많이 하느냐에 승부가 달린 것 같습니다.

김의석/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사업팀장

Q: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된 시점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에 맞추어 기업이 변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실제 변화를 위해 액션을 취하려고 보면 그 갭이 생각보다 많이 큼니다. 주어지는 가이드라인들을 보면 새로운 플레이어들을 위한 것이지 기존 플레이어들이 감수해야 할 대체비용까지는 고려가 잘 안되어 있고 전체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공기업들은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간적 가이드라인과 액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A: 저도 R&D를 하다보니 실제적인 문제에 계속 부딪히는데요. 제가 중국기업을 분석하면서 왜 우리 기업이 여기서 이렇게 허덕거리는지를 생각해 보면, 핵심은 중국은 완전 데이터 기반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제조업 중심입니다. 신산업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생태계를 바꾸는지를 보면 제조업 방향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처럼 완전한 데이터 기반 시장이 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소비자가 '로그인'을 해서 모든 데이터를 남겨주어야 합니다. 중국 우버는 하루에 천만명이 이용합니다. 중국은 택시 산업을 딱 4년 했습니다. 우리는 택시는 보호해야 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세사업체니까요. 중국은 당연히 '폰'으로 타는 게 택시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는 것이 택시 데이터입니다. 중국은 신용카드

보급률이 우리나라의 4분의 1입니다. 신용카드 대신 폰을 선택한 것입니다.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신용카드 시장까지 다 가져갔고 이는 신산업 플랫폼 기업을 넘어 금융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지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가공하여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새로운 걸 만들어낼 기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입니다. 데이터 산업과 상식적인 산업이 붙으면 절대 데이터 산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국가 전략 정책입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에게 강의할 기회가 있어서 시진핑 주석이 가장 사랑하는 기업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라고 생각한다고 했더니 모두들 동의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를 못들어오게 하고 이들이 금융기업이 된 것인데 왜 이럴까요? 중국이 왜 이럴까요? 본인들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규모로 보면 미국 아니면 EU 두 개 뿐입니다. 저성장에 분란 심한 EU보다는 미국을 따르는 것이 낫겠죠. 올해 중국은 실제로 철강, 조선업을 20% 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글로벌 top 2로 두 기업을 성장시킨 것이죠. 알리바바는 나스닥 상장된 미국기업이고 텐센트도 홍콩기업이지 중국기업이 아닙니다.

그럼 제조는 어떻게 가야할까요? 지능형 제품을 예로 들면, 커넥티드 카에 폰을 든 인류가 타면 ‘오늘은 ○○○로 가시네요, 바로 안내할까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자꾸 진화하는 겁니다. 현재 제조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2015년까지 50%의 소비자는 모바일로 소비를 합니다. 미리 제조해 놓고 팔 필요가 없습니다.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가 그 예입니다. 오더가 들어오면 그때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50%는 팩토리를 수출해서 판매를 커버하겠다는 겁니다. 그때를 대비하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입니다. 인터페이스가 없어보이지만 이런 분야가 성공하는 데가 많

습니다. 안보려고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얼마를 생산할 거야?’라는 과거의 상식으로 보려고 하니까 성공한 기업 사례를 제대로 보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무리말씀

송대희/좌장

스마트폰 시대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생활 방식도 바뀌어야지 생각하면서도 실천은 어려운 것이 실상이지만 4차 산업혁명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소통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와 토론이 이러한 관심을 촉발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KIP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7-10

> 아메리카

[미국-2017 세법개정안 발표]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27일 미 하원 세입·세출 위원회, 미 상원 재무위원회와 최종 협정한 세법개정안(Unified Framework Fixing Our Broken Tax Code)을 발표함¹⁾
 - 2017년 4월 발표한 세법개정안보다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일부 항목은 기 발표한 내용을 수정하여 발표함
 - 세법개정안은 중산층 및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세법규정 및 세무신고절차 단순화, 미국 내 일자리, 투자, 세수 창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미 하원 본회의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작성하며, 이후 미 하원 및 상원의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법안으로 확정될 예정임

가. 소득세

- 인적공제 및 대부분의 항목별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표준공제로 일원화하며, 표준공제액을 현행보다 2배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 표준공제액은 독신의 경우 1만 2,000달러, 부부합산의 경우 2만 4,000달러로 인상함
 - 2017년 기준 표준공제액은 독신의 경우 6,350달러, 부부합산 신고 시 12,700달러임
- 인적공제²⁾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중산층의 경우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³⁾와 기타 세제지원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함
 -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감소하는 구간(phase-out)의 소득기준을 인상하며, 구체적인 소득기준금액은 제시되지 않음⁴⁾
 -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당 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적용함
 - 기존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인적공제 제도로 인해 과세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인적공제제도 폐지 시 소득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항목별공제 중 주택담보대출이자와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하며, 이외에 취업, 교육, 퇴직연금 가입을 장려하는 세제지원제도

1) 미국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9/27/unified-framework-fixing-our-broken-tax-code>

2)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인을 포함하여 1인당 4,050달러를 총조정소득(AGI)에서 차감하는 것임

3) 자녀가 납세자와 반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부양가족에 해당되며, 17세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1,000달러의 세액공제를 허용함

4) 현행 규정에서는 독신 7만 5,000달러, 부부합산신고 시 11만달러, 부부별도신고 시 5만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금액 1,000달러당 50달러씩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감소시킴



는 유지할 것을 제안함

- 취업, 교육, 퇴직연금 가입을 장려하는 구체적인 세제지원제도는 발표되지 않음

- 소득세율은 현재 10~39.6%의 7단계 구조에서 12, 25, 35%의 3단계 구조로 개정함과 동시에 소득세를 최고세율을 인하하였고, 이번 발표에서도 각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은 제시하지 않음
- 최저세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나 표준세액공제 확대 외에 자녀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도 운영할 계획이므로 현재 10%의 세율을 적용받은 납세자의 세부담은 완화될 것임
-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s), 조합(partnership), 소규모 법인(S-corp) 형태로 운영되는 소규모 가족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39.6%(개정안 세율 35%)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에서 최고 25%의 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 개인사업자, 조합원, 소규모 법인 주주의 종합소득이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속하는 경우 사업소득도 소득세 최고세율인 39.6%(개정안세율 35%)가 적용되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사업소득에는 최고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⁵⁾
-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임

- 이외에 소득세 최저한세, 상속세, 세대생략세의 폐지를 제안함

- 최저한세의 경우 원래의 정책목적에 따라 운영되지 못하고, 납세자가 납부세액을 2번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폐지를 제안함

나. 법인세

-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15%p인하할 것을 제안함
- 2017년 4월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는 15%를 제안하였으나 20%로 인정한 세율을 발표함
-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세법개정안을 작성하는 미 하원에서는 재정적자의 이유로 법인세율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⁶⁾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인하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냄⁷⁾
- 법인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구입한 경우 자산구입액의 일시상각을 허용할 것을 제안함
- 현행 규정에서는 각 자산별 감가상각기간에 따라 비용공제가 가능함
- 세법개정안 발표일인 2017년 9월 27일 이전에 완성된 자산에 대해서만 일시상각을 허용하며, 최소 5년간 일시상각을 허용할 것임

5) 미 행정부는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 납세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상대적으로 낮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조세회피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고려할 것이라 언급함(미국 백악관, "UNIFIED FRAMEWORK FOR FIXING OUR BROKEN TAX CODE," p. 7.)

6) Thomson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tax/republicans-eye-alternatives-for-getting-to-20-percent-corporate-tax-rate-idUSKBN1CH369>, 접속일자: 2017년 11월 02일

7) Thomson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tax/after-delay-republicans-in-congress-prepare-to-introduce-tax-bill-idUSKBN1D15R8>, 접속일자: 2017년 11월 02일



- 법인소득 과세체계를 전세계소득과세에서 원천지 소득과세로 전환하여,⁸⁾ 향후 발생하는 해외소득을 국내로 송환 시 비과세할 것을 제안함
 - 미국은 해외소득에도 높은 법인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동안 기업들은 해외소득을 국내로 송환하지 않고 해외에 유보하는 사례가 증가함
 - 미국 거주기업의 해외소득을 미국 내로 유입시켜 미국 내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소득을 미국으로 송금 시 과세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 그동안 미국 내로 송환되지 않고 누적된 해외소득은 국내로 송환된 것으로 간주하여 일회성 과세하며, 분할납부를 허용할 것임
- 구체적인 폐지항목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 시 세액공제(Low-Income Housing Tax Credit; LIHTC)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혜택은 폐지할 것을 제안함
 - LIHTC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 및 리모델링 장려 목적으로 정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건설업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임⁹⁾
 - 리모델링의 경우 납부세액의 4%를, 신규건설 시 납부세액의 7%의 세액공제를 허용함
 - 법인에 대한 대부분의 조세혜택을 폐지하는 이유는 법인세율 인하로 법인의 세부담이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므로 폐지하는 것임

- 이외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일반 법인(C-법인)의 이자비용공제 제한, 특정산업에만 조세혜택을 주는 제도의 정비,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과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 간 세부담 균형을 맞추도록 세제를 개편할 것임을 발표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캐나다-오락용 대마초의 소비세 과세방안 발표]

- 캐나다의 트뤼도(Trudeau) 총리는 2017년 10월 3일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마리화나(recreational marijuana)에 대해 1%의 소비세(excise tax)를 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함¹⁰⁾
 - 대마초에 소비세를 과세하는 방안은 트뤼도 총리의 대선공약이었으며, 2018년 7월부터 마리화나 소지가 합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규정을 마련한 것임
- 대마초 1g당 1캐나다달러를 최대 10캐나다달러를 한도로 소비세를 부과하며, 소비세가 1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0%의 판매세를 추가 과세할 것이라 발표함
 - 즉, 대마초 함량이 10g을 초과하는 경우 소비세는 과세한도금액인 10캐나다달러까지 부과되고, 별도로 판매가격에 10%의 판매세가 부과되는 것임
 - 대마초 함량이 10g 미만인 경우 1g당 1캐나다달러를 부과함

8) 전세계소득과세체계(Worldwide System)란 거주자의 전세계소득에 대해 거주국가에서 과세권을 행하는 방법으로서 국내외 투자 여부와 무관하게 환수 이익에 대해 거주국가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음. 원천국가과세체계(Territorial System)란 소득의 원천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함에 따라 거주국가에서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하는 과세방식임(세법연구센터, 「트럼프의 세제개편안의 내용 및 평가」, 『조세-재정 Brief』, 2017.05. 인용)

9)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n Introduction to the Low-Income Housing Tax Credit," <https://fas.org/sfp/crs/misc/RS22389.pdf>, 접속일자: 2017년 11월 02일

10) TaxNotes, "Tradeau Proposes Excise Tax on Cannabis," 2017.10.09.



- 대마초에 대한 소비세 과세는 주별 판매세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주별 판매세는 5~8%의 범위에서 과세됨¹¹⁾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 유럽

[네덜란드-2018 예산안 발표]

- 네덜란드 정부는 2017년 9월 19일 2018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¹²⁾ 이후 네덜란드의 새로운 연립정부는 10월 10일 추가적인 세제개편안이 담긴 연립정부협약(coalition agreement)을 발표함¹³⁾
- 2018년 예산안과 연립정부협약은 개인소득세 감과 법인세율 인하 등에 대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함

1. 개인소득세

- 2019년 1월 1일부터 현행 네 단계 소득세 구간을 두 단계로 축소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인상하여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로 함
- 현행 네 단계의 소득세 구간을 6만 8,600유로 이하와 초과 구간으로 단순화하여 낮은 소득 구간에는 36.93%, 높은 소득 구간에는 49.5%의 세율을 적용함
 - 소득구간 및 세율 변경으로 인한 소득세 감소는 2021년 기준으로 6억유로로 예상됨

- 기본세액공제, 근로세액공제, 고령세액공제 등의 한도액을 2019년부터 인상하기로 함

- 금융소득에 대한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함
 - 자본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등 금융 소득에 대한 면세한도를 현행 2만 5,000유로에서 3만유로로 인상하기로 함
 - 현행 세법은 2만 5,000유로 이하의 금융소득은 과세면제함
 - 구체적인 시행일자와 세부규정은 추후 마련할 계획임
 - 다만, 대주주(substantial shareholding)가 수취하는 배당, 이자,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은 인상할 계획임
- 기타 주요 개인소득세 관련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 자가사용 부동산에 대한 간주소득(imputed income) 관련 세부담 축소
 -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

11) CBCNews, "Canada's largest grower 'comfortable' with federal government's pot tax plan,"

<http://www.cbc.ca/news/politics/canopy-growth-pot-producer-tax-plan-1.4329045>, 접속일자: 2017년 10월 30일

12) Netherlands-Tax Plan 2018-summary (20 Sep. 2017), News IBFD.

13) Netherlands-New government releases coalition agreement-fiscal measures (10 Oct. 2017), News IBFD.



2. 법인세

-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1년까지 현행 세율보다 4%p 낮추기로 함
 -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0만유로 이하에는 20%, 20만유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나,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2021년에는 해당 과세표준에 각각 16%와 21%의 세율을 적용함
 - 2019년에는 1%p,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5%p 세율을 인하할 계획임¹⁴⁾
- 배당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를 폐지하는 대신 사용료와 이자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2020년 1월 1일부터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던 배당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원천징수 의무가 없었던 이자와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세율국에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함
 - 저세율국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함
- 이자비용 공제와 관련하여 기존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를 대신하여 EBIDTA¹⁵⁾를 기준으로 공제가능 이자비용을 계산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2019년 1월 1일부터 BEPS프로젝트 Action 4 ‘이자공제와 기타 금융비용에 관련된 세원잠식의 제한’의 권고사항에 맞추어 EBIDTA의 30%를 한도로 이자비용 공제를 허용함

- BEPS프로젝트 Action 13 국가별보고서와 관련하여 자발적신고와 모회사 대리신고(parent surrogate filing)제도 도입
 -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국가별보고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체계가 없는 경우, 네덜란드 소재 법인이 모회사를 대신하여 네덜란드 과세당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특허박스(innovation box) 관련 소득에 적용하는 경감세율을 2018년 1월 1일부터 기존 5%에서 7%로 인상하여 적용하기로 함
 -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자가개발한 무형자산(특허 무형자산 또는 연구개발 인증 무형자산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을 적용함
- 기타 주요 법인세 세법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 2019년 1월 1일부터 이월결손금 공제가능 기간을 기존 9년에서 6년으로 단축함
 - 관계사 거래와 관련한 대손상각비와 관계사의 청산손실에 대한 이중공제방지 규정 도입
 - 조세회피방지의 일환으로 비협조적국가에 대한 블랙리스트 도입

¹⁴⁾ Deloitte(<https://www2.deloitte.com/nl/nl/pages/tax/articles/tax-policy-intentions-coalition-agreement.html>, 접속일자: 2017년 10월 31일)

¹⁵⁾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3.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목

- 2019년 1월 1일부터 일부 재화와 용역에 적용하는 경감세율을 현행 6%에서 9%로 인상하기로 함
 - 현재 6%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와 용역으로는 식료품, 의약품, 장애인용품, 수도, 도서, 신문 및 간행물 등이 있음
- 기타 세목에 대한 주요 세법개정안은 다음과 같음¹⁶⁾
 - 담뱃세와 에너지 관련 세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음
 -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운행거리(km기준)에 따른 부담금을 도입하여 관련 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임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노르웨이-2018년 예산안 발표]

- 2017년 10월 12일 노르웨이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¹⁷⁾
 - 개정안에는 법인세율과 특정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포함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에 관한 법안이 포함됨
- 개인소득세 부문에서는 일반소득, 자본이득과 근로소득 등에 적용되는 세율을 모두 인상함
 - 일반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23%에서 24%로 1%p 인상됨
 -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 파트너십으로부터 배분된 소득이나 주식처분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해 기본

세율보다 높은 29.76%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개정안에서 30.59%로 세율을 0.83%p 인상함

- 근로소득, 자영업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표 1>에서와 같이 모든 소득구간의 세율을 인상함
- 또한, 개인소득세의 기본공제율이 현행 44%에서 45%로 1%p 인상됨

〈표 1〉 노르웨이 근로소득, 자영업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율

(단위: 크로네, %)

과세표준 구간	개정안 2018년 세율	현행 2017년 세율
169,000 이하	0	0
169,000~237,900	1.40	0.93
237,900~598,050	3.30	2.41
598,050~962,050	12.40	11.52
962,050~	15.40	14.52

- 법인세 부문에서는 법인세율의 1%p 인하, 특정 주식처분손실에 대한 공제 제한, 유류 관련 활동에 적용하는 부가세(surcharge) 인상 방안이 포함됨
 - 법인세율을 현행 24%에서 23%로 인하하되, 금융업에 적용하는 세율은 현행 세율과 동일하게 25%로 유지함
 - 조세조약에 따라 자회사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세하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 해당 자회사의 주식처분손실을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음
 - 수력발전이나 유류 관련 활동에서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부가세(surcharge)를 수력발전에 대해서는 34.3%에서 35.7%로 1.4%p 인상하고, 유류

16)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임

17) IBFD, "Norway Budget 2018—summary," 접속일자: 2017년 10월 13일



에 대해서는 54.0%에서 55.0%로 1%p 인상함

- 부가가치세 부문에서는 관광 및 문화 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상 방안을 발표함
 - 승객 운송용역, 방송용역, 영화관, 놀이공원, 박물관이나 스포츠시설의 입장료, 호텔숙박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2%p 인상함
 - 그 밖에 15미터 미만의 구조 및 수색 선박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추가함
- 그 밖에 재산세 부과대상의 축소와 부유세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됨
 - 기계나 장비에 대해 재산세 부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함
 - 부유세 부과 목적상 주식과 운영자산의 평가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스위스-부가가치세 인상안 국민투표 부결]

- 스위스는 2017년 9월 24일 국민연금(public pension)의 재정확보 목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2021년에 기존 8%에서 8.3%로 인상하는 안을 국민투표(referendum)했으나 부결됨¹⁸⁾
 - 이번 부가가치세 인상안은 국민연금의 재정확보 방안 중 하나로, 현재 금리가 낮아 향후 퇴직자에게 지급할 국민연금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제안된 것임

- 총투표 수 중 52.7%의 반대표를 얻어 부결된 것이며, 국민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중 국민연금 수령대상자의 경우 47%가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남

- 이번 부가가치세 인상안 부결로 이전에 승인되었던 부가가치세율 인하안(8%→7.7%로 인하)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부가가치세 표준세율만 8%에서 7.7%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경감세율 2.5%는 계속 유지됨
 - 기본식료품, 의약품, 신문, 책 등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을 적용함
 - 단, 경감세율 적용항목 중 호텔숙박 서비스만 기존 3.8%에서 3.7%로 인하된 세율을 적용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슬로바키아-법인세법 개정안 확정]

- 2017년 8월 16일 슬로바키아 법인세법 개정안이 확정됨¹⁹⁾
 -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출국세, 특허박스 제도와 디지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함
 - 대부분의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특정외국법인의 거주국 법인세율이 슬로바키아 법인세율의 50% 미만인 경우 슬로바키아 지배주주의 과세표준에 특정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을 가산하여

18) Tax Notes, "Voters Reject VAT increase to Fund State Pension Reform," 2017.10.02.

19) KPMG, <https://home.kpmg.com/sk/en/home/insights/2017/09/tax-and-legal-news-september-2017.html>, 접속일자: 2017년 10월 13일

슬로바키아 세법에 따라 과세함

- 특정외국법인이란 슬로바키아 거주자가 지배주주 이면서 슬로바키아 이외의 국가에서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여기서 지배란 50% 이상의 지분이나 의결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이익의 50% 이상을 분배받는 경우를 의미함
- 다만, 특정외국법인이 거주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지배주주의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출국세는 납세자가 자산이나 사업활동을 해외로 이전할 때 부과되며, 이전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자본이익을 계산하여 21%의 세율로 과세됨

- EU 회원국과 같이 조세채권의 회수가 용이한 국가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출국세를 5년 동안 분납할 수 있음

- BEPS Action 5에서 권고한 연계접근법(nexus approach)에 따른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이익을 50%까지 감면함
- 납세자가 개발한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매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함

- 슬로바키아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면 슬로바키아에 디지털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고정사업장 규정을 개정함

- 디지털 플랫폼은 과세 연계점으로 BEPS Action 1에서 제안한 디지털 요인의 사례 중 하나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아일랜드-EU의 균등세 도입안에 대해 반대의견 표명]

- 아일랜드 재무장관 파스칼 도노후(Pascal Donohoe)는 2017년 9월 20일 디지털상거래 소득에 과세하기 위해 EU국을 중심으로 균등세(equalization levy)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함²⁰⁾

- 균등세는 OECD BEPS Action 1에서 언급한 사항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다국적기업에 디지털 상거래 관련 소득 지급 시, 소득지급액을 기준으로 소비세 형태의 부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소득 원천지국에 납부하는 방법임²¹⁾

- EU국 차원의 균등세 도입안은 프랑스가 주도하여 제안한 것이며, 2017년 9월 15~16일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 현재 과세하지 못하는 디지털 상거래 소득에 대해 일시적으로 균등세를 도입하는 안을 논의한 바 있음²²⁾

20) Tax Notes, "Finance minister Hits Out at EU Equalization tax Proposal," 2017. 9. 25.

21) OECD BEPS Action 1에서는 현재단계에서 균등세의 도입을 권고하지 않음

22) EU2017/EE, "Presidency Issues Note for the Informal ECOFIN Tallinn, 16 September 2017,"

(https://www.eu2017.ee/sites/default/files/2017-09/Ecofin%20Informal_WS%20digital%20economy_15-16.Sept._17.pdf), 접속일자: 2017년 10월 30일



-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OECD의 분석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EU 차원의 균등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모든 국가의 공통된 이해를 기반으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언급함
 - 디지털상거래 소득에 과세하기 위한 방안은 모든 국가의 공통된 이해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EU국만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중과세 또는 과세불확실성을 증가시킴
- 아일랜드는 디지털상거래 소득에 과세하기 위해 일시적인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OECD의 '디지털 소득 과세방안 연구' 중간보고 발표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을 표명함
 - OECD는 2018년 4월 G20국의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상거래 소득에 과세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아일랜드-2018년 예산안 발표]

- 아일랜드는 2017년 10월 12일 2018년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 동 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²³⁾
 - 소득세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중산층의 건강보험료 인하,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인상, 중소기업의 스톡옵션 행사 시 조세혜택 제공, 임대사업자의 비용공제 혜택 제공, 주택담보대출이자 세액공제의 단계적 폐지가 있음
 - 법인세의 개정사항으로 무형자산 감가상각비용의 비용공제 제한, 에너지설비의 가속상각 허용기간 연장이 있음
 -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설탕 첨가음료에 부가가치세 소비세 부과, 선탱서비스의 부가가치세율 인상, 현물급여 지급 목적으로 전기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있음

1. 소득세

- 소득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 금액을 750유로 인상함
 - 아일랜드의 소득세율은 2단계 세율구조로, 과세표준 금액의 3만 3,800유로까지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며, 3만 3,8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함
 - 외별이 신고 시 4만 2,800유로까지 20%의 세율이 적용됨
 - 이번 예산안 통과 시 과세표준 금액이 3만 4,550유로 이하인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3만 4,550유로 초과 시 40%의 세율이 적용됨
 - 외별이 신고 시 4만 3,550유로까지 20%의 세율이 적용됨
- 간병인 세액공제액과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을 인상함
 - 간병인 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1,100유로에서 1,200유로로 인상함
 -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현행 950유로에서 1,150유로로 인상하며,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수

23) 아일랜드 재무부, "SUMMARY OF 2018 BUDGET MEASURES POLICY CHANGES,"

http://www.budget.gov.ie/Budgets/2018/Documents/Budget_2018_Summary_of_Measures.pdf, 접속일자: 2017년 10월 30일



준으로 인상하는 것임

- 주택담보대출이자(mortgage interest)의 세액공제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2021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이자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주택담보대출이자란 주거용 목적으로 주택구입 시 발생하는 대출금 이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며, 2012년 이후 대출금에 대해서는 대출금자의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2017년 이후로 폐지할 예정이었음
 - 이번 예산안을 통해 일몰기간을 연장한 것이며, 2018년에는 세액공제 허용금액의 75%, 2019년에는 50%, 2020년에는 25%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한 후 폐지할 것임
- 중소기업의 직원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우 과세이연 및 자본이득 과세의 혜택을 제공함
 - 스톡옵션 행사 시 과세이연을 허용하며, 향후 주식 처분 시 처분이익에 자본이득과세함
 -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개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보다 세부담이 낮아짐
 -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여한 스톡옵션에만 적용됨
- 임대업자가 보유한 부동산 중 12개월 이상 공실이 발생한 경우, 공실이 발생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건물당 최대 5,000유로까지 비용공제를 허용함
 - 임대업자의 부동산 임대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목적임
 - 비용공제 혜택을 받은 이후 4년 이내에 해당 부동

산을 임대시장(rental market)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공제된 세금을 환수함

- 비용공제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비용항목은 제시되지 않음
- 저소득 및 중산층 자영업자의 사회보장세율(Universal Social Charge)을 인하함
 - 현재 자영업자의 사회보장세는 총소득금액에 따라 0.5, 2.5, 5, 8%의 세율로 징수되며, 2.5%의 세율은 2%로, 5%는 4.75%로 인하함
 - 또한, 현재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기준을 현행 18,668유로에서 19,372유로로 인상함

2. 법인세

-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용 공제율(capital allowance)은 무형자산 관련 소득의 80%로 제한함
 - 현행 규정에서는 제한규정 없이 정액법 상각에 따른 비용을 공제함
-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장비의 가속상각 허용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함
 - 동 규정은 2017년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음
- 이외에 특별 개정사항 없이 2017년 9월 발표된 『법인세법 개정방향 용역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EU 조세회피방지법 이행, Action 8-10 이행, 국내 이 전가격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3.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의 개정안으로 설탕첨가음료에 소비세 부과, 선텅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상, 현물급여로 전기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율 면제가 있음
 - 100ml 음료에 설탕량이 5~8g인 경우 리터당 20센트를, 설탕량이 8g이상인 경우 리터당 30센트를 부과함
 - 선텅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세율 경감세율 13.5%를 적용하던 것에서, 표준세율인 23%를 적용함
-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에스토니아-전산행정 분야의 우수 사례 소개]

- EC는 에스토니아의 부가가치세 전산행정이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우수하며, 이는 에스토니아의 부가가치세 조세격차(VAT GAP)²⁴⁾가 EU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힘²⁵⁾
 - 에스토니아의 2015년 총세수 대비 조세격차의 비율은 4.88%로 이는 EU의 27개 회원국 중 스웨덴, 스페인과 크로아티아에 이어 4번째로 낮은 수치임²⁶⁾
 - 에스토니아의 조세격차는 2011년 12.15%였으나 2015년 4.88%로 4년 동안 7.27%p 하락함

- 에스토니아는 전자 사업자등록과 전자답변,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조세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함
 - 납세자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자동 리스크 체크 절차를 진행하고 전자 사업자등록을 접수하면, 5일 내에 사업자등록 여부가 결정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됨²⁷⁾
 - 월평균 950건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600건의 폐업 요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전산으로 처리됨
 - 홈페이지를 통해 설립된 기업은 전체 기업의 98%에 상당함
 - 에스토니아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의무화하였으며, 과세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서면신고가 가능함
 - 전자신고율은 95%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또한, 에스토니아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였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함
- 그 외에도 에스토니아의 정부는 분기별 개별 기업이 납부한 조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개함
 -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기업의 분기별 세금과 사회보장세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2017년 10월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각 납세자의 납세순응 등급을 공개함²⁸⁾

24) 조세격차란 정부의 추정 부가가치세 세입과 실제 부가가치세 세입의 차이임

25) TAX NOTES INTERNATIONAL p. 126, "Estonia's E-Tax Systems Credited With Closing VAT GAP," 2017.10.9.

26) Center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Warsaw, "Study and Reports on the VAT Gap in the EU-28 Member States: 2017 Final Report," 2017.9.18.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study_and_reports_on_the_vat_gap_2017.pdf.)

27) 에스토니아 국세청, "Business operators get a VAT number automatically now,"

<https://www.emta.ee/eng/business-operators-get-vat-number-automatically-now>, 접속일자: 2017년 10월 13일

28) 에스토니아 국세청, "Businesses can view ratings of their tax compliance on the ETCB's e-portal,"

<https://www.emta.ee/eng/businesses-can-view-ratings-their-tax-compliance-etcb-e-portal>, 접속일자: 2017년 10월 13일



- 체납, 기한내 신고, 관세를 포함한 조세 관련 가산세 부담이나 회사나 이사회 구성원과 관련된 조세쟁송을 기준으로 납세순응 등급을 평가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영국-2018년 재정법안에 대한 의견수렴 진행]

- 영국 정부는 2017년 9월 13일 2018년 재정법에 포함될 법안 중 일부를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함²⁹⁾
 - 은행세 적용대상의 축소, 특정 부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부가가치세의 디지털 세무행정 계획 등에 관한 개정안이 포함됨
 - 관련 쟁점에 대해 2017년 10월 25일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한 후 11월에 발표할 예산안에 포함할 예정임
 -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8년 3월 입법될 것임
- 영국은 은행세(bank levy)³⁰⁾의 적용대상을 축소하여 영국 소재 은행과 건축조합의 자본과 부채를 기준으로 은행세를 부과함
 - 현행 세법상 은행세가 연결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부과되어 해외 자회사나 지점의 자본과 부채에 대해서도 과세됨
 - 2018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됨
- 영국은 특정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할 방침임
 - 특정 부채란 유럽경제지역(EEA)의 규제를 받는 증권거래소의 다자간매매체결시스템(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MTF)을 통해 거래되는 부채임
 -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 영국은 디지털 세무행정(Making Tax Digital)의 로드맵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다른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을 2019년 4월까지 유보할 예정임
 -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디지털 세무행정 로드맵에 따라, 매출액 8만 5,000파운드를 초과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목적상 모든 기록을 전산으로 유지하고 과세당국에 전산을 통해 세무신고와 정보제공할 의무가 발생함
 - 국회와 기업에서 디지털 세무행정이 현재 속도로 진행될 경우 발생할 기업의 부담 가중과 기술적 문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 시기를 지속적으로 논의 중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29)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finance-bill-2017-to-2018>, 접속일자: 2017년 10월 13일

30) 은행세는 2011년 1월 1일부터 은행 등이 저위험성 자금을 조달하도록 유인할 목적에서 도입되었으며, 은행, 건축조합과 국외은행의 영국지점으로 총부채가 20억파운드 이상인 경우 재무상태표의 단기 및 장기부채에 일정 세율을 곱해서 부과함



[오스트리아-디지털상거래 소득의 과세를 위한 법 개정 시사]

-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2017년 9월 20일 디지털상거래 소득의 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자 간 조세협약과 내국세법에 가상(virtual) 고정사업장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함³¹⁾
 - BEPS에서 추진한 다자간 조세협약에 포함된 가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양자간 조세협약과 내국세법에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임
 - 특히, 현행 세법상 디지털상거래 소득의 대부분이 아일랜드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일랜드와의 조세조약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 오스트리아 재무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가상의 고정사업장은 중요한 실질이 존재하는 장소이며, 중요한 실질의 기준으로 오스트리아에서 발생한 매출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함³²⁾
 -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가상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EU와 OECD에도 제안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인터넷 검색서비스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사용 대가로 사용자의 데이터가 제공되었는지를 조사한 후, 사용자의 데이터가 제공된 부분에 대

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폴란드-이자 및 로열티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 도입 제안]

- 폴란드는 2017년 9월 26일 이자비용 및 로열티 지급액의 비용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의 도입을 제안함³³⁾
 - 폴란드는 현재 자본비용 기준의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를 운영중이나, 이번 개정안은 BEPS Action 4의 권고사항³⁴⁾에 따라 손익기준에 따른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로 대체하는 것임³⁵⁾
 - 이번 개정안은 BEPS Action 4의 권고사항 중 손익기준에 따른 이자비용 공제, 최소기준금액 적용, 금융·보험업에 대한 특별규정 적용을 포함하고 있음
 - 위 개정안은 2017년 7월 공개의견수렴절차를 거쳐 2018년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개정안의 의회 통과 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자비용공제 제한규정은 최소기준금액을 규정하여, 이자비용이 3백만PLN 미만인 경우 이자비용을 전액 공제함
- 이자비용이 3백만PLN 이상인 경우 손익기준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이 EBITDA의 30%를 초과하

31) EY,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the-latest-on-beps—9-october-2017>, 접속일자: 2017년 10월 13일

32) 오스트리아 재무부, "Schelling's plan to eliminate opportunities for tax avoidance and evasion",

https://english.bmf.gv.at/carousel/Schelling_s_plan_to_eliminate_opportunities_for_tax_avoidanc.pdf?60zi3s, 접속일자: 2017년 10월 13일

33) EY,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the-latest-on-beps—9-october-2017>, 접속일자: 2017년 10월 30일

34) BEPS Action 4는 공통접근방법으로 분류되어 강제적인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손익기준(EBITDA)에 따라 10~30%의 범위 내에서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할 것과, 최소기준금액을 두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이자비용 전액공제, 미 공제금액의 이월공제 허용, 금융·보험업에 대한 특별규정 적용 등을 권고하고 있음

35) Taxnotes, "Poland-Proposed BEPS-Related Measures Would Raise \$7.4billion," 2017.07.17.

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2017년 7월 공개의견수렴 절차에서 제시한 최소 기준금액은 12만PLN이었으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인상된 최소기준금액을 제시함

- 로열티 지급액의 비용공제 제한규정은 EBITDA의 5% 이상 로열티를 지급 시, 로열티 지급액의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로열티 지급액은 라이선스, 상표권, 기타 무형자산 권리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프랑스-2018 예산안 발표]

- 프랑스 정부는 2017년 9월 27일 2018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³⁶⁾
- 2018년 예산안은 개인납세자의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과 법인세율 인하 등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포함함³⁷⁾

1. 개인소득세³⁸⁾

-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제도를 도입함
- 2018년 1월 1일부터 배당, 이자, 자본소득, 보험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해 12.8%의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는 금융소득에 대한 별도의 과세규정이 없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납세자는 기존처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음

- 금융소득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거주자의 배당 등 일부 금융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12.8%로 경감됨
- 기존에는 소득구분과 소득 수취자의 거주지국 등에 따라 다양한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었음

- 부유세(net wealth tax)를 부동산세(net estate wealth tax)로 대체함
- 2018년 1월 1일부터 기존 부유세 대상 자산에서 동산을 제외하고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과세함

- 저소득 가정에 대한 거주세(dwelling tax)를 경감함
- 거주세는 주택 보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간주 임대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임
-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2만 7,000유로, 기혼가구의 경우 연간 합산소득이 4만 3,000유로 이하인 경우, 2018년에는 30%, 2019년에는 65%, 2020년에는 100%를 감면하기로 함

- 일부 세액공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함
- 임대주택비용과 에너지개선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각각 2021년과 2018년으로 연장함

36) Netherlands—New government releases coalition agreement—fiscal measures (10 Oct. 2017), News IBFD.

37) 부가가치세의 경우 특기할 만한 개정이 없으므로 다루지 않음

38) France—Finance Bill for 2018—individual taxation (05 Oct. 2017), News IBFD.



2. 법인세³⁹⁾

- 법인세율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2년까지 현행 세율 33.33%를 25%까지 인하하기로 함
 - 과세표준 50만유로 이하와 초과를 나누어 2018년에는 28%와 33.33%를 각각 적용하고 2019년에는 28%와 31%를 적용함
 - 2020년부터는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2020년 28%, 2021년 26.5%, 2020년에는 단일세율 25%를 적용함
- 2018년 1월 1일부터 배당지급에 부과하던 3%의 배당지급세를 폐지함
 - 프랑스에서 법인세 납무의무가 있는 법인은 일반적으로 배당지급액의 3%를 배당지급세로 납부하여야 함
 - 동 조치는 2017년 5월 유럽연합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임
- 프랑스 소재 지주회사에 적용하던 이자비용 공제 제한 규정을 폐지함
 - 프랑스 소재 지주회사가 경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활동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주회사의 프랑스 소재 법인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적용하던 이자공제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함

- 2019년 1월 1일부터 고용창출 세액공제를 축소함
 - 고용창출 세액공제(tax credit for 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와 관련하여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인건비에 적용하던 공제율을 기존 7%에서 6%로 인하함
- 기타 주요 법인세 관련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 2018년에 도입하기로 하였던 1일내 거래(intra-day transaction)에 대한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를 폐지함
 - 비거주법인의 프랑스 내 자본소득에 적용하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법인세율로 하향 조정함
 - 20%를 적용하던 급여지불세(payroll tax) 최고구간을 폐지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 아시아

[중국-환경보호세 도입 예정]⁴⁰⁾

- 중국 재무부, 국가세무총국, 환경부는 2018년 1월부터 환경보호세 시행을 위해 각 지역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세금 징수 준비작업에 착수한다고 10월 6일 발표함
 - 2017년 말까지 각 성에서 지역별 과세대상 오염물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확정하고 오염물 배출량 측정법을 공개하도록 요구함

39) France—Finance Bill for 2018—corporate taxation and VAT (05 Oct, 2017), News IBFD.

40) 국무원, "http://www.gov.cn/xinwen/2017-10/06/content_5229775.htm," 접속일자: 2017년 10월 20일

■ 중국의 환경보호세의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 기준 등은 다음과 같음⁴¹⁾

-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및 생산경영자
- 과세대상: 대기 오염물, 수질 오염물, 고체 폐기물, 산업 소음
- 과세기준: 오염물의 배출량

– 다만, 대기 및 수질 오염물의 농도가 국가나 지방에서 정한 환경기준보다 50% 이하로 배출하는 경우 50% 감면, 30% 이하로 배출하는 경우 75% 감면 대상임

〈표 2〉 중국의 환경보호세율

	세금 단위		세액
대기 오염물질	오염물질 배출량		1.2위안
수질 오염물질	오염물질 배출량		1.4위안
고체 폐기물	석탄 맥석(煤矸石)		5위안/톤
	미광(尾礦)		15위안/톤
	위험폐기물		1,000위안/톤
	분말연탄재, 슬래그, 기타(반고체, 액체 폐기물 포함)		25위안/톤
산업 소음	기준 초과 분량	1~3dB	월 350위안
		4~6dB	월 700위안
		7~9dB	월 1,400위안
		10~12dB	월 2,800위안
		13~15dB	월 5,600위안
		16dB	월 11,200위안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41) 전국인민대표대회, http://www.npc.gov.cn/npc/ticazqyj/2016-09/02/content_1996531.htm, 접속일자: 2017년 10월 20일



[호주-디지털 화폐의 GST 이중과세 해결방안 발표]⁴²⁾

- 호주 재무부 장관은 디지털 화폐의 이중과세 해결 방안을 9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함⁴³⁾
 - 호주 내국인이 비트코인(bitcoin)과 같은 디지털 화폐 거래에 GST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GST 목적을 위해 실제 화폐와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 되도록 함
 - 법률의 변경은 2017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됨
- 현재까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는 GST 목 적상 무형자산으로 취급되어 구입시 GST를 납부해 야 하고, 디지털 화폐로 재화 및 서비스 공급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GST가 부과되어 이중과세의 문 제가 있었음
 - 핀테크 산업과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의회는 본 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호주-법인세 경감세율 적용의 수동소득 제한규정 법 안 발표]

- 호주 재무부는 법인세의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중소 기업 매출액 기준을 현행 2,500만호주달러에서 점 차 인상하고, 수동소득(passive income) 보유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을 10월 18일 발표⁴⁴⁾
 - 향후 10년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인상하고, 법인세율을 2026/27과세연도에는 25%로 인하할

예정이지만, 중소기업의 수동소득 기준을 마련하 기로 함

- 법인세 경감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수동소 득은 80% 미만이어야 하며, 동 규정은 2017/18과 세연도부터 2023/24연도까지 적용될 것임
- 현재 호주의 법인세율은 2단계 세율구조이지만, 법 안이 통과되면 2023/24과세연도부터 2단계 법인 세율이 기본세율로 단일화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 법인세율이 동일해짐⁴⁵⁾
 -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30%를 유지하고 있지만, 법인세율 개정안이 통 과되면 2023/24과세연도에는 27.5%로 인하되고 2026/27과세연도까지 점차 인하될 예정임
 - 중소기업(small business entities)에 대한 경감 세율은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2015 년 7월 1일부터 대기업 법인세율인 30%보다 1.5%p 낮은 28.5%를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2017 년부터는 27.5%로 낮아졌음
 - 중소기업 경감세율 적용은 수동소득(passive income) 보유 제한기준을 마련하여 2023/24 과세연도까지 적용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경감 세율 적용기준인 연간 매출액기준은 2023/24 과세연도부터 없어짐
 - 2023/24과세연도부터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세율은 점차 인 하될 예정임

42) Taxnotes, "Australia—"Parliament to Consider Exempting Digital Currencies From GST," 접속일자: 2017년 9월 25일

43) 호주 재무부 보도자료, <http://sjm.ministers.treasury.gov.au/media-release/089-2017/>, 접속일자: 2017년 10월 18일

44) Taxnotes, "Australia—Treasury Proposes Passive Income Limit For Lower Corporate Tax Rate," 접속일자: 2017년 9월 25일

45)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general/new-legislation/in-detail/direct-taxes/income-tax-for-businesses/reducing-the-corporate-tax-rate/>, 접속일자: 2017년 9월 25일

〈표 3〉 호주의 법인세율

(단위: 호주달러, %)

연도	대기업 법인세율	중소기업 법인세율	
		매출액(AUD)	세율
2015/16	30.0%	200만 미만	28.5%
2016/17		1,000만 미만	27.5%
2017/18		2,500만 미만	27.5%
2018/19		5,000만 미만	27.5%
2019/20		10,000만 미만	27.5%
2020/21		25,000만 미만	27.5%
2021/22		50,000만 미만	27.5%
2022/23		100,000만 미만	27.5%
2023/24	27.5%	—	27.5%
2024/25	27.0%	—	27.0%
2025/26	26.0%	—	26.0%
2026/27	25.0%	—	25.0%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국제기구

[OECD-2017 조세행정 보고서 출간]

- OECD는 2017년 9월 29일 2017 조세행정 보고서를 출간함⁴⁶⁾
 - OECD의 조세행정 보고서(Tax Administration) 2004년 첫 출간을 시작으로 매2년에 한 번씩 출간되는 정기 보고서로 2017년 보고서는 7번째 보고서임
-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총 55개국의 조세행정과 관련된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조세행정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과세당국 간의 대화를 촉진

하고 조세정책 설계와 행정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었으며,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1부에서는 각 과세당국의 조세징수 현황, 주요 실적, 예산 및 인력 현황 등에 대한 국제 비교와 동향을 살펴봄
 - 제2부에서는 발전하는 통계 분석 기법,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협력적 접근법, 조세채무 관리 등 조세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주제별로 논의함
- 본 보고서는 조세행정과 관련하여 최근의 두드러진 변화들에 대한 주요 동력으로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제시함
- 새로운 기술과 데이터 활용을 통한 조세행정 서

46) OECD (<http://www.oecd.org/ctp/administration/tax-administration-23077727.htm>, 접속일자: 2017년 10월 24일)



비스의 효과성과 적시성 제고

-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통한 과세당국의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납세협력 비용 감소
 - 새로운 기술과 데이터 활용을 통한 조세행정 서비스의 개선으로 인한 과세당국 역할의 변화
 - BEPS프로젝트 등 변화하는 국제조세 환경에 대응
- 또한, 동 보고서는 최근 각국 과세당국의 조세행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드러진 특징을 논의함
- 온라인 신고 등의 활용으로 지난 2년간의 과세당국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으나, 세무신고의 기한 준수와 조세채무 관리 등의 영역에서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함
 - 새로운 기술과 데이터를 통해 납세자의 범주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납세순응 유도가 가능해짐
 - 납세자의 범주는 크게 대형납세자, 고액자산 납세자, 중소기업, 지하경제 등으로 구분되며, 각 납세자의 범주에 초점을 맞추어 납세순응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납세순응 제고를 위한 주요 방편으로 납세의무의 간소화, 납세자의 협력적 관계 접근, BEPS프로젝트를 비롯한 국제협력,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통한 납세순응 관리 등을 꼽을 수 있음
 -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 데이터 활용과 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1. 조세징수

- 조세징수 행정은 정부부문 재정 확충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각 국가들은 징수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적정 규모의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각 국가의 과세행정당국이 징수한 순조세수입(net collections by tax administrations)⁴⁷⁾은 2014년도를 기준으로 GDP 대비 평균 약 20% 수준으로서 국가별로 편차가 상당함
 - 덴마크, 스웨덴, 헝가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및 라트비아는 GDP 대비 순조세수입 비중이 약 3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음
 - 반면, 일본, 스위스, 인도네시아 및 인도는 GDP 대비 비중이 약 10% 미만으로서 타 국가와의 차이가 큼
- 정부 수입 중 순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약 54% 수준이며, 전체 세수 중에서는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조사대상국 중 25개국은 2014년도 기준으로 전체 정부 수입에서 순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함
 - 2015년도 기준 전체 순조세수입 중에서는 개인소득세 비중이 약 4분의 1을 상회하며, 나머지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⁴⁸⁾의 순서로 비중이 큼

47) 순조세수입 통계는 각 국가의 조세행정 부문에서 관할하는 조세수입만을 집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세수입 통계와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참조: Annex A, Table A.1, http://dx.doi.org/10.1787/tax_admin-2017-en)

48) 다만, 상당수의 국가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은 과세관청에서 징수하지는 않는 관계로 당해 세수 통계에서는 제외됨. 사회보장기여금을 세수입으로 보고한 국가들의 경우 전체 세수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많음

〈표 4〉 전체 순조세수입 대비 주요 세목별 비중(2015년)

(단위: %)

구분	개인 소득세	부가 가치세	법인세	사회보장 기여금	기타
세목별 구성비율	27	26	18	10	19

출처: OECD(http://www.oecd-ilibrary.org/taxation/tax-administration-2017_tax_admin-2017-en, 접속일자: 2017년 10월 25일), Figure 2.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조세행정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며, 조세행정 기능의 약 3분의 1가량은 세무조사와 관련되어 있음
 - 조세행정과 관련된 인력은 총 2백만명가량이며, 연간 관련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며 연간 730조유로 이상의 예산이 소요됨
 - 전체 조세행정 인력 중 약 3분의 1은 세무조사 및 확인 업무에 관련되어 있으며, 그 외 등록 및 정보처리, 조세채무징수 등의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표 5〉 조세행정 업무 구성 비중(2013년 및 2015년)

(단위: %)

구분	세무조사	등록, 정보처리 및 서비스	조세채무 관리	기타 행정	지원업무
2013년 평균	34	28	12	9	17
2015년 평균	32	31	10	9	18

출처: OECD(http://www.oecd-ilibrary.org/taxation/tax-administration-2017_tax_admin-2017-en, 접속일자: 2017년 10월 25일), Table 2.1.

- 조사대상 국가들의 전반적인 납세자 및 조세행정 규모는 상당히 큰 편임
 - 전체 조사대상 국가들이 확인한 납세자 규모는 약 7억 5천만명 수준임⁴⁹⁾ (참고로 조세행정인력은 약 2백만명)
 - 전체 납세자 중 약 78%는 개인소득세 납세자이며, 그 외 부가가치세(10%), 법인세(9%) 등의 순서로 납세자 종류별 비중이 나타남
 - 전체 조세채무는 약 1.8조유로에 달하며, 이 중 약 45%인 8천억유로가량이 현재 징수 가능한 것으로 예상됨
 - 납세자에 대한 연락을 취한 건수는 연간 약 4억 5천만회를 초과하며, 이 중 약 3분의 2는 전화 통화로 이루어짐
 - 과세분쟁 발생 건수는 약 460만건에 달하며, 이 중 연간 50만건 이상은 납세자 이의제기(complaints)와 관련된 것임

2. 과세당국 실적

- 조세행정의 주요 기능은 사업자등록, 신고 및 납부, 신고내용의 검증, 징수, 조세불복으로 구분됨
 - 본 기능을 위해 납세자가 조세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지원 및 서비스가 제공되며, 조세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으로 시의적절한 검증 등이 수행됨

49) 이는 일부 국가 자료가 이용가능하지 않은 관계로 다소 낮게 추산된 것임



〈표 6〉 조세행정 기능의 개요

납세서비스: 웹기반 서비스, 납세자 교육				
1. 세금 시스템 등록 -등록절차 -등록유지	2. 신고 및 납부 -신고과정 -납부과정	3. 신고내용의 검증 -감사 -데이터 매칭 -세무조사	4. 징수 및 체납관리 -신고 및 납부	5. 조세쟁송 -조세불복 -법원 판결
지원: 납세순응관리, 데이터관리, 데이터분석, 기술				

가. 세금 시스템 등록

- 조사대상 국가의 인구 대비 등록된 개인납세자 비율 평균은 약 50%이며, 우리나라는 10%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등록 비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등록 비율이

10% 이하인 국가는 우리나라, 인도, 터키 등임

- 조세징수 목적 외에 사회보장 프로그램 관리를 포함하여 조세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보고한 국가는 등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됨

〈표 7〉 인구 대비 개인납세자 등록 비율

(단위: %)

국가	인구 대비 개인납세자 등록 비율
핀란드	96.9
노르웨이	90.3
스웨덴	86.3
뉴질랜드	86.2
호주	82.5
프랑스	78.3
네덜란드	63.7
독일	50.7
이탈리아	47.2
영국	47.1
미국	46.2
대한민국	10.0
인도	5.0
터키	2.3
평균	49.8

출처: OECD(http://www.oecd-ilibrary.org/taxation/tax-administration-2017_tax_admin-2017-en, 접속일자: 2017년 10월 25일), Table A.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8〉 세목 및 신고 유형별 신고 비율

(단위: %)

연도	법인세 (35개국)		개인소득세 (35개국)			부가가치세 (33개국)	
	서면 신고	전자신고	서면 신고	전자신고	간주 신고	서면 신고	전자신고
2014	22	77	33	55	9	15	85
2015	19	80	30	57	9	13	87

출처: OECD(http://www.oecd-ilibrary.org/taxation/tax-administration-2017_tax_admin-2017-en, 접속일자: 2017년 10월 25일), Table A.6.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신고 및 납부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 약 5분의 4가 전자신고를 사용하며, 개인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3분의 2가 전자신고(간주 신고 포함)를 이용하고 있음
 - 2015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는 전자신고가 80%를 차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87%, 개인소득세 전자신고(간주 신고 포함)는 66% 수준임
- 조사대상국 납세자의 약 12% 정도만 과세관청에 직접 납부하며, 대부분은 전자 납부 또는 대리인을 통해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도에는 전자 납부가 41.9%, 대리인 납부가 43.1%이며, 2014년도에는 전자 납부가 39.8%,

대리인 납부 44.5%, 개별 납부 11.8%로 직접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방법이 가장 낮음

다. 납세서비스

- 조사대상 국가 대부분의 납세자가 전화를 통해 과세관청의 납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면, 서면, 이메일 순으로 납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⁵⁰⁾
 - 38개 조사대상국가가 제공한 납세서비스 정보에 따르면, 이메일 상담이 2014년 1,220만건에서 2015년 1,490만건으로 약 22.1% 증가하여 다른 납세서비스 유형보다 증가율이 높음
 - 특히, 뉴질랜드, 브라질,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표 9〉 납부 유형별 비율

(단위: %)

납부 유형별	2014	2015
	%	%
전자 납부	39.8	41.9
대리인 납부	44.5	43.1
개별 납부	11.8	12.0

출처: OECD(http://www.oecd-ilibrary.org/taxation/tax-administration-2017_tax_admin-2017-en, 접속일자: 2017년 10월 25일), Table A.6.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50) 38개의 조사대상국가의 조세공무원 중 13.9%가 납세자등록과 납세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음



〈표 10〉 납세서비스 유형별 집계

(단위: 백만 건, %)

납세서비스 유형	2014	2015	증감률
전화상담	294.9	290.4	-1.5
대면상담	129.3	126.7	-2.0
서면상담	24.3	24.0	-1.2
이메일상담	12.2	14.9	+22.1

출처: OECD(http://www.oecd-ilibrary.org/taxation/tax-administration-2017_tax_admin-2017-en, 접속일자: 2017년 10월 30일), Table A.6.5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코스타리카, 헝가리가 서면보다 이메일 납세서비스 상담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무실 규모를 줄이기 위한 과세관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화 및 대면상담에 의한 납세서비스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라. 신고내용의 검증(verification)

- 53개 국가의 과세당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자 정보(52개 과세당국)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그다음으로 정보의 교차검증(49개 과세당국), 경제부문이나 납세자의 행위 분석(48개 과세당국), 납세자의 중요한 변동사항 분석(47개 과세당국) 등을 사용함
- 한편, 55개 국가의 과세당국을 설문조사한 결과 모든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정부기관의 정보, 제3자가 보유한 정보와

납세자의 정보와 장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납세자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은 조사 대상 국가 중 3분의 2에서, 장부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은 조사대상 국가 중 2분의 1에서, 납세자의 동의 없이 납세자 주거지의 방문 권한은 조사 대상 국가 중 13개 국가에서 허용됨
- 한편, 과반수 이상의 국가에서 법률상 관계 부처 장관 등의 승인하에 과세당국이 보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개인소득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국가별 세무조사⁵¹⁾ 빈도(audit coverage)⁵²⁾와 세액조정비율(adjustment rate)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빈도는 개인소득세의 경우 30개국 중에서 24번째, 법인세의 경우 32개국 중에서 20번째, 부가가치세의 경우 32개국 중에서 31번째로 낮았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소득세의 세무조사 빈도는 100명의 납세자 중 0.08명, 법인세는 100건의 법

51) 여기서 세무조사는 일반 세무조사(comprehensive audits)뿐만 아니라 특정 쟁점에 대한 조사(issue-oriented audits)나 서면조사(desk audits)도 포함함

52) 세무조사 빈도는 100명의 납세자 대비 세무조사한 납세자의 수이며, 세액의 조정비율은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 대비 세액이 조정된 납세자 비율을 의미함

인 중 0.94건, 부가가치세는 0.05건으로 나타남

- 한편, 세무조사 등 과세당국이 징수한 조세채권의 회수 여부를 추적 · 관리하는 국가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인 납세자의 조세채권을 관리하는 국가는 26개국, 중소기업의 경우 10개국, 자영업자의 경우 4개국, 기타 개인의 경우 9개국으로 나타남
- 세무조사 담당 부서와 조세채권의 관리부서나 대행기관이 협력하는 방식 등을 통해 세무조사로 추진된 조세채권의 회수를 관리함

〈표 11〉 세목별 세무조사 빈도

(단위: 납세자 100건당 세무조사 건수)

구분	개인소득세 (30개국)	법인세 (32개국)	부가가치세 (32개국)
대한민국	0.08	0.94	0.05
조사대상국 평균	2.96	5.13	7.73

출처: OECD(http://www.oecd-ilibrary.org/taxation/tax-administration-2017_tax_admin-2017-en, 접속일자: 2017년 10월 25일), Figure 6.10, 6.11과 6.1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마. 징수 및 체납관리(collections)⁵³⁾

- 2015년 설문에 응답한 47개 국가의 평균 체납비율은 31.76%였으며, 우리나라의 체납비율은 47개 국가 중에서 7번째⁵⁴⁾로 낮은 3.48%로 나타남
- 한편, 조사대상 연도인 2011년, 2013년과 2015년의 총 세수 대비 체납액의 비율(이하 “체납비율”이라 한다)을 조사한 결과 38개국 중에서 27개국의 체납비율이 하락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체납비율은 소폭 상승함
- 조사대상 연도에 대해 모두 응답한 국가인 38개국의 평균 체납비율은 2011년 27.93%에서

2015년 29.61%로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체납비율은 2011년 3.03%, 2013년 3.44%, 2015년 3.48%로 소폭 상승함

〈표 12〉 체납비율 현황

(단위: 총 세수 대비 체납액의 비율(%))

구분	2011년 (42개국)	2013년 (45개국)	2015년 (47개국)
대한민국	3.03	3.44	3.48
조사대상국 평균	25.97	26.67	31.76

출처: OECD(http://www.oecd-ilibrary.org/taxation/tax-administration-2017_tax_admin-2017-en, 접속일자: 2017년 10월 25일), Table A.175 및 Figure 6.1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과세당국의 체납액 징수 권한을 살펴본 결과 55개국 중 48개국의 과세당국이 은행이나 고용주 등의 제3자를 통해 납세자의 미납세금을 징수하였으며, 27개국에서는 과세당국이 소송 중인 사건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43개국에서 납세자의 재산이나 급여를 압류하였고, 26개국에서 행정소송 중인 사건과 관련된 체납액을 징수하고, 22개국은 정부가 납세자에게 지원금 등을 지급할 때 체납액을 원천징수하고 차액만 지급함
- 18개국은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별도 협정을 체결하거나 조세조약을 통해 다른 국가의 과세당국과 공조함

53) 징수 및 체납관리는 신고기한 내 미신고하거나 체납한 납세자의 조세채권을 관리하는 역할을 의미함

54) 체납비율은 스웨덴, 코스타리카,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에 이어 우리나라 순으로 낮았음



바. 조세쟁송

- 조사대상 35개국 중 33개국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식적인 조세분쟁 해결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87%의 과세당국은 자체적으로 조세불복 절차를 운영함
 - 한편,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해 조세분쟁을 해결한 국가에서는 행정소송 진행 중인 납세자 중 3분의 2가 행정소송 전 과세당국의 조세불복 절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1,000건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납세자별 조세불복 건수를 조사한 결과 35개국의 조세불복 건수의 평균은 9.66건이었음
 - 조세불복 건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일랜드로 1000건의 신고 중 불복건수가 0.01건이었으며, 가장 높은 국가는 독일로 불복건수가 82.75건이었음
 - 프랑스는 58,56건, 영국은 1,06건으로 국가마다 차이가 컸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과 미국의 정보는 확인되지 않음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2개국을 대상으로 조세불복절차 이용의 변동 정도를 조사한 결과 2013년 대비 2015년 평균 22.70건 증가함
 - 일본, 영국, 캐나다를 포함한 12개국에서 불복절차 이용건수가 감소한 반면 호주, 아일랜드, 그리스를 포함한 20개국에서는 증가함
 - 우리나라의 정보는 확인되지 않음
- 한편, 2015년 37개국을 대상으로 법원의 총조세쟁송 건수 중 과세당국의 조세불복에서의 판결과 법원의 판결이 일치한 건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66.0%, 우리나라는 90.5% 과세당국의 조세불복과 법원의 판결이 일치함
 - 우리나라는 37개국 중 몰타(100.0%), 뉴질랜드(92.9%)와 아일랜드(91.9%)에 이어 4번째로 해당 비율이 높았으며, 수치가 가장 낮은 국가는 인도(11.5%)로 나타남
 - 그 밖에 영국은 69.7%, 프랑스 66.5%, 캐나다는 44.5%로 과세당국의 조세불복과 법원에서 판결이 일치하였으며, 미국, 일본이나 독일의 관련 정보는 확인되지 않음

〈표 13〉 법원의 총 조세쟁송 건수 대비 조세불복과 법원 판결이 일치한 조세쟁송 건수

(단위: %)

구분	총 조세쟁송 건수 대비 조세불복절차와 결론이 동일한 조세쟁송 건수
대한민국	90.5
조사대상국 평균	66.0

출처: OECD(http://www.oecd-ilibrary.org/taxation/tax-administration-2017_tax_admin-2017-en, 접속일자: 2017년 10월 25일), Figure 6.1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14〉 과세당국의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와 IT 관련 비용 비중

(단위: %)

구분	인건비 비중		IT 비중	
	2014	2015	2014	2015
대한민국	65.8	64.3	-	-
조사대상국 평균	71.1	70.4	11.8	12.2

출처: OECD(http://www.oecd-ilibrary.org/taxation/tax-administration-2017_tax_admin-2017-en, 접속일자: 2017년 10월 25일), Table, A.25, 4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과세당국의 예산 및 인력 현황

- 약 75%의 조사대상국에서 2014년 대비 2015년 운영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GDP 대비 비중 및 새로운 역할과 프로그램 등을 고려할 때 약 60%의 국가에서는 실질적인 운영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과세당국의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은 약 70%에 달해 전체 예산 항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정보통신(IT) 관련 비용 역시 최근 수년간 평균 11-12%를 유지하는 등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인건비 비중은 2015년 현재 64.3%로 조사대상국의 평균인 70.4%보다 낮았으며, IT비용 전체 비용의 6.6%(2013년 기준)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⁵⁵⁾
- 2015년 말 현재 55개 조사대상국의 과세당국 종업원 수는 총 2백만명을 넘은 가운데, 많은 나라의 과세당국은 예산 감소와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원 감축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말 기준 조사대상국의 과세당국 평균 종업원 수는 대략 3만 7천명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가별로 과세당국 인원규모의 편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2015년 말 기준 국세청 인력은 대략 1만 9천명으로 조사대상국 평균보다 작은 규모를 보임

〈표 15〉 과세당국의 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4	2015
대한민국	19,026	19,085
조사대상국 평균	37,363	37,301

출처: OECD(http://www.oecd-ilibrary.org/taxation/tax-administration-2017_tax_admin-2017-en, 접속일자: 2017년 10월 25일), Table, A.53.

- 과세당국의 업무별 인력 분포를 살펴보면 2015년 말 현재 세무조사를 포함한 조사 및 검증 업무에 가장 많은 인력(32.3%)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행정지원(18%), 세금신고 및 납부(17.5%), 납세자 등록 등 납세자 지원(15.0%) 등의 순서로 인력이 분포됨

55) OECD(2015), *Tax Administration 2015: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OECD Publishing, Paris, p. 177. 우리나라의 IT 관련 비용은 2015년 기준으로 제시되지 않아 2013년 기준으로 작성



〈표 16〉 2015년 과세당국의 업무별 인력 분포현황

(단위: %)

구분	납세자 등록 및 납세자 지원	세금 신고 및 납부 지원	세무조사 등 조사 및 검증	조세채무 징수	조세쟁송	기타 조세 행정	일반 행정 지원
대한민국	5.2	50.1	21.4	4.1	3.7	6.7	8.8
조사대상국 평균	15.0	17.5	32.3	10.2	4.2	5.0	18.0

출처: OECD(http://www.oecd-ilibrary.org/taxation/tax-administration-2017_tax_admin-2017-en, 접속일자: 2017년 10월 19일), Table, A.20.

- 우리나라는 세금신고 및 납부 업무(50.1%)에 인력의 절반 이상이 배치되었으며, 이어서 세무조사 등 조사 및 검증 업무(21.4%)에 많은 인력이 편성되었음

4. 조세행정 관련 주제별 논의⁵⁶⁾

- 고급분석(Advanced analytics)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기술로,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음⁵⁷⁾
- 고급분석기법⁵⁸⁾은 세무조사대상 선정, 신고납부 준수비율 개선 및 조세채권 관리 프로세스 최적화, 납세자 서비스 향상, 정책변경의 영향력 확대 등 광범위한 세무행정지원에 활용되고 있음
- 과세당국은 고급분석을 활용함에 있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프로젝트 선택, 분석접근법 설계,

데이터 관리, 결과 평가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세무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납세자의 조세 불확실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세원 확보 등을 위한 방안으로 납세협력제도(Co-operative approaches to tax)가 도입됨⁵⁹⁾
- 납세협력제도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공정·투명성, 개방성 및 신뢰 원칙에 기반하며, 최근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납세협력제도를 채택한 과세당국이 증가하고 있음
- 납세협력의 효과로는 납세자 측면에서 세금통제⁶⁰⁾ 및 위험관리, 관련 비용 절감 등이 있으며, 과세당국의 경우 세원 확보, 분쟁 감소, 자원배분 개선 등이 있음⁶¹⁾

56) Tax administration(OECD, 2017)의 'Part II. Topical issues in tax administration(Chapter 8.~15.)'에 기술된 내용으로 OECD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며, 각 장을 기재한 저자의 견해에 해당함

57) 'Chapter 8. Advanced analytics'의 저자는 Daniel Sinnott · Rachel O'Carroll(Office of the Revenue Commissioners, Ireland)임

58) 고급분석기법에는 과거 데이터 패턴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하는 예측분석(Predictive analytics)과 특정 유인에 따른 납세자 행동 변화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처방분석(Prescriptive analytics)이 있음(출처: OECD(2017), p. 140.)

59) 'Chapter 9. Co-operative approaches to tax'의 저자는 Hans J.H.A.M. Rijsbergen(The Netherlands Tax and Customs Agency)임

60) Co-operative compliance Framework(OECD, 2016)에서는 대기업의 핵심적인 세금 통제 요소(Tax control framework; TCF)로 i.조세전략(tax strategy), ii.포괄적응(comprehensive application of the TCF), iii.명확한 책임(clear responsibility) iv.거버넌스(governance), v.테스트,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testing, monitoring and maintenance), vi.감시감독(assurance)를 들고 있음(출처: OECD(2017), pp. 151~152.)

61) 납세협력프로그램은 서비스 수준에 대한 상이한 기대치, 대기업의 세제 전략 변화, TCF에 대한 투자 부족 등의 이유로 종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당국과 상호 합의에 따른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출처: OECD(2017), p. 152.)



- 과세당국은 신고납부절차의 간소화, 성실신고납부 유도 등 납세 준수성 개선을 통해 조세채무를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함⁶²⁾
 - 과세당국은 추심절차를 통한 조세채무의 사후적 관리에서 벗어나 고급분석을 활용한 납세자 분류(Segmentation), 행동분석(Behavioural approaches), 캠페인 운영(Campaign based activities)⁶³⁾ 등을 통해 조세채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음
-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의 개선으로 세금 평가, 검증 및 수집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촉진하고, 신속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⁶⁴⁾
 - 납세자의 신원 등록 및 식별 시스템의 완전성 강화, 기본 시스템⁶⁵⁾과의 연계 및 통합을 통한 데이터 수집방안 개선, 블록체인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한 디지털 세무행정의 제공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규정 준수를 유도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 대형납세자(large taxpayer)의 납세순응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의 조세확실성을 높이고, 납세불순응 정도를 측정하여 높은 자에게는 행정인력을 집중시키고, 낮은 자에게는 행정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운영중임⁶⁶⁾
 - 대다수의 국가는 납세불순응 정도를 측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세무행정제도의 운영계획을 세우며, BEPS Action 13의 이행, 조세관련 내부통제(Tax Control Framework) 평가를 통해 납세불순응 위험 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조세분쟁 발생 시 조약국가 간 협의하여 해결하는 상호협의절차(MAP) 이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조세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⁶⁷⁾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상호합의절차(ACAP)를 통해 조세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조세분쟁 사항에 대해 조세조약국가 해결방안(Safe Harbours) 또는 절차를 미리 정하는 경우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됨
- 각 과세당국은 납세순응정도 파악을 위해 Tax Gap⁶⁸⁾을 측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납세순응 정도를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존재함⁶⁹⁾
 - Tax Gap 측정을 통해 과세당국은 세목별, 납세자 그룹별로 납세불순응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나, 측정 시 오류와 불확실성 존재, 데이터 공식 시점과 Tax Gap 분석결과 시점 간 큰 격차 발생 등의 한계점이 존재함

62) 'Chapter 10. Insights from innovations in tax debt management'의 저자는 Katie Clair(Office of the Revenue Commissioners, Ireland)임

63) 콜센터는 Outbound calling, Non-filers and outbound calls, Reminder calling의 형태로 운영됨(출처: OECD(2017), pp. 158~160.)

64) 'Chapter 11. Using digital delivery to enhance the integrity of tax systems'의 저자는 Claire O'Neill(Australian Tax Office)임

65) 기본 시스템은 회계 관련 소프트웨어, 은행서비스 관련시스템, POS 등 납세자의 다양한 기록 시스템을 포함함(출처: OECD(2017), p. 166.)

66) 'Chapter 12. Large business and international'의 저자는 Gord Parr and Francine Turcotte(Canada Revenue Agency 소속)임

67) 'Chapter 13. Improving mutual agreement procedures'의 저자는 John Hughes and Deb Palacheck(US Internal Revenue Service 소속)임

68) Tax Gap은 국가별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나, 보통 총 납부되었어야 할 세액과 실제 납부된 세액과의 차이를 말함

69) 'Chapter 14. The measurement of tax gaps'의 저자는 Heather Whicker(UK 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소속)임



- 제3자 정보를 활용하여 신고서의 정확성에 대해 검증하거나, 납세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자 하며, 최근에는 제3자 정보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의무를 줄이거나, 신고서의 사전검증에 활용하는 추세임⁷⁰⁾

(자료 수집 및 정리: 세법연구센터 세정연구팀)

[OECD-BEPS Action 13 국가별보고서 관련 이행현황 발표]

- OECD는 2017년 10월 11일 BEPS프로젝트 Action 13 관련 국가별보고서의 입법현황과 교환체계 현황을 발표함⁷¹⁾
 - Action 13의 국가별보고서는 BEPS프로젝트의 최소기준으로 모든 BEPS 참여국들은 의무적으로 국가별보고서 규정을 도입하고 다른 국가와 보고서를 자동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OECD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OECD 35개국 등 총 61개국에서 국가별보고서 관련 입법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됨⁷²⁾
 - 대부분의 국가에서 2016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를 대상으로 첫 국가별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를 부여하나, 러시아, 스위스,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첫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연도를 2017년 또는 2018년도로 함

- 대부분의 국가들은 OECD의 다자간협약과 EU의 국가별보고서 관련 지침을 중심으로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양자 조세조약을 통해 국가별보고서를 교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⁷³⁾
 - 2017년 7월 현재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다자간협약(MCAA)을 체결한 국가는 총 65개국에 이르며, OECD 국가 중 다자간협약 미서명 국가로는 미국과 터키 등 2개국이 있음⁷⁴⁾
 - 미국은 2017년 10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21개국과 양자간 조세조약을 통해 국가별보고서 교환 협정을 체결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70) 'Chapter 15. Third-party data management—the journey from post-assessment crosschecking to pre-filing and no-return approaches'의 저자는 Frode Lindseth(Norwegian Tax Administration)임

71) OECD (http://www.oecd.org/tax/beps-action-13-oecd-releases-cbc-reporting-implementation-status-and-exchange-relationships-between-tax-administrations.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OECD%20releases%20CbC%20reporting%20implementation%20status%20and%20exchange%20relationships%20between%20tax%20administrat&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12-10-2017&utm_term=demo, 접속일자: 2017년 10월 24일)

72) OECD (<http://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country-specific-information-on-country-by-country-reporting-implementation.htm>, 접속일자: 2017년 10월 24일)

73) OECD (<http://www.oecd.org/tax/beps/country-by-country-exchange-relationships.htm>, 접속일자: 2017년 10월 24일) OECD 사이트에서 각국 간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 체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74) OECD (<https://www.oecd.org/tax/beps/CbC-MCAA-Signatories.pdf>, 접속일자: 2017년 10월 24일)

**[OECD-BEPS Action 5 경과보고서 발표]**

- OECD는 2017년 10월 16일 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관련하여 각국의 이행 현황을 정리한 2017년 경과보고서⁷⁵⁾를 발표함⁷⁶⁾
 - Action 5는 BEPS프로젝트 15개 Action 중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에 해당하는 4개의 Action 중 하나로 상호검토(peer review) 대상에 해당함
 - Action 5 외에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Action으로는 Action 6(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의 부여 방지), Action 13(이전가격문서화와 국가별보고서), Action 14(분쟁해결 자치의 효과성 제고) 등이 있음
- OECD는 유해조세포럼(Forum on Harmful Tax Competition)을 통해 BEPS참여국의 유해조세제도를 모니터링 및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4개의 조세특례제도를 검토하여 해당 제도의 유해 여부와 시정 현황을 본 보고서에서 기술함
 - 본 보고서는 각국의 조세특례제도를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 본점 관련 제도(headquarters regimes) 등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제도의 유해 여부와 시정 현황을 정리함
 - OECD 검토 결과 유해(harmful) 판정을 받은 조

세특례제도의 대부분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의 지적재산권의 양도와 관련한 자본이득 과세특례제도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우리나라의 경우 유해한 조세특례제도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OECD는 2018년에도 유해 조세특례제도의 시정 이행 여부, 잠재적 유해제도(potentially harmful), 신규 BEPS참여국의 관련 제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토를 지속할 계획임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OECD-BEPS Action 14 관련 상호검토 보고서 일부 공개]

- OECD는 2017년 9월 26일 BEPS프로젝트 ‘Action 14 분쟁해결장치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하여 영국,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 스위스 등 6개국에 대한 상호검토(peer review) 보고서를 공개함⁷⁷⁾
 - Action 14는 BEPS프로젝트 15개 Action 중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에 해당하는 4개의 Action 중 하나로 상호검토(peer review) 대상에 해당함
 - Action 14 외에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Action으로는 Action 5(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

75) OECD(2017), *Harmful Tax Practices—2017 Progress Report on Preferential Regimes: Inclusive Framework on BEPS: Action 5*,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76) OECD
(http://www.oecd-ilibrary.org/taxation/harmful-tax-practices-2017-progress-report-on-preferential-regimes_9789264283954-en, 접속일자: 2017년 10월 23일)

77) OECD
(<http://www.oecd.org/tax/beps/oecd-releases-first-peer-reviews-on-implementation-of-beps-minimum-standards-on-improving-tax-dispute-resolution-mechanisms.htm>, 접속일자: 2017년 10월 24일)



응), Action 6(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의 부여 방지), Action 13(이전가격문서화와 국가 별보고서) 등이 있음

- Action 14 상호검토는 Action 14의 최소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1단계와 1단계에서 발견한 미비점의 시정 여부를 평가하는 2단계로 이루어지며, 본 상호검토 보고서는 1단계 검토의 첫 보고서임
- 본 1단계 상호검토 보고서는 (i) 분쟁방지 노력, (ii) 상호합의절차(MAP)의 이용가능성과 접근가능성 보장, (iii) MAP 사건의 해결, (iv) MAP 합의 이행 등 Action 14의 네 가지 최소기준에 대한 검토 대상국의 이행 현황을 평가함
 - 검토대상국은 대체로 Action 14의 최소기준에 부합하는 분쟁해결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24개월 내 MAP 사건 해결과 MAP 접근성에 대한 보다 명료한 안내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각국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상호검토 보고서에 상세한 해결방안을 기술함
- OECD는 2020년까지 1단계 상호검토를 완료하고, 1단계 검토 이후 1년 이내에 2단계 검토를 진행할 계획임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OECD-『지하경제 양성화』 보고서 출간]

- OECD는 2017년 9월 29일 『지하경제 양성화』 보고서를 출간함⁷⁸⁾
 - 본 보고서는 기존 『조세회피와 조세포탈 대응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활용』⁷⁹⁾보고서의 후속 보고서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과 관련한 조세행정 정책에 대해 논의함
- 본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 등 변화하는 조세 환경에 따른 지하경제의 진화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지하경제 대응과 관련한 조세행정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함
 - 제1장에서는 지하경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지하경제의 동인과 행동양식에 대해 살펴봄
 - 제2장에서는 새로운 현금 활용과 업무 형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 지하경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와 추세를 다룸
 - 제3장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지하경제에 대응하여 과세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세행정 전략의 주요 접근법을 논의함
 - 제4장에서는 정보의 공유, 다양한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 등 지하경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권고사항들을 소개함
- 본 보고서는 지하경제 대응을 위한 조세행정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의 고려사항을 제시함
 - 확장되는 지하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당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공유와 다양한 데이터 소스

78) OECD

(<http://www.oecd.org/tax/crime/shining-light-on-the-shadow-economy-opportunities-and-threats.pdf>, 접속일자: 2017년 10월 24일)

79) OECD

(<http://www.oecd.org/tax/crime/technology-tools-to-tackle-tax-evasion-and-tax-fraud.htm>, 접속일자: 2017년 10월 24일)

활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공유경제와 임시경제(gig economy)가 확장함에 따라 관련 납세순응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는바,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한 과세당국 간 협력과 이들 경제의 온라인 중개자(intermediaries)와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생체측정(biometrics)과 블록체인(blockchain)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 관련 사회적 규범(social norm)을 제고하여 지하경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음
- 지하경제는 일반적으로 탈세뿐 아니라 사회보장 제도 및 여타 다른 영역의 규정 위반을 내포하기에 정부의 다른 행정부처와 공동으로 지하경제 관련 문제를 대처하는 접근(whole of government approach)이 필요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욱 회계사)

『OECD-「납세순응 환경의 변화와 세무조사의 역할」 보고서 출간』

- OECD는 2017년 9월 29일 『납세순응 환경의 변화와 세무조사의 역할』 보고서를 출간함⁸⁰⁾
- ECD 조세행정포럼(Forum on Tax Administration)은 본 보고서를 통하여 변화하는 조세환경에 대응하여 과세당국이 고려할 수 있는 조세행정 정책을 소개함

■ 본 보고서는 새로운 데이터와 발전된 분석기술역량 등을 통한 납세순응 제고 전략과 이러한 변화가 세무조사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함

- 제1장에서는 현재의 다양한 납세순응 관련 행위들과 변화하는 납세 환경 및 새로운 환경이 과세당국과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함
- 제2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납세순응 전략과 현재의 납세순응 관련 위험관리의 우선순위에 대해 살펴봄
- 제3장에서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세무조사의 기능을 점검하고 세무조사가 추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논의함
- 제4장에서는 위험평가와 다자간 세무조사 등과 관련하여 보다 강화된 국제차원의 공조 가능성에 대해 살펴봄

■ 본 보고서는 조세행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함

- 영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의 납세협력 편의를 위해 세금 계산을 보다 단순화하고 앱(application) 등을 활용한 세금계산 및 신고 그리고 검증을 활성화할 수 있음
- 세무조사 기법 개발을 위해 과세당국 간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당국 간 공조수사를 활성화하여 국제거래 사건에 대한 과다한 인력투입을 방지하고 상호절차합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협력적 납세순응(co-operative compliance) 접

⁸⁰⁾ OECD

(http://www.oecd-ilibrary.org/taxation/the-changing-tax-compliance-environment-and-the-role-of-audit_9789264282186-en, 접속일자: 2017년 10월 24일)



근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각 과세당국의 관련 프로그램을 함께 평가 및 공유함으로써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조세행정의 변화에 있어 데이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 소스의 활용과 데이터 보안 등과 관련한 각 과세당국의 사례를 담은 보고서가 도움이 될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주요국의 재정동향



- EU 정상회의, 브렉시트 등 논의(2017.10.19.~20.)¹⁾
 - (브렉시트) 27개국 정상들은 시민권, 아일랜드 국경, 재정적 의무에 대해 협상이 진전되기를 요청하고 두 번째 협상 단계에 대한 내부 준비에 착수하기로 합의
 - 그 밖에 이민, 디지털 유럽, 안보, 대외관계 등 주제에 대해 논의

〈표 1〉 브렉시트 관련 주요 일지

일자	내용
2017.3.29.	영국, EU 탈퇴 공식 통보
2017.3.31.	EU, 협상 지침 초안 발표
2017.4.29.	EU, 브렉시트 특별정상회의 개최
2017.5.22.	EU 일반이사회, 협상 개시안 채택
2017.6.19.	EU 및 영국, 1차 협상 - 시민권 문제, 재정분담금 조정, 북아일랜드 국경, 기타 이슈 논의
2017.7.17.~20.	EU 및 영국, 2차 협상 - 시민권 논의
2017.8.28.~31.	EU 및 영국, 3차 협상 - 시민권, 재정분담금, 아일랜드, 기타 이슈 논의
2017.9.25.~28.	EU 및 영국, 4차 협상 - 시민권, 재정분담금, 아일랜드 논의
2017.10.9.~12.	EU 및 영국, 5차 협상 - 시민권, 아일랜드, 재정분담금 논의

- EU 통계청, 2017년 2분기 말 일반정부 채무 발표(2017.10.24.)²⁾
 - 2017년 2분기 말 유로존(EA19)과 EU 28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는 각각 89.1%와 83.4%를 기록하여 전 분기(각각 89.2%, 83.6%)에 비해 감소
 - GDP 대비 채무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그리스(175.0%), 이탈리아(134.7%), 포르투갈(132.1%) 순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8.9%), 룩셈부르크(23.4%), 불가리아(27.7%) 순임
 - 전 분기 대비 리투아니아(2.6%p), 포르투갈(1.7%p), 이탈리아(0.7%p), 라트비아(0.7%p) 등 7개국은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증가한 가운데, 영국은 불변, 크로아티아(-4.5%p), 슬로바키아(-1.6%p), 몰타(-1.4%p) 등 20개국은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리투아니아(1.8%p), 룩셈부르크(1.4%p), 프랑스(1.3%p) 등 9개국은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증가한 가운데, 그리스(-4.7%p), 네덜란드(-4.5%p), 독일(-3.9%p) 등 19개국은 감소

1) 출처: EU 이사회, <http://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uropean-council/2017/10/19-20/>, 2017.10.20.

2) 출처: EU 통계청, <http://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8332661/2-24102017-AP-EN.pdf>, 2017.10.24.



〈표 2〉 유로존(EA19) 및 EU 28개국의 2017년 2분기 말 정부 채무

(단위: GDP 대비 %)

	2016Q2	2017Q1	2017Q2
EA19	90.8	89.2	89.1
EU28	83.8	83.6	83.4

주: EA 및 EU 수치는 국가별 수치의 가중 평균임

출처: EU 통계청, 보도자료, 2017.10.24.

■ EU 통계청, 2017년 2분기 일반정부 계절조정 재정수지 발표(2017.10.24.)³⁾

- 2017년 2분기 유로존(EA19)과 EU 28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각각 -1.2%와 -1.3%를 기록하여 전 분기(각각 -1.0%, -1.1%)에 비해 악화됨
- (EA19) 2017년 2분기 총수입은 GDP 대비 46.0%, 총지출은 47.2%를 기록

- (EU28) 2017년 2분기 총수입은 GDP 대비 44.6%, 총지출은 46.0%를 기록
- 총수입은 유로존과 EU 모두에서 감소하였으나, 총지출은 유로존에서 소폭 감소한 반면 EU에서는 변동 없이 유지됨

〈표 3〉 유로존(EA19) 및 EU 28개국의 2017년 2분기 계절조정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2016Q2	2016Q3	2016Q4	2017Q1	2017Q2
EA19					
재정수지	-1.5	-1.6	-1.2	-1.0	-1.2
총수입	46.1	46.2	46.2	46.3	46.0
총지출	47.7	47.8	47.3	47.3	47.2
EU28					
재정수지	-1.7	-1.7	-1.2	-1.1	-1.3
총수입	44.7	44.8	44.8	44.9	44.6
총지출	46.4	46.5	46.0	46.0	46.0

주: EA 및 EU 수치는 국가별 수치의 가중 평균임

출처: EU 통계청, 보도자료, 2017.10.24.

〈자료 수집 및 정리: 장준희 연구원〉

³⁾ 출처: EU 통계청, <http://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8332646/2-24102017-BP-EN.pdf>, 2017.10.24.



IMF

■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7 발표
(2017.10.10.)⁴⁾

- (세계) 2017~18년 세계 경제의 강한 회복세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2017년 3.6%, 2018년 3.7%로 지난 4월 전망 대비 각각 0.1%p 상향 조정됨
 - 세계 투자 및 무역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7~8월 구매자관리지수 등을 감안할 때 2017년 3사분기에도 세계 경제성장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선진국) 경제성장률 전망은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특히 유로지역)으로 2017년 전망치가 2.2%로 상향조정(4월 전망치 2%)되었고, 2018년은 2.1%로 전망치 동일
 - (미국) 양호한 금융시장 여건과 기업 · 소비자 심리 개선으로 2017년 2.2% 성장 전망
 - (유로지역) 세계무역 확대와 강한 내수 성장세로 2017년 2.1%, 2018년 1.9% 성장 전망
 - (일본) 대외수요 증가 및 경기부양책으로 2017년 경제성장률은 1.5%로 전망
-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중국의 강한 성장세를 반영하여 2017년은 4.6%, 2018년은 4.9%로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승(4월 전망치 대비 각각 0.1%p 상향 조정)
 - (중국) 경기부양책 및 공급 측면의 개혁으로 2017년 경제성장률 6.8% 전망
- (위험요인) 세계 금융시장 여건의 부정적 변화 발생, 중국의 급속한 신용확대가 금융시장에 미치

는 부정적 영향, 선진국의 낮은 물가 지속, 자국 중심주의 정책 심화 등

- (정책권고) 세계 경기회복세를 활용하여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유지와 국제적 협력 강화가 중요
 - 구조개혁과 성장친화적 재정정책을 통해 생산성 제고 및 노동 공급 지원이 필요
 - 선진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달성할 때까지 경기대응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신흥국 및 개도국에서는 재정여력이 제한적이므로 확장적 통화정책을 운용
 - 세계 경제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보호주의 정책은 지양할 필요

4) 출처: IMF,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17/09/19/world-economic-outlook-october-2017>



〈표 4〉 세계 경제 전망

(단위: %)

	실적치	전망치		'17년 7월 전망 대비 차이 ¹⁾		'17년 4월 전망 대비 차이 ¹⁾	
	2016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World Output	3.2	3.6	3.7	0.1	0.1	0.1	0.1
Advanced Economies	1.7	2.2	2.0	0.2	0.1	0.2	0.0
United States	1.5	2.2	2.3	0.1	0.2	0.1	-0.2
Euro Area	1.8	2.1	1.9	0.2	0.2	0.4	0.3
Japan ²⁾	1.0	1.5	0.7	0.2	0.1	0.3	0.1
United Kingdom	1.8	1.7	1.5	0.0	0.0	-0.3	0.0
Canada	1.5	3.0	2.1	0.5	0.2	1.1	0.1
Other Advanced Economies ³⁾	2.2	2.6	2.5	0.3	0.1	0.3	0.1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4.3	4.6	4.9	0.0	0.1	0.1	0.1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0.4	2.1	2.1	0.4	0.0	0.4	0.0
Emerging and Developing Asia	6.4	6.5	6.5	0.0	0.0	0.1	0.1
China	6.7	6.8	6.5	0.1	0.1	0.2	0.3
India ⁴⁾	7.1	6.7	7.4	-0.5	-0.3	-0.5	-0.3
ASEAN-5 ⁵⁾	4.9	5.2	5.2	0.1	0.0	0.2	0.0
Emerging and Developing Europe	3.1	4.5	3.5	0.1	0.3	1.5	0.2
European Union	2.0	2.3	2.1	0.2	0.2	0.3	0.3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	3.6	4.6	5.2	0.0	0.0	-0.1	-0.1
World Trade Volume(goods and services)	2.4	4.2	4.0	0.2	0.1	0.4	0.1
Imports-Advanced Economies	2.7	4.0	3.8	0.0	0.2	0.0	-0.2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2.0	4.4	4.9	0.1	0.2	-0.1	0.6
Exports-Advanced Economies	2.2	3.8	3.6	-0.1	0.2	0.3	0.4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2.5	4.8	4.5	0.1	0.0	1.2	0.1
Commodity Prices(U.S. dollars)							
Oil ⁶⁾	-15.7	17.4	-0.2	-3.8	-0.3	-11.5	0.1
Nonfuel(average based on world commodity export weights)	-1.8	7.1	0.5	1.7	1.9	-1.4	1.8
Consumer Prices							
Advanced Economies	0.8	1.7	1.7	-0.2	-0.1	-0.3	-0.2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⁷⁾	4.3	4.2	4.4	-0.3	-0.2	-0.5	0.0

주: 1) July 2017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April 2017 World Economic Outlook

2) 일본의 국민계정 수치는 2016년 12월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포괄적인 개정을 반영('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에서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으로 전환하고, 기준연도를 2005년부터 2011년까지로 갱신)

3) G7국가들(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과 유로지역 국가들 제외

4) 인도의 실적치, 전망치 데이터는 회계연도 기준이며, 2011년부터 GDP는 2011/12년 회계연도를 기준 년으로 삼은 시장가격 기준 GDP

5)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6) 영국 브렌트(Brent), 두바이(Dubai), 미 서부텍사스의 중질유(Intermediate crude oil)의 단순평균가격. 2016년 원유의 평균가격은 배럴당 42.84달러, 선물시장에 기초한 가격은 2017년 50.28달러, 2018년은 50.176달러

7)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제외

참고: 실질실효환율은 2017년 7월 20일부터 8월 17일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간주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7, Table 1.1.



■ Fiscal Monitor, October 2017 발표(2017.10.11.)⁵⁾

- (배경) 지나친 불평등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정치 극단화를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장 둔화를 야기하므로 불평등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
- (분석) 중국과 인도의 영향으로 세계 불평등도는 낮아졌으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불평등은 높아졌고, 경제그룹 간 불평등도 차이는 재분배 재정 정책 차이가 주된 영향
 - OECD 회원국 대상 고소득자의 세율은 2015년 평균 35%로 1982년의 62%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1980~90년대 조세의 소득 누진성이 크게 약화
 -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기존 자산조사를 통한 복지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논의
 - ☞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불평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봄
 - ^{*} 자산조사를 통해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존 제도의 경우 정보 제약에 따른 대상자 선정 오류, 높은 행정비용, 저소득층 사회적 낙인 등의 문제가 있음
 - ☞ 반대하는 입장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높은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근로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
 - 기본소득 도입을 가정할 경우 불평등도 감소효과가 있었으나,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6~7% 정도의 재정 부담이 발생
 - ☞ 지니계수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5포인트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 ☞ 1인당 중위소득의 25%로 기본소득 설정 시 선진국에서는 GDP 대비 6~7%, 신흥국 및

- 개도국에서는 3~4%의 재정 부담이 발생
- (정책권고) 누진세율 강화, 기본소득, 교육 · 의료 기회 균등 등의 재분배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국가별 사회적 선호와 행정능력, 재정여력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할 필요
 - 누진세율의 조정
 - ☞ (선진국) 상대적으로 소득세의 누진도가 높지 않으므로 고소득자의 한계세율을 높이더라도 경제성장을 저해하지는 않음
 - ☞ (신흥국 및 개도국) 미흡한 행정체제로 인해 소득세 인상은 한계가 있으므로, 과세기반 확대, 사치재 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해 재분배 정책의 재원마련이 우선
 - 기본소득
 - ☞ (선진국) 기존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진 국가들에서는 기본소득이 효과적인 대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기존 이전지출의 보상 범위 또는 누진성에 격차가 있는 경우 자격요건 규정 개정 혹은 수당 수급 촉진 등으로 격차 해소가 중요
 - ☞ (신흥국 및 개도국) 누진성이 낮고 이전지출의 보상범위 격차가 큰 국가들에 기본소득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재정여건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
 - 교육 확대는 교육성과의 불평등을 낮추고 미래의 소득 불평등을 감소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 수준의 향상은 사회 복지 및 생산성 제고, 고용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연구원)

5) 출처: IMF,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M/Issues/2017/10/05/fiscal-monitor-october-2017>



■ OECD, *Preventing Ageing Unequally* 보고서 발표(2017.10.18.)⁶⁾

- OECD는 기대수명과 불평등의 증가 추세를 분석하고, 현재의 젊은 세대들이 겪게 될 노년의 삶의 변화 및 이에 대한 대응 정책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

- (주요 결과) 현재 젊은 세대들은 노년에 더욱 높은 불평등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며 196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들이 겪는 노년의 삶은 크게 바뀔 것임
 - 사회경제적 그룹에 따라 건강 불평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며 세대가 거듭될수록 불평등이 점차 증가해왔다고 평가

* OECD 평균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1980년에는 20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은 28명, 2050년에는 53명이 될 전망

- ☞ 가족 규모의 감소, 근로 시기의 불평등 확대, 연금 소득을 감축하는 개혁으로 일부 그룹은 더 높은 빈곤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임
- ☞ 미래의 노년층은 수명이 늘어나지만 더욱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직면하게 되고, 임금 및 가구 수입의 불평등이 확대될 것임

- 건강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어린 나이부터 형성되기 시작하고 건강, 교육, 고용, 소득의 불리한 조건은 서로 강화되고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악화됨

- ☞ 25세 남성 중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의 수명은 낮은 교육 수준의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로 약 8년 더 길 것으로 전망(여성의 차이는 4.6년)

-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일을 더 적게 하고 적은 임금을 받으며, 좋지 않은 건강 상태로 인한 평생소득 감소가 고학력 남성은 17%인 반면 저학력 남성은 33%로 나타남

- 저소득자는 고소득자보다 기대수명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연금총액이 더욱 감소(약 13%)함

- ☞ 은퇴 연령의 상향 조정은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간 연금총액의 불평등을 확대하지만 그 영향은 작은 편임

- 노년층의 성별 격차는 상당 부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연금 지급액은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27% 더 낮으며, 노년 빈곤도 여성이 훨씬 높음

- 노년층의 불평등 문제는 신흥경제국에서 더욱 심각함

- ☞ 특히 브라질,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는 상대적으로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OECD 국가들에 비해 건강의 불평등도 더욱 심하며, 효과적인 사회안전망이 미비함

- (주요 권고사항)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국가들은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 중점을 두고 생애주기적 접근법(life course approach)을 활용해야 함

- (시간 경과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되기 전에 불평등을 “예방”) 양질의 보육·육아·교육 서비스

6) 출처: OECD, <http://www.oecd.org/newsroom/population-ageing-and-rising-inequality-will-hit-younger-generations-hard.htm>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을 참고

- 제공, 소외 계층 청소년의 취업 지원, 특정 위험 집단에 대해 예방을 위한 건강 지출 확대 등
- (고착화된 불평등을 “완화”) 의료 서비스를 환자 중심의 접근⁷⁾ 방식으로 전환, 고용서비스는 실업자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노년층 고용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
 - (노년층의 불평등에 “대응”) 퇴직소득 시스템 개혁이 노년층의 불평등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불평등을 완화할 수는 있음
 - ☞ 잘 설계된 1층 연금⁸⁾을 통해 평균수명의 사

회경제적 차이가 연금 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

- ☞ 또한 재가보호(home care)를 적정 가격에 제공하고 비공식 간병인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여 장기 요양보호서비스의 불평등을 완화

- OECD, 2017년 2분기 고용률(OECD Quarterly Employment Situation) 발표(2017.10.17.)⁹⁾
 - (OECD 전체) OECD 회원국의 2017년 2분기 고용률(15~64세)은 전 분기 대비 0.2%p 상승한 67.6%로 나타남

〈표 5〉 OECD 회원국의 고용률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08	2016				2017	
					Q2	Q1	Q2	Q3	Q4	Q1	Q2
OECD 전체	65.1	65.7	66.2	66.9	66.5	66.8	66.8	67.0	67.2	67.4	67.6
G-7	68.0	68.7	69.1	69.9	69.6	69.7	69.7	69.9	70.1	70.3	70.5
유럽연합	64.1	64.8	65.6	66.6	65.8	66.2	66.5	66.7	66.9	67.2	67.6
유로지역	63.5	63.8	64.5	65.4	65.9	65.1	65.3	65.5	65.7	65.9	66.2
호주	72.0	71.6	72.2	72.4	73.3	72.5	72.4	72.4	72.3	72.4	72.8
캐나다	72.4	72.3	72.5	72.6	73.6	72.5	72.5	72.4	72.9	73.3	73.3
프랑스	64.1	63.8	63.8	64.2	64.9	64.2	64.1	64.1	64.2	64.4	64.8
독일	73.5	73.8	74.0	74.7	69.8	74.3	74.4	74.9	75.0	74.9	75.1
이탈리아	55.5	55.7	56.3	57.3	58.8	56.8	57.4	57.3	57.4	57.7	57.8
일본	71.8	72.8	73.4	74.4	70.9	74.1	74.2	74.6	74.7	75.0	75.2
스페인	54.8	56.0	57.8	59.6	65.1	59.1	59.3	59.7	60.1	60.4	61.0
영국	70.5	71.9	72.7	73.5	71.8	73.3	73.6	73.5	73.7	73.9	74.2
미국	67.4	68.1	68.7	69.4	71.2	69.3	69.2	69.4	69.6	69.8	70.0
한국	64.4	65.3	65.7	66.1	63.9	65.9	65.9	66.2	66.3	66.5	66.6

주: 15~64세, 계절조정

출처: OECD Quarterly Employment Situation

7) patient-centred approach: 환자가 의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환자의 의견과 선호를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 반영하는 방식(역주)

8) first-tier pension: OECD는 연금 체계를 1~3층 체계로 구분하고 있음. 1층 연금은 의무적 공적연금과 같이 연금 제도상 노령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정의되며 국가별 1층 연금의 구조와 수준은 매우 다양함

9) 출처: OECD, <http://www.oecd.org/newsroom/employment-situation-second-quarter-2017-oecd.html>



- 유로지역의 2분기 고용률은 전 분기 대비 0.3%p 증가한 66.2%를 기록
- 전 분기에 비해 2분기 고용률은 영국(74.2%)이 0.3%p, 일본(75.2%)과 미국(70.0%)이 0.2%p, 한국(66.6%)이 0.1%p 상승함
- 캐나다(73.3%)의 고용률은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
- 2분기 고용률은 전 분기에 비해 멕시코(61.1%)가 0.3%p, 뉴질랜드(76.2%)가 0.5%p 하락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해란 전문연구원〉

-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급여세(payroll(social insurance) taxes)는 각각 2.5%, 4.3% 증가하였으나, 법인세(-1%)와 기타수입(-12.2%)은 하락

- (세출) 지출 총규모는 전년(3조 8,520억달러) 대비 3.4%(1,300억달러) 증가한 3조 9,820억달러(GDP 대비 21%)를 기록

- 사회보장지출(3.2%), 메디케어(3.9%)¹¹⁾ 및 메디케이드(1.8%) 등 3대 주요 의무지출 모두 증가



미국

- 미 의회예산처(CBO), FY2017 결산 추정치 발표(2017.10.6.)¹⁰⁾

- (재정수지) 2017회계연도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3.5%, 전년 대비 0.3%p 증가
- (세입) 전년 대비 1.4%(470억달러) 증가한 3조 3,140억달러(GDP 대비 약 17.4%)를 기록

- 미 의회 상원, 2차 긴급 재난 지원(emergency disaster supplemental) 추경예산통과(2017.10.24.)¹²⁾

- 미 의회 상원은 2차 긴급 재난 추경예산을 82:17로 통과시켰으며, 입법 발효 시 지난 1차 추경예산¹³⁾(H.R. 601, 2017.9.8. 입법)에 이어 총 365억달러 규모의 2차 신규 재난지원 자금이 집행될 예정

* 긴급 재난 1차 추경예산은 허리케인(Harvey & Irma) 피해

〈표 6〉 미국 재정(실적) 추이

(단위: 십억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실적									추정
수입	2,524	2,105	2,163	2,303	2,450	2,775	3,020	3,249	3,267	3,314
지출	2,983	3,518	3,457	3,603	3,537	3,455	3,504	3,688	3,854	3,982
재정적자 (GDP 대비%)	459 (3.2)	1,414 (9.9)	1,294 (8.7)	1,300 (8.5)	1,087 (6.8)	680 (4.1)	483 (2.8)	439 (2.5)	587 (3.2)	668 (3.5)

출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Department of Treasury

10) CBO, <https://www.cbo.gov/system/files/115th-congress-2017-2018/reports/53181-mbr.pdf>

11) Medicare outlays are net of offsetting receipts

12) 미 의회 상원 세출위원회, <https://www.appropriations.senate.gov/news/minority/senate-passes-second-emergency-disaster-supplemental>

13) 미 하원 세출위원회,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395049>

복구를 위해 편성되었으며, 2차 추경예산안도 허리케인, 산불(wildfire) 피해, 자연재해(natural disasters) 등에 대응하여 편성함

◇ 추경예산 요건

- 미국 연방법전 제31편(Subtitle II, The Budget Process)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예산 제출 후 효력이 발생한 법에 의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 시 어느 때나 의회에 추가 세출에 대한 제안 제출 가능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 전문연구원〉



일본

■ 내각부, 중장기 경제 · 재정에 관한 전망 발표(2017. 7.18.)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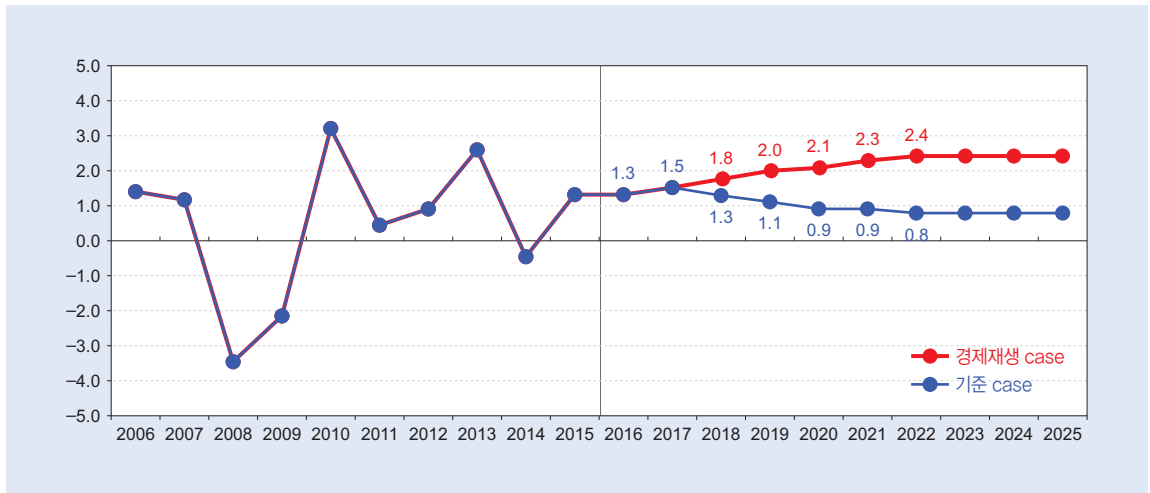
- (경제전망) 2017년도 실질성장률은 1.5%, 명목 2.5%로 당초 1월 전망을 유지하는 한편, 2018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실질 1.4%, 명목 2.5%로 전망

* 중장기 경제 · 재정전망은 2018년~2025년까지의 중기 경제재정전망을 연 2회(1월, 7월) 발표하며, 거시경제 시나리오별 가정, 재정의 주요가정, 시산결과로 구성됨

* 일본정부는 명목GDP 600조엔을 달성함과 동시에 기초재정수지를 2020년까지 흑자화하는 동시에 GDP 대비 채무비율의 안정적 인하를 목표로 함

[그림 1] 실질GDP 성장률(1월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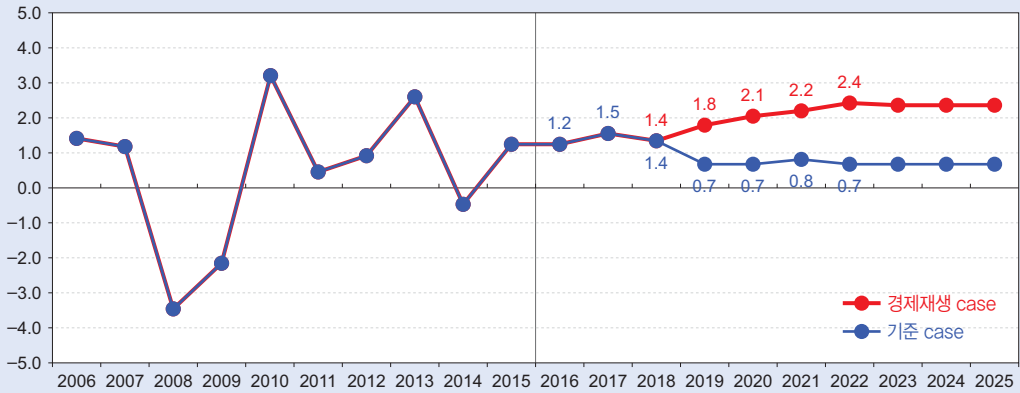


14) 일본 내각부, http://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17/0718/shiryo_01-1.pdf
http://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17/0718/shiryo_01-2.pdf



[그림 2] 실질GDP 성장률(7월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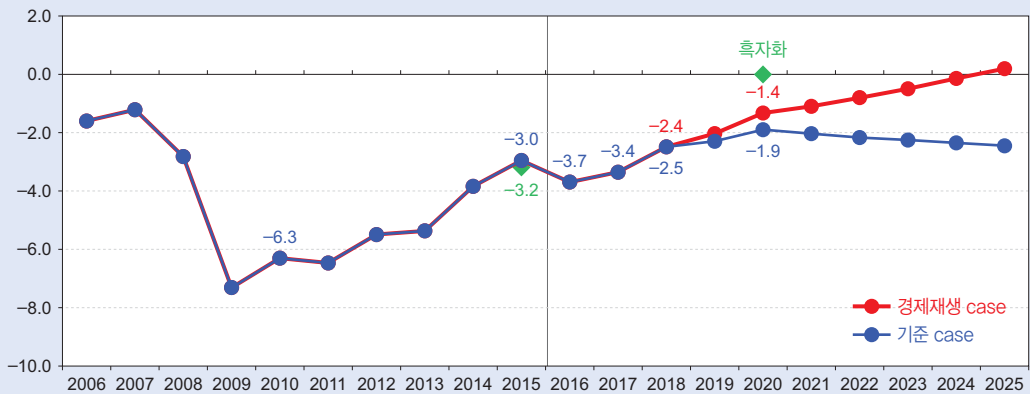


- (재정전망) 중앙·지방 기초재정수지는 2015년도에 3.0%적자로 2010년 대비 적자반감목표(-3.2%)를 달성하였고, 2018년도엔 13.4조엔 적

자(GDP 대비 -2.4%)로 경제·재정 일체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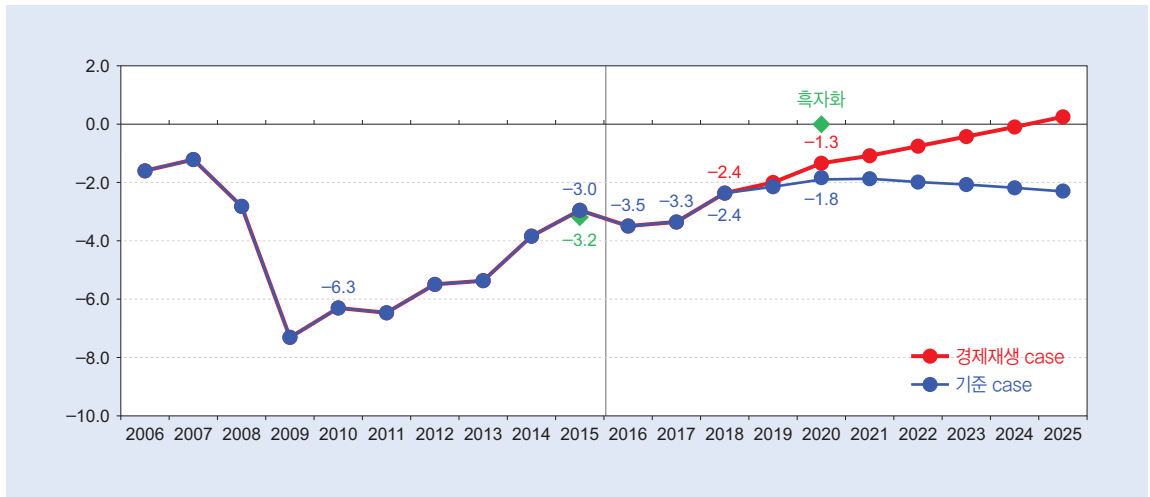
[그림 3] 중앙·지방의 기초재정수지(1월 전망)

(단위: %)



[그림 4] 중앙 · 지방의 기초재정수지(7월 전망)

(단위: %)



■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발표(2017.7.18.)¹⁵⁾

- (경제상황) 4년 반 동안의 아베노믹스 추진을 통해 기업수익, 고용 및 임금을 중심으로 경제의 순환 메커니즘이 형성되었으나, 성장잠재력 부진 및 임금상승률이 정체되는 상황이 지속
- (재정상황) 세출면에서 지난 2년간 '경제 · 재정재생계획'에 근거해 사회보장개혁을 비롯한 세출효율화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달성 및 GDP 대비 국가채무의 감축을 위해 지속적 성장을 통한 세수증대 및 국채발행에 의존한 예산편성 지양 필요
- (예산편성 포인트) '경제재생 없이는 재정건전화

없음'을 기본방침으로 「경제 · 재정재생계획」 및 「개혁공정표」에 의거해 세입 · 세출 개혁을 추진

- (인재양성예산) 인재투자과 지역경제 · 중소기업 · 서비스업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은 「미래투자전략 2017」(6.9일 개산요구)¹⁶⁾을 토대로 기반 마련

- (증거기반 예산편성) 증거기반 정책수립(EBPM: Evidence Based Policy Making) 원칙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점의 예산 편성을 추진

☞ 지역별 의료 · 간병서비스 불균형 완화를 위한 행정서비스 개편, 대학교육의 질 · 성과 등 관련 정보공개, 선진 · 우수사례 발굴 · 보급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주력

¹⁵⁾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 「平成 30 年度予算の全体像」(2017.7.18.)
http://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17/0718/shiryo_03.pdf

¹⁶⁾ 아베노믹스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본의 국가전략인 '일본재흥전략(2013년~2016년)'이 '미래투자전략(2017년)'으로 전환



- ☞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노인층으로 진입하는 2025년의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경제·재정 재생계획」 44개의 개혁항목을 포함해 재원확보와 급부억제 등의 과제를 착실하게 실행
- (세출·세입 동시 개혁)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세출증가 억제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과세기반 확대 등 안정적인 세입기반 마련
- ☞ 지난 2년간 집중개혁기간의 사회보장비 실

질적 증가는 1조엔 정도로 억제하였으므로, 2018년도에는 사회보장관련비의 증가분이 고령화에 따른 자연증가분(1.5조엔)을 넘지 않도록 경제·물가 동향을 감안해 기초 유지

- 2017년 2분기 GDP 성장률 수정(2차 속보치) 발표 (2017.9.8.)¹⁷⁾

- (GDP 성장률) 2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6%(연율 2.5%), 명목 0.7%(연율 3.0%)로

〈표 7〉 2017년 2분기 실질GDP 성장률 2차 속보치(계절조정)

(단위: 전기 대비, %)

항목		2016			2017			2017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기여도	2분기 연율환산
						1차	2차		
GDP		0.5	0.2	0.4	0.3	1.0	0.6	***	2.5
GDP 연율환산		2.0	0.9	1.6	1.2	4.0	2.5	***	—
국내수요		0.4	-0.2	0.1	0.2	1.3	0.9	(0.9)	3.8
	민간수요	1.0	-0.2	0.3	0.2	1.3	0.8	(0.6)	3.1
	민간소비	0.1	0.4	0.1	0.4	0.9	0.8	(0.5)	3.4
	주택투자	3.2	2.8	0.2	1.0	1.5	1.3	(0.0)	5.1
	설비투자	1.4	-0.3	2.0	0.5	2.4	0.5	(0.1)	2.1
공적수요		-1.2	-0.0	-0.4	0.0	1.3	1.5	(0.4)	6.0
	정부소비	-1.3	0.2	0.0	-0.1	0.3	0.4	(0.1)	1.6
	공적투자	-0.6	-0.9	-2.4	0.4	5.1	6.0	(0.3)	26.1
	공적재고증감	(-0.0)	(-0.0)	(0.0)	(0.0)	***	***	(0.0)	***
총고정자본형성		1.2	0.0	0.8	0.6	2.8	1.7	(0.4)	6.0
재화·서비스 순수출		(0.1)	(0.4)	(0.3)	(0.1)	***	***	(-0.3)	***
	수출	-0.9	2.1	3.1	1.9	-0.5	-0.5	(-0.1)	-1.9
	수입	-1.2	-0.2	1.4	1.3	1.4	1.4	(-0.2)	5.7
GDP 디플레이터		-0.3	-0.2	0.1	-0.4	0.2	0.1		

주: 1) 전 분기 대비 차이를 나타낸 수치임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출처: 내각부, 2017(平成29)年4~6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17) 일본 내각부, http://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files/2017/qe172_2/pdf/gaiyou1722.pdf

8.14 발표한 1차 속보치(1.0%)보다 하향 조정¹⁸⁾

- 내수기여도는 0.9%로 1차 속보치(1.3%)보다 하락하였으며, 재화서비스의 순수출 기여도는 -0.3%로 기존 1차 값과 동일
- GDP 성장률의 조정의 원인은 설비투자가 법 인기업통계를 반영한 결과 원자재, 재공품이 하향개정된 것에 따라 당초 추계보다 크게 축소(2.4%→0.5%)됨
- 민간최종소비지출(0.9→0.8%)은 요식서비스, 음료 등의 하락으로 조정, 민간주택(1.5%→1.3%)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하락으로 인해 축소

(자료 수집 및 정리: 최경진 전문연구원)



독일

■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가을경제전망(Herbstprojektion)* 발표(2017.10.11.)¹⁹⁾

* 가을경제전망은 통계청, 연방은행과 함께 에너지경제부 내 작업반에서 이루어지며, 거시경제 주요 수치는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예산편성을 위해 제공

- (경제성장) 세계 경제성장 및 강건한 내수시장에 힘입어 실질GDP 성장률은 2017년 2.0%, 2018년 1.9%로 전망
- (수출) 세계 경제의 성장추세로 2017년 3.5%, 2018년 4.0%로 증가할 전망
- (투자) 수출 증가추세 및 산업생산력 강화를 반영하여 설비투자는 2017년 2.0%, 2018년 3.7%로 높게 전망하였고, 건설투자 또한 저금리 및 주택수요 증가로 2017년 4.3%, 2018년 3.4%로 전망

〈표 8〉 가을경제전망 주요수치

(단위: %)

	2016	2017	2018
실질GDP 성장률	1.9	2.0	1.9
가계최종소비 증가율	2.1	1.8	1.6
정부최종소비 증가율	3.7	1.6	1.7
총투자 증가율	3.1	3.5	3.6
설비투자	2.2	2.0	3.7
건설투자	2.7	4.3	3.4
수출 증가율	2.6	3.5	4.0
수입 증가율	3.9	4.4	4.7
고용인구(백만명)	43.6	44.3(1.6)	44.8(1.1)
실업인구(백만명)	2.69	2.54	2.47

출처: 연방경제에너지부, Presse, Pressemitteilung, 2017.10.11.

18) 조정은 1차 속보치와 2차 속보치의 사이에 발표되는 통계(서비스 산업동향조사, 광공업지수, 법인 기업통계조사 등)의 반영으로 인한

19) 연방경제에너지부, Presse, Pressemitteilung, 2017.10.11.

<http://www.bmw.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17/20171011-zypries-deutschland-bleibt-auf-wachstumskurs.html>



- (민간소비) 안정적인 노동시장 및 임금인상 추세로 2017년 1.8%, 2018년 1.6%로 전망
- (고용인구) 노동수요 증가로 고용인구 증가율은 2017년 1.6%, 2018년 1.1%로 매년 꾸준히 상승할 전망

(자료 수집 및 정리: 엄동욱 연구원)



영국

- 영국 통계청, 2017년 9월 공공부문 재정 현황 발표 (2017.10.20.)²⁰⁾
 - 2017년 4~9월의 공공부문 순차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5억파운드 감소한 325억파운드로,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규모
 - FY2017-18 회계연도가 끝나는 2018년 3월의 공공부문 순차입 규모는 동기 대비 126억파운드 증가한 583억파운드로 전망

- 9월 기준 공공부문 순채무는 1조 7,853억파운드로(GDP 대비 87.2%) 전년 대비 1,452억파운드(GDP 대비 4.4%) 증가

- 영국 통계청, 2017년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 발표(2017.10.25.)²¹⁾
 - 2017년 3분기 GDP 성장률은 0.4%로, 지난 1·2 분기의 성장률인 0.3% 대비 다소 상승함
 - 서비스업이 전 분기와 같은 0.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GDP 성장률에 가장 큰 기여를 함
 - 전 분기에 위축되었던 제조업이 1.0%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건설업은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임

〈표 9〉 공공부문 재정¹⁾

(단위: 십억파운드)

	4~9월			전체 회계연도 ²⁾		
	2016/17	2017/18	% 변화	2016/17	2017/18 ³⁾	% 변화
순차입 ⁴⁾	35.0	32.5	-7.2	45.7	58.3	27.5
경상수지적자	20.1	16.4	-18.6	7.0	18.2	159.6
순투자	14.9	16.1	8.2	38.6	40.1	3.8
순채무	1,640.1	1,785.3	8.9	1,726.9	1,829.7	6.0
(GDP 대비 %)	82.8	87.2	-	85.6	88.8	-

주: 1) 공공은행을 제외한 전년 및 금년 4~9월과 전체 회계연도의 재정전망 비교

2) 영국의 회계연도는 4월에 시작하여 후년 3월에 끝남

3) 예산책임청에서 2017년 3월 발표한 경제·재정전망에 실린 전망치

4) 순차입은 경상수지적자와 순투자의 합

출처: 영국 통계청

20) 영국 통계청,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53422/PSF_bulletin_-_September_2017.pdf

21) 영국통계청, <https://www.ons.gov.uk/economy/grossdomesticproductgdp/timeseries/ihya/pgdp>

〈표 10〉 분기별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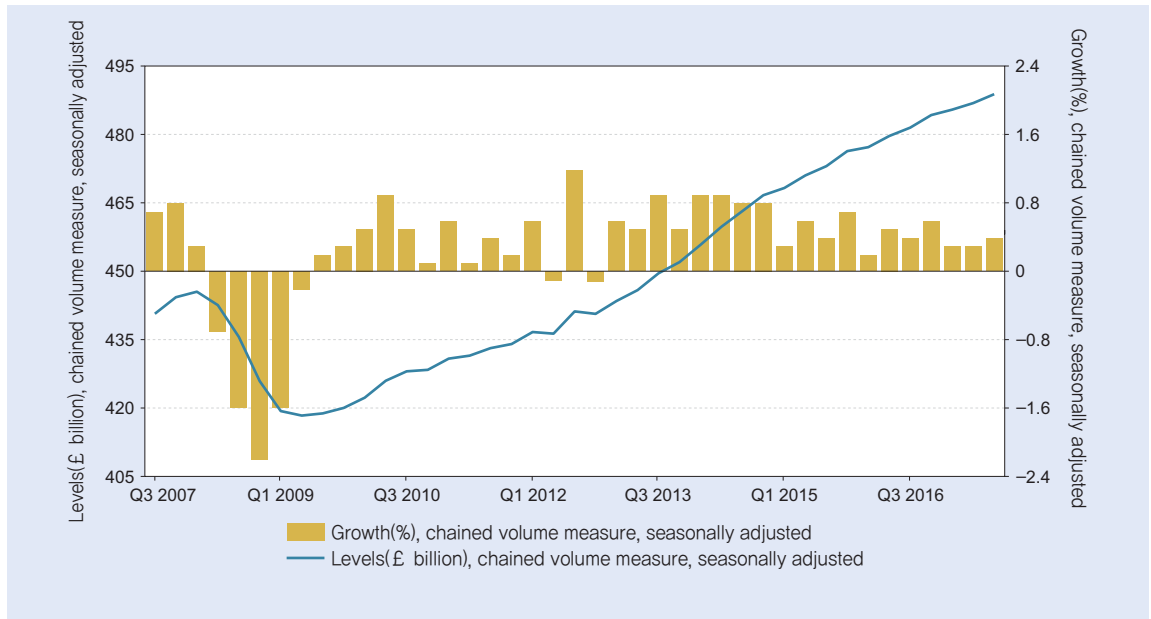
(단위: 전 분기 대비 %)

	2016				2017		
	Q1	Q2	Q3	Q4	Q1	Q2	Q3
GDP 성장률	0.2	0.5	0.4	0.6	0.3	0.3	0.4

출처: 영국 통계청

〔그림 5〕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십억파운드)



출처: 영국 통계청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소영 연구원〉



캐나다

1. 예산·결산 등

- 재무부, The Fiscal Monitor(2017년 4월~6월)발표²²⁾(2017.8.25.)
 - FY2017-18 1분기 재정수지는 약 1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1억캐나다달러 개선
 - (수입) FY2017-18 1분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5억캐나다달러(4.9%) 증가한 약 753억캐나다달러로, 고용보험료 수입 외에 모든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4%, 5.6% 증가하였으며, 비거주자 소득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
 - ☞ 소비세 및 관세 수입은 재화 및 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수입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여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
 - ☞ 고용보험료 수입은 2017년 고용보험료율이

인하된 것이 기인하여 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

- (프로그램 지출) FY2017-18 1분기 프로그램 지출은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정부부문 간 주요 이전지출, 직접프로그램 지출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27억캐나다달러(4.0%) 증가한 약 691억캐나다달러
 - ☞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9.1%, 정부부문 간 주요 이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직접프로그램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
- (이자지출) 전년 동기 대비 약 3억캐나다달러(4.2%) 감소한 약 61억캐나다달러로, 실질 수익률 채권(Real Return Bonds)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 하향조정에 기인

〈표 11〉 2017년 4월~6월 Fiscal Monitor 주요 결과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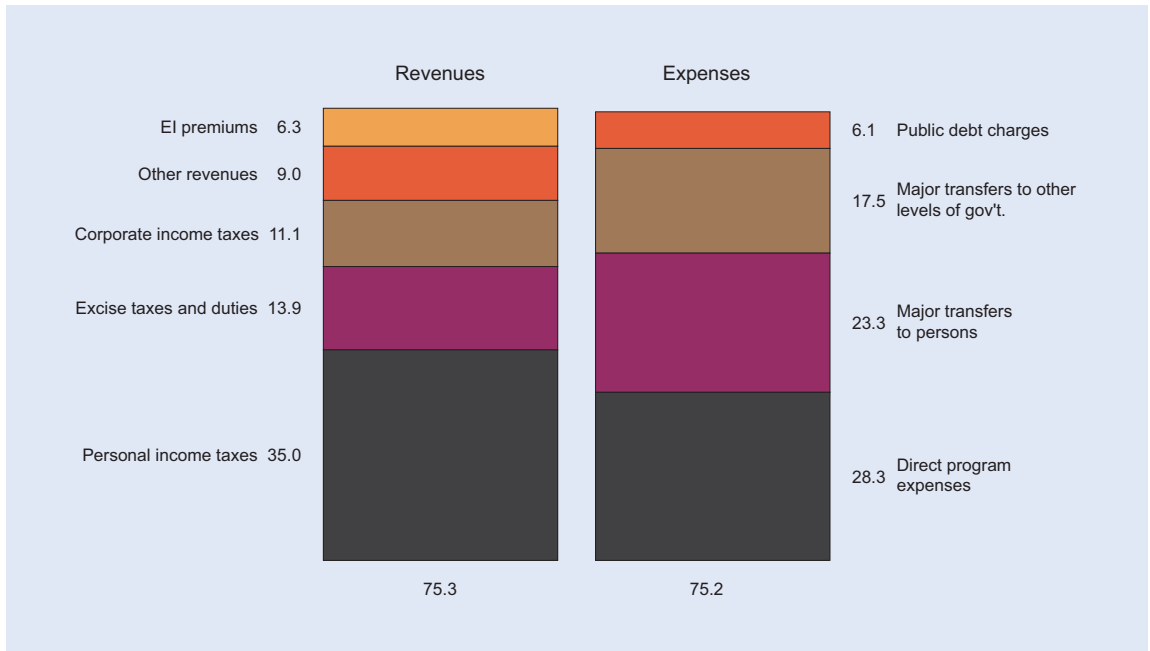
		FY2016-17	FY2017-18
수입(Revenues)		71,785	75,270
지출(Expenses)	프로그램지출(Program expenses)	-66,396	-69,068
	이자지출(Public debt charges)	-6,384	-6,119
재정수지(Budgetary balance)		-995	83

출처: 캐나다 재무부, The Fiscal Monitor April to June 2017, Table 1 일부 발췌, 2017.8.

²²⁾ 출처: 캐나다 재무부, <https://www.fin.gc.ca/fiscmon-revfin/2017-06-eng.asp>

[그림 6] 세입 및 세출구성(2017년 4월~6월)

(단위: 십억달러)



출처: 캐나다 재무부, *The Fiscal Monitor April to June 2017*, Table 1 일부 발췌, 2017.8.

■ 재무부, FY2016-17 결산보고서(Annual Financial Report) 발표(2017.9.19.)²³⁾

- FY2016-17 재정적자는 178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재정수지가 168억캐나다달러 악화된 규모이나, 2017년 예산안의 재정적자 추정치인 230억캐나다달러보다 적게 나타남
 - (총수입) FY2016-17 총수입은 전년 대비 0.7% 감소한 2,935억캐나다달러로, 이는 주로 고용보험료 수입과 기타 수입의 감소에 기인
 - (총지출) FY2016-17 총지출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3,113억캐나다달러로 이는 주로 프로그램지출 증가에 기인

▶ 프로그램 지출은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 지출,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 지출, 직접 프로그램 지출이 모두 증가한 것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6.0% 증가한 2,872억캐나다달러

- ▶ 이자지출은 낮은 평균 실효이자율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5.2% 감소한 241억캐나다달러를 기록

- (연방채무) FY2016-17 연방채무는 6,319억캐나다달러이며, GDP 대비 연방채무는 31.2%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

²³⁾ 출처: 캐나다 재무부, <http://www.fin.gc.ca/afr-rfa/2017/afr-rfa-2016-2017-eng.pdf>



- IMF에서 발표한 캐나다의 2016년 GDP 대비 일반정부 순채무는 27.6%로 G7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표 12〉 FY2016-17 결산보고서 주요 내용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구분	FY2015-16	FY2016-7
총수입	295.5(14.9)	293.5(14.5)
총지출	296.4(14.9)	311.3(15.4)
프로그램지출	271.0(13.6)	287.2(14.2)
이자지출	25.4(1.3)	24.1(1.2)
재정수지	-1.0(0.0)	-17.8(-0.9)
연방채무 ²⁾	616.0(31.0)	631.9(31.2)

주: 1) 괄호안의 수치는 GDP 대비 비중

2) 연방채무는 누적기준이며, 총부채에서 금융자산을 차감한 순채무에서 비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출

출처: 캐나다 재무부, FY2016-17 Annual Financial Report of the Government of Canada, Table 1 일부 발췌, 2017.9.

- 재무부, 가을 경제 보고서(Fall Economic Statement) 발표(2017.10.24.)²⁴⁾
 - 가을 경제 보고서를 통해 경제 및 중산층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성과와 중산층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
 - 아동복지급여(Canada Child Benefit: CCB) 급여 강화를 위해 2018년 7월 예정된 연간 생계비 인상을 2년 앞당겨 실시
 - 근로장려세제(Working Income Tax Benefit: WITB)에 대해 2019년부터 연간 5억캐나다달러씩 추가로 증액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

을 개선

-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기업 세율을 10%로 인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9%로 추가 인하하여 소기업의 투자,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
- 캐나다의 낮은 기업세율이 캐나다 상위 1% 부유층에게 불공정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세 시스템을 대폭 변경
- 가을 경제 보고서에서는 14개 그룹 민간부문 전문가²⁵⁾ 대상 경제전망 서베이(2017.9) 결과를 수정한 경제 및 재정 전망치를 발표
- (경제전망) 2017년 실질GDP 성장률은 3.1%, 2018년 실질GDP 성장률은 2.1%로 2017년 예산안 전망치인 2.0% 보다 상향조정
 - 2017년 예산안 전망치 대비 GDP 디플레이터(GDP inflation)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2017년 명목GDP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었으나, 유가가 하락할 전망에 따라 2018년 명목GDP 성장률은 2017년 예산안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을 나타낼 전망
 - 실질GDP 성장률의 상향 조정에 따라 실업률을 평균 0.3% 정도 하향 조정하여 2017년 실업률은 6.5%, 2021년 실업률은 6.1%일 것으로 전망

24) 캐나다 재무부, <http://www.budget.gc.ca/fes-eea/2017/docs/statement-enonce/fes-eea-2017-eng.pdf>

25) BMO Capital Markets,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CIBC World Markets,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Desjardins, IHS Global Insight, Industrial Alliance 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 Inc., Laurentian Bank Securities, National Bank Financial Markets, Royal Bank of Canada, Scotiabank TD Bank Financial Group, and the University of Toronto (Policy and Economic Analysis Program).

〈표 13〉 2017년 가을 경제전망치 조정 비교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17-21
실질GDP 성장률	Budget 2017 ¹⁾	1.4	2.0	2.0	1.7	1.7	1.8	-	1.8
	2017 Fall Economic Statement	1.5	3.1	2.1	1.6	1.7	1.7	1.8	2.0
명목GDP 성장률	Budget 2017	1.9	4.2	4.0	3.5	3.8	3.8	-	3.9
	2017 Fall Economic Statement	2.1	5.5	4.0	3.4	3.7	3.6	3.8	4.1
실업률	Budget 2017	7.0	6.9	6.7	6.7	6.6	6.4	-	6.6
	2017 Fall Economic Statement	7.0	6.5	6.3	6.3	6.4	6.3	6.1	6.3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Budget 2017	1.5	2.0	2.0	1.9	1.9	2.0	-	2.0
	2017 Fall Economic Statement	1.4	1.6	1.9	1.9	1.9	1.9	2.0	1.8

주: 1) 2017.8.31.에 발표된 2017년 2분기 데이터에 따라 개정된 캐나다 국민계정을 반영하여 재작성
출처: 캐나다 재무부, *Fall Economic Statement 2017*, Table A1.1 일부 발췌, 2017.10.

- (재정전망) 재정적자는 FY2017-18에는 199억캐나다달러, FY2018-19에는 186억캐나다달러로 2017년 예산안 전망치보다 개선된 수치를 나타낼 전망이며, FY2019-20에는 173억캐나다달러, FY2022-23에는 125억캐나다달러로 크게 감소할 전망
- 연방정부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FY2022-23에는 28.5%로 예상
- 재정전망은 2017 예산안 발표 이후 시행된 새로운 재정정책과 이번 가을경제 보고서에서 발표한 새로운 세제조치를 포함

〈표 14〉 2017년 예산안 재정전망치 대비 조정내역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Projection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Budget 2017 재정수지		-23.0	-28.5	-27.4	-23.4	-21.7	-18.8	n/a
Budget 2017 리스크 조정			3.0	3.0	3.0	3.0	3.0	
경제 및 재정적 요인에 의한 조정	재정수입	1.4	5.9	7.4	6.1	5.7	4.0	
	프로그램지출	3.7	2.4	3.2	4.0	3.1	3.4	
	이자지출	0.1	0.6	-0.3	-0.4	0.2	1.4	
2017 Fall Economic Statement 투자 및 정책에 의한 조정			-1.8	-1.6	-3.7	-4.0	-3.8	-4.2
리스크 조정			-1.5	-3.0	-3.0	-3.0	-3.0	-3.0
2017 Fall Economic Statement 재정수지		-17.8	-19.9	-18.6	-17.3	-16.8	-13.9	-12.5

출처: 캐나다 재무부, *Fall Economic Statement 2017*, Table A1.2 일부 발췌, 2017.10.



2. 기타

■ 통계청, 2017년 2분기 경제성장률 발표(2017.8.31.)²⁶⁾

- 2017년 2분기 캐나다의 실질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2%p 증가한 1.1%로, 이는 주로 최종 소비 지출과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가에 기인
 - 수출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1.9%p증가한 2.3%로, 에너지 제품 수출 증가(9.2%)에 기인하여 상품 수출이 2.8%p 증가했으며 서비스 수출은 0.1%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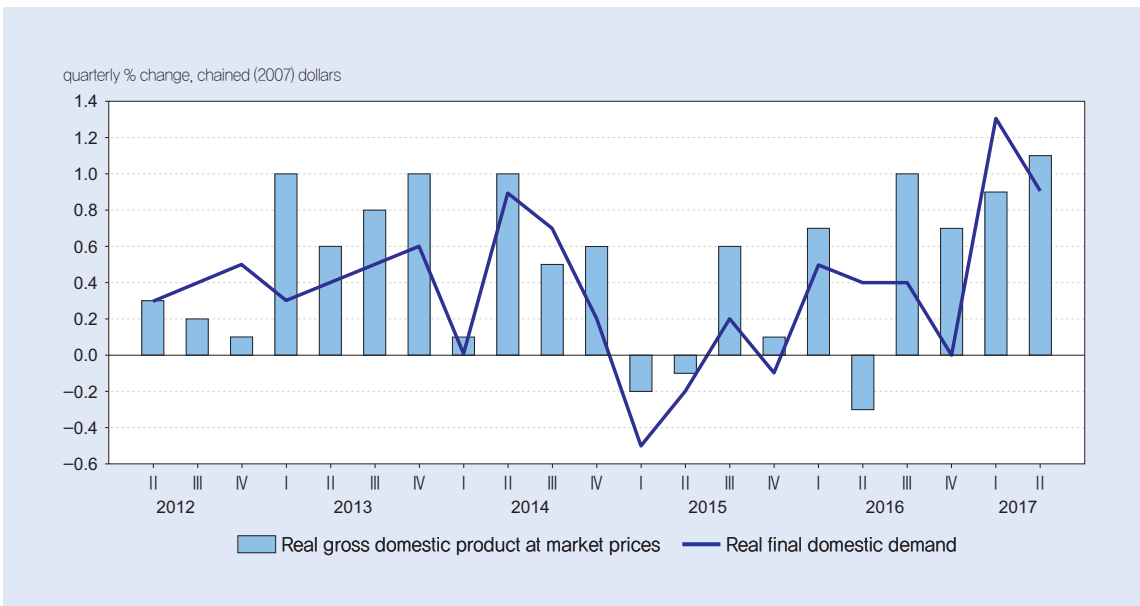
- 2017년 1분기 캐나다의 국내최종수요 성장률은 0.9%로 전 분기 대비 0.4%p 감소

■ 의회예산처(PBO), Fiscal Sustainability Report²⁷⁾ 2017 발표(2017.10.5.)²⁸⁾

- (인구 및 경제전망) 노인인구부양 비율은 향후 75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하여 2091년에는 45.5%에 이를 전망이며, 실질GDP 성장률은 2017~2022년 연평균 1.9%에서 2023~2091년 연평균 1.7%로 장기적으로 점차 감소할 전망

[그림 7] 분기별 실질GDP 및 국내최종수요의 성장률

(단위: %)



출처: 캐나다 통계청, Gross domestic product, income and expenditure, second quarter 2017, Chart 1, 2017.8.

²⁶⁾ 출처: 캐나다 통계청, <http://www.statcan.gc.ca/daily-quotidien/170831/dq170831a-eng.htm?HPA=1&indid=3278-1&indgeo=0>

²⁷⁾ 캐나다 연방정부, 지방정부,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을 평가를 위해 의회예산처의 중기재정분석을 확장한 보고서로, 향후 75년간(2017~2091)의 재정지속가능성을 평가

²⁸⁾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

http://www.pbo-dpb.gc.ca/web/default/files/Documents/Reports/2017/FSR%20Oct%202017/FSR_2017_FINAL_EN.pdf

- (인구 전망) 인구증가율은 2016년 1.2%에서 2040년에는 0.7%까지 감소한 후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것이며, 노인인구부양 비율은 2016년 24.5%에서 2040년 39.7%, 2091년에는 45.5%로 향후 75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
- (경제 전망) 2017~2022년 연평균 1.9%에서 2023~2091년 연평균 1.7%로 장기적으로 점차 감소할 전망
 - ☞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장기적으로 1.1%의 안정 상태로 수렴할 것이며,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은 2023~2091년 연평균 1.0%로 인구 증가로 인해 1982~2016년 연평균 1인당 실질GDP 성장률보다 0.3%p 낮게 나타날 전망

☞ GDP 디플레이터(GDP inflation)로 측정된 경제 전반의 물가 상승률은 중기적으로 2.0%에 수렴하고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2023~2091년 연평균 명목GDP 성장률은 3.7%로 1982~2016년 연평균보다 1.3%p 낮게 나타날 전망

- (재정지속가능성 평가)²⁹⁾ 현 재정정책하에서 총 일반정부 부문(연방정부, 지방정부, 공적연금) 관점의 순채무는 장기적으로 현 수준을 하회할 전망이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향후 75년 이내에 GDP 대비 100%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연방정부) 연방정부는 장기적으로 재정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GDP 대비 1.2% 규모의 영구적인 지출 증가 또는 세금 감면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 연방정부의 재정

〈표 15〉 장기 경제전망

(단위: %)

구분	1982-2016	2017-2022	2023-2091
Real GDP growth	2.4	1.9	1.7
Labour input growth	1.2	0.6	0.6
Labour productivity growth	1.1	1.3	1.1
Real GDP per capita growth	1.3	0.9	1.0
GDP inflation	2.6	2.1	2.0
Nominal GDP growth	5.0	4.0	3.7
3-month treasury bill rate	5.2	2.1	3.0
10-year government bond rate	6.4	3.3	4.0
Effective interest rate on federal debt	n/a	2.6	3.7

주: 캐나다 의회예산처,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7*, Table 2-2, 2017.10.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 및 캐나다 통계청

²⁹⁾ PBO의 재정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는 재정지속가능성을 재정갭(Fiscal gap)으로 평가. 재정갭은 장기적으로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입 또는 프로그램지출의 변화를 의미하며, 재정여력(Fiscal room)은 음(negative)의 재정갭을 의미(공적연금의 재정갭은 장기적으로 GDP 대비 순자산 비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입 또는 프로그램지출의 변화를 의미).



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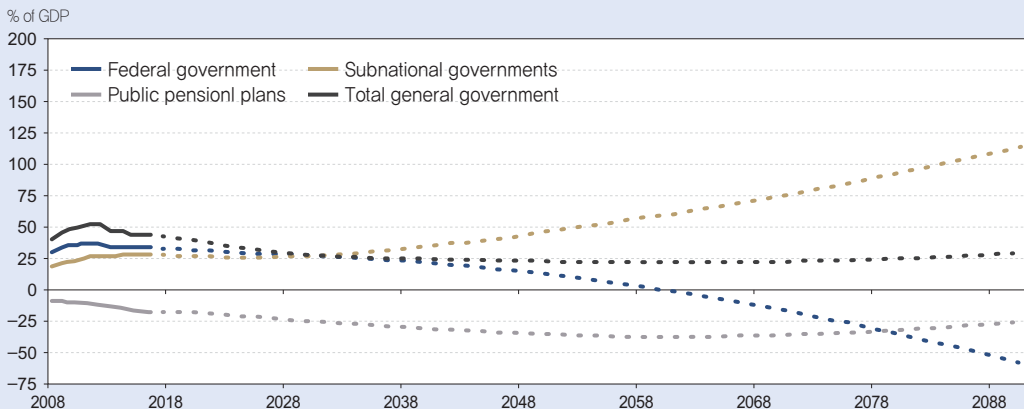
- ☞ 이는 작년 평가인 0.9%보다 상향 조정된 것으로 재정여력이 상향 조정된 것은 이자율 가정이 하향 조정된 것에 기인하며, 연방정부의 재정여력은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특히 노인 및 아동 지원)의 감소 예상에 의해 뒷받침
- ☞ GDP 대비 1.2% 규모의 영구적인 지출 증가 또는 세금 감면은 영구적으로 조세 부담을 9% 감소시킬 수 있거나 프로그램지출을 10% 증가시킬 수 있는 것과 동일
- (지방정부)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현 수준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인 28.0%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GDP 대비 0.9%의 규모의 영

구적인 조세 증가 또는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 고 추정

- ☞ 필요한 정책 이행의 규모가 전년(GDP 대비 1.5%) 대비 감소하였으며, 이는 보건의료 지출의 초과비용 증가(명목성장률과 인구고령화로 인한 증가를 초과하는 증가)에 대한 PBO의 가정이 부분적으로 변화된 것을 반영
- (공적연금) 공적연금(캐나다국민연금(CPP), 퀘벡주민연금(QPP))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전망으로, 두 연금 모두 GDP 대비 재정갭이 0일 것으로 예상
- ☞ 캐나다국민연금(CPP)에 대해서는 2016년 퇴직급여 대체율 및 연간 연금급여 징수 대 상소득 상한액 인상을 반영하여 추정

[그림 8] 정부 부문별 순채무 장기전망

(단위: GDP of %)



Source: Statistics Canada and Parliamentary Budget Officer.
Note: The projection period covers 2017 to 2091.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7*, Summary Figure 1, 2017.10.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은 전문연구원)

프랑스

- 공공서비스 개혁을 위한 ‘공공개혁 프로그램 2022(programme Action publique 2022)’ 착수 (2017.10.16.)³⁰⁾
 - 2017년 10월 13일 에두아르 필리프(Édouard Philippe) 총리와 제럴드 다르마닌(Gérald Darmanin) 공공계정 · 행동부 장관은 마띠뇽(Matignon)에서 ‘공공개혁 프로그램 2022’를 공식 발족
 - ‘공공개혁 프로그램 2022’는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 공무원에게 현대화된 근무 환경 제공
 - 2022년까지 GDP 대비 공공지출의 3%p 감축
 - 모든 미션, 공공정책 및 지출을 검토하기 위해 공공개혁위원회(Comité Action publique 2022, CAP 22)가 설립되었으며,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경제학자, 공공 및 민간 부문 인물), CEO, 국회 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
 - ‘공공개혁 프로그램 2022’에는 공공정책 검토 외에도 다음의 5가지 프로젝트를 포함
 -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공공정책 및 관리 방법의 디지털 기술로의 변환: 2022년까지 100% 디지털화된 행정 절차를 목표로 함
 - 인적자원 정책의 혁신: 공무원 직위, 보상, 채용, 관리 및 동기 부여, 업무의 질, 결근 방지, 교육, 경력 경로, HR 기능의 디지털화 등 공무원 관리 및 국가 주도 인적자원(HR) 정책의 개선

- 공공서비스의 행정 구역 개편: 지방분권화 심화, 중앙-지방 간 소통력 제고, 다양한 정부 수준 간 연계성의 지속,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
- 국가회계 및 예산 관리의 현대화: 다년간의 예산 관리 강화, 부처와 공공기관의 수입확대와 지출절감 달성 책임 확대, 조세부담률과 지출 측면에서 국가회계 및 예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이 프로그램은 향후 5년 동안 7억유로의 전용 기금으로 자금이 조달되며 그중 2018년에는 2억유로를 지원
- ‘공공개혁 프로그램 2022’의 향후 일정은 2단계로 구성
 - 첫 단계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이며, 공공개혁위원회(Comité Action publique 2022, CAP 22)가 미션, 공공정책 및 지출에 대해 재검토하고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공개혁 포럼을 개최
 - 2018년 3월부터 공공개혁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대통령의 중재를 거친 후 두번째 단계의 정교화가 시작될 것임

〈자료 수집 및 정리: 하에스터 전문연구원〉

30) 재무부, <https://www.economie.gouv.fr/lancement-programme-action-publique-2022>



호주

■ FY2016-17 결산보고서(Final Budget Outcome) 발표(2017.9.26.)³¹⁾

- FY2016-17 재정수입은 4,157억호주달러(GDP 대비 23.7%)로 FY2017-18 예산안의 전망치 대비 36.3억호주달러 증가
 - 이는 조세수입은 전망치 대비 24.7억호주달러, 세외수입은 11.6억호주달러 증가했기 때문
- FY2016-17 재정지출은 4,478억호주달러(GDP 대비 25.5%)로 FY2017-18 예산안의 전망치 대비 29.5억호주달러 감소
 - 기능별 지출에서는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의 지출이 1,532억호주달러로 지출총액 중 가장 큰 비중(34.2%)을 차지
- 재정적자는 350억호주달러로 GDP 대비 2.0% 규

모로 감소했으며, FY2017-18 예산안 전망치 대비 58억호주달러 개선됨

- 예산수지 적자는 332억호주달러(GDP 대비 1.9%)로 GDP 대비 예산수지 적자가 2.0% 이하를 기록한 것은 최근 4년 만에 처음
- 순채무는 3,223억호주달러(GDP 대비 18.4%)로 FY2017-18 예산안의 전망치 대비 28억호주달러 낮게 나타남
- FY2016-17 실질GDP 성장률은 1.9%로 FY2017-18 예산안 전망치(1.75%)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명목GDP 성장률은 무역 호조 등에 기인하여 6.0%를 기록하였다고 밝힘
- 또한 전체 고용은 FY2016-17에 약 25만여개 일자리가 창출되어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이는 FY2017-18 예산안의 전망치보다 약 1%p 높은 수치라고 밝힘

〈표 16〉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단위: 십억호주달러, %)

	2015-16 Outcome	2016-17 Estimate at 2017-18 Budget	2016-17 Outcome	Change on 2017-18 Budget
재정수입 (Revenue) ¹⁾ (GDP 대비)	395.1 (23.9)	412.1 (23.5)	415.7 (23.7)	3.6
재정지출 (Expenses) ¹⁾ (GDP 대비)	428.7 (25.9)	450.8 (25.7)	447.8 (25.5)	-3.0
재정수지 (Fiscal balance) ^{1) 2)} (GDP 대비)	-37.5 (-2.3)	-40.7 (-2.3)	-35.0 (-2.0)	5.8
예산수지 (Underlying Cash Balance) ³⁾ (GDP 대비)	-39.6 (-2.4)	-37.6 (-2.1)	-33.2 (-1.9)	4.4
순채무 (Net Debt) (GDP 대비)	303.5 (18.3)	325.1 (18.6)	322.3 (18.4)	-2.8

주: 1) 발생주의 기준

2) 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순자본투자

3) 예산수지는 현금주의 기준

출처: Final Budget Outcome 2016-17 September 2017

31) 출처: 호주 예결산 홈페이지, <http://www.budget.gov.au/2016-17/content/fbo/html/>

〈표 17〉 기능별 지출(Expenses by Function)

(단위: 백만호주달러)

	2015-16 Outcome	2016-17 Estimate at 2017-18 Budget	2016-17 Outcome	Change on 2017-18 Budget
일반공공서비스	24,209	27,172	26,280	-892
국방	26,013	28,464	28,051	-413
공공질서 및 안전	4,823	5,162	5,189	27
교육	32,121	33,237	32,594	-644
의료	69,301	73,820	74,445	625
사회보장 및 복지	152,124	155,698	153,192	-2,505
주거 및 지역사회개선	4,742	4,700	4,625	-75
여가 및 문화	3,462	3,609	3,623	14
연료 및 에너지	6,423	6,790	6,726	-64
농업, 산림, 어업	2,259	2,843	2,626	-217
광업, 제조업, 건설	3,103	3,559	3,253	-306
교통 및 통신	7,083	9,394	9,139	-255
기타 경제부문	9,199	9,840	9,354	-487
기타 목적	83,829	86,468	88,710	2,243
총지출	428,691	450,757	447,807	-2,950

출처: Final Budget Outcome 2016-17 September 2017, Table A1.

〈자료 수집 및 정리: 황보경 전문연구원〉



조세 · 재정 정책 및 연구 동향

■ 정책 및 연구 동향: 10.10.~11.9. 세미나 등: 11.1.~11.30.

* 이 자료는 국내외 조세 · 재정과 관련한 정책 및 연구 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세미나

세미나 개요	주최(주관)기관	개최일
■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정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일시: 17. 11. 24.(금) 13:30~18:00 • 장소: 엘타워 엘가든홀 • 주제: 복지재정의 현안과 증세방안 • 발표: 김태일 교수(고려대) 외 • 토론: 한종석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	한국법제연구원	17-11-24
■ 한국조세연구포럼-민주연구원 공동토론회 • 일시: 17. 11. 15.(수) 15:00~17:00 • 장소: 국회 본관 귀빈식당 • 주제: 조세개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발표: 정세은 교수(충남대) • 토론: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외	한국조세연구포럼	17-11-15
■ 2017년 재정학 공동학술대회 • 일시: 17. 11. 10.(금) 14:00~17: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제: 재정분권에 관한 중앙-지방재정 협력방안 • 발표: 주만수 교수(한양대) 외 • 토론: 김현아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	한국재정정책학회	17-11-10
■ 2017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 일시: 17. 11. 6.(월) 14:00~16: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발제: 최영록 세제실장(기획재정부), 조의섭 추계세제분석실장(NABO) • 토론: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외	국회예산정책처	17-11-06
■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 • 일시: 17. 11. 2.(목) 14:00~16: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발제: 구윤철 예산실장(기획재정부), 조용복 예산분석실장(NABO) • 토론: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외	국회예산정책처	17-11-02



▶ 정책 및 연구

(1) 정책

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 2017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 2017년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 보다 신속하게 국세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요한 통계정보 72항목을 2차로 조기 공개함 (1차는 7월에 71항목 공개)	국세청	17-11-02
◇ 예산제도 개선해 주민참여 활성화한다—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세미나 개최 • 주민참여예산제도란 공청회,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의미함. 주민참여예산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등 다른 주민참여제도와 함께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여 풀뿌리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주민의 의사를 직접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에 기여함	행정안전부	17-11-02
◇ 2017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농어촌 체험시설 및 태양광시설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농지보전부담금) 농어촌 소득향상을 위해 태양광시설 등 3건을 감면대상으로 신설·추가하고, 5건의 감면기간 연장 •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제약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부과율 인하 (0.047%→0.027%) • (17년 부담금평가 결과) 일부 폐지, 효율 개선 등 전문가 의견 및 평가결과를 보고	기획재정부	17-11-02
◇ 제3차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두 가지 안건이 상정·의결	일자리위원회	17-10-19

(2) 국내외 연구(Papers & Briefs)

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 군인연금제도 검토 및 개선과제 • 군인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를 비교하고 재정현황 및 전망을 분석한 결과 수익비가 군인 2.15배, 공무원 1.48배로 45.3% 높고, 1인당 국가보전금도 군인 1,534만원, 공무원 512만원으로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군인연금제도가 현 상태로 유지된다면 두 제도 간 격차는 더 커지고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부담 • 따라서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고, 수입증대를 위한 기여금부담률 인상, 지출절감을 위한 연금가산율 인하 등을 고려	국회예산정책처	17-11-08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 2017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7년에서 2022년까지 30.8조원, 재정절감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30.6조원의 건강보험 추가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강화대책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9년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되며, 적자 전환으로 인하여 누적적립금 소진시기는 2026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절감 대책을 병행하는 경우 2027년에 4.7조원의 누적적립금이 존재할 것으로 보임	국회예산정책처	17-11-07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류영아 •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확충하여 자율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음. 즉, 지방자치단체는 부족한 지방재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려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17-11-01
◇ 우리나라 조세범죄의 형사처벌 현황 및 시사점 / 문은희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조세법에 대한 기소율은 대체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평균 기소율은 20.9%로서, 전체 형사법에 대한 기소율 37.9%보다 낮은 편임 • 조세범죄는 재정수입을 감소시키고, 건전한 납세질서의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형사범이므로, 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가벌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17-10-23



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 United States is Outlier in Tax Trends in Advanced and Large Emerging Economies / by Simeon Djankov. • In this comparative analysis of tax systems in advanced and large emerging economies, the United States stands out as an anomaly. Over the past 30 years the average corporate income tax rate in the 46 countries studied has fallen to about 20 to 25 percent, nearly every country has introduced carbon taxes, and personal income taxes have stabilized around 35 to 45 percent. ... (후략)	PIIE (Peterson Institute For Int'l Economics)	17-11-02
◇ 2017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 / by Kyle Pomerleau, Scott Hodge, and Jared Walczak. • The structure of a country's tax code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its economic performance. A well-structured tax code is easy for taxpayers to comply with and can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while raising sufficient revenue for a government's priorities. In contrast, poorly structured tax systems can be costly, distort economic decision-making, and harm domestic economies. ... (후략)	Tax Foundation	17-10-31
◇ Taxing Humans : Pitfalls of the Mechanism Design Approach and Potential Resolutions / by Alex Rees-Jones, Dmitry Taubinsky. • A growing body of evidence suggests that psychological biases can lead different implementations of otherwise equivalent tax incentives to result in meaningfully different behaviors. We argue that in the presence of such failures of "implementation invariance," decoupling the question of optimal feasible allocations from the tax system used to induce them—the "mechanism design approach" to tax analysis—cannot be the right approach to analyzing optimal tax systems. ... (후략)	NBER	17-10-30
◇ Tax Policies to Encourage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 by Sara LaLumia. • The current tax treatment of married couples reduces wive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creates other inefficiencies. I propose a new second-earner deduction, equal to 15 percent of the earnings of a lower-earning spouse. The proposed deduction would raise the after-tax return to work for many wives, encouraging an increase in married women's labor supply, and would reduce marriage penalties on average.	Brookings	17-10-19
◇ Taxes and the Fed: Theory and Evidence from Equities / by Anthony M. Diercks and William Waller. • We provide a critical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that suggests a key driver of fiscal effects on equity markets is the Federal Reserve. For the Post-1980 era, tax cuts lead to higher cash flow news and higher discount rates. The discount rate news tends to dominate such that tax cuts are associated with lower equity returns. ... (후략)	FRB of Governors	17-10-11

| 정책 흐름 |



- 2017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및 주요 내용
- 2017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2017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및 주요 내용

* 본 자료는 2017년 11월 2일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에서 발표한 「2017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의 주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 ◇ (농지보전부담금) 농어촌 소득향상을 위해 태양광시설 등 3건을 감면대상으로 신설·추가하고, 5건의 감면기간 연장
- ◇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제약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부과율 인하(0.047% → 0.027%)
- ◇ (17년 부담금평가 결과) 일부 폐지, 요율 개선 등 전문가 의견 및 평가결과를 보고

I. (개요) 정부는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조정(안)」,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율 조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의결안건)
- 「17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보고안건)에 대해 논의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11.2(목), 14:00,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 참석자: 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병덕 민간위원 등 16명

II.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3건), 기존감면 기간연장(5건)

- ① (부담금 개요)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 부과하며, 농지조성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농기관리기금에서 관리)

* (근거법) 농지법 제38조, ('16년 징수액) 12,609억원

* (부과기준) 농지전용면적×개별공시지가의 30%(상한액 5만원/㎡)

- ② (감면대상 신설) 농지를 체험시설, 태양광시설, 새만금지역 시설로 전용시 감면키로 함

감면대상	농업진흥지역	감면내용
마을협의회, 어촌계 등의 농산어촌 체험시설	內, 外	100%, 영구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태양광시설	外	50%, 한시
실시설계 승인을 받은 새만금지역의 설치시설	外	50%, 한시

- **(기대효과)** 체험시설 및 태양광시설 감면은 농어민의 소득증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취지이고,

* 농가 호당 농업소득(천원): ('14) 10,303 → ('15) 11,257 → ('16) 10,068

- 새만금지역 감면은 '18.1월 연륙교 개통예정인 관광지역(고군산군도)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③ **(감면기간 연장)** 기업투자 부담완화 등을 위해 '17.12.31까지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시설에 대해 감면기간을 2년 추가연장

감면 연장 대상시설(농업진흥지역 밖)	감면현황
①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50%
②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③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100%
④ 전통사찰의 유형 문화유산 보존 시설	
⑤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용지	100%(수도권 50%)

III.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 ① **(부담금 개요)** 의약품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발생 하는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자에게 부과

* (근거법) 약사법 제86조2, ('16년 징수액) 40억원,
(부과기준) 품목별 공급금액×품목별 계수×부과요율
(0.047%)

- ② **(요율인하)** 현행 0.047%의 부과요율을 0.027%로 인하하기로 함

- (사유) '14년 제도 도입 당시 부과요율 개편방향이 결정되었고, 현재 재원규모가 적절하며('17년

적립금 105억원), '18년부터는 보상 항목이 정착되는 등 안정적 운용이 가능

* 기본부담금 부과요율 결정('14년 부담금위)

: ('15) 0.018% → ('16) 0.027% → ('17) 0.047% → ('18) 0.027%

- ③ **(기대효과)** 제도정착기에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면 서도, 부담금을 납부하는 제약업체의 부담경감을 기대

IV. '17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보고안건)

- 금년 4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평가단에서 산업, 환경, 문화, 금융 분야 42개 부담금에 대해 평가

(근거: 부담금관리기본법 8조)

- 이번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담금운용평가단이 권고한 평가결과를 보고함 ※ 상세내용 별첨

- 정부는 평가단의 권고사항에 대해 향후 각 부담금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임

2017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요약)

I. 부담금운용평가 개요

- **(제도개요)** 국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부담금운용을 위해 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부담금법」 제8조)
- 부담금 부과 타당성,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적절성 등을 매년 1/3씩 점검·평가

* 전체평가('03년, '06년, '09년), 1/3씩 평가('10년 이후)

구분	'03	'06	'09	'10	'11	'12
국토·해수 등	○	○	○	○		
산업·금융·환경 등	○	○	○		○	
보건·교육·농림 등	○	○	○			○
평가대상 수	100	100	99	29	41	26
총 부담금 수	100	100	99	94	97	97

구분	'13	'14	'15	'16	'17
국토·해수 등	○			○	
산업·금융·환경 등		○			○
보건·교육·농림 등			○		
평가대상 수	32	40	23	24	42
총 부담금 수	96	95	94	90	89

* '17년기준, 부담금은 총 89개, 20조원 수준

- 매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부담금 정비, 부과기준 개선 등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 * 부담금수: ('03) 100개 → ('15) 94개 → ('16) 90개 → ('17) 89개
- **(17년 평가개요)** 산업·환경·문화·금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운용평가 실시
- 평가대상: 산업·환경·문화·금융 분야 42개 부담금('16년 12.1조원)
- 평가내용: 존치 필요성, 부과 타당성, 부과기준

적절성, 부과목적에 따른 사용용도 등

- 평가단: 조세연 김현아 평가단장 등 9명
- 주요일정: 착수(4월) → 평가시안 중간보고(7월) → 부처의견 수렴·보완(8월) → 최종 보고회(9월)

II. '17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원인자 부담원칙에 불부합하거나 실효성 없는 부담금을 폐지, 유사부담금은 통합하고,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제도개선할 필요

평가결과 총괄표

개	폐지	조건부 폐지	통합	존치	
				부과기준 개선 등	타당
42	2	1	2	7	30

1. 폐지

- ①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광산개발사업자에게 부과, 에트회계 귀속, '16년 58억원)
 - **진단** 일부 예치금* 성격이 있고 영세 광산업자**의 징수율이 낮은점 등 운영상 문제점 있음
 - * (산림복구사업) 예치금(복구비의 30~60%) 부과하고 보증서 발급
 - ** (광해방지사업) 매출액 1억원 이하 광산(46%)은 부담이 어려운 상황
 - **평가** 부담금 이외의 형태로 제도 전환

②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농어촌 전기 신규 설치비용 일부 부과, 한전 귀속, '16년 3백만원)

- **진단** 부과목적이 공사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징수규모('16년, 3백만원)도 미미하여 관리 실익 낮음
- **평가** 수수료 등의 형태로 관리방식을 전환

2. 조건부 폐지

① **환경개선부담금**(경유차 소유자에 부과, 환특회계 귀속, '16년 5,062억원)

- **진단** 환경오염이 아닌 경유차 소유에 대해 부과, 교통·에너지·환경세와의 이중 부과, 점진적 부담금 수입 감소 등 문제
- **평가** 대체수입방안 마련 조건으로 조건부 폐지

3. 통합

① **회수부과금과 재활용부과금**(전기전자제품 판매·제조·수입업자에 부과, 환특회계 귀속, '16년 회수 11억원, 재활용 52억원)

- **진단** 폐전자전기제품의 판매업자 부과(회수부과금)와 제조업체 부과(재활용부과금)에 따른 행정비용 저감 필요
- **평가** 근거법과 대상, 집행절차 등이 유사하여 부과금 체계의 단순화 및 명료화를 위해 통합 고려

4. 부과기준 개선

①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전기사용자에 부과, '16년 2조원)

- **진단** 사업비로 집행되지 않는 여유자금('16년 16,581억원)이 과다
- **평가** 부과목적 및 부담원칙에 맞게 지출사업을 개편하고 여유자금 고려하여 요율 재검토(전기요금×3.7%)

② **회원제골프장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회원제 골프장시설운영자에게 부과, 국민체육진흥기금 귀속, '16년 409억원)

- **진단** 부과액은 소액이나, 5단계 구조(1천원, 1천 5백원, 2천원, 2천 5백원, 3천원)로 부과방식이 복잡함
- **평가** 부과단계를 단순화하고 장기는 단일기준 필요

③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부과, 영화발전기금 귀속 '16년 496억원)

- **진단** 부담금이 귀속되는 영화발전기금은 연간 지출액('16년 2,924억원) 대비 여유자금(2,327억원, 80%)이 과다
- **평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부과요율 인하((입장권금액÷1.03)×3%)

④ **생태계보전협력금**(개발사업자에게 생태계 훼손시 부과, 환특회계 귀속, '16년 506억원)

- **진단** 상한액(50억원) 설정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억제 효과가 미흡하고 유사부담금*에 비해 부과단가(300원/㎡)도 낮은 수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010원/㎡

- **평가** 대규모 개발사업 억제 유인수단으로 상한액을 폐지하고 요율 상향 등 부과기준 개선

⑤ **재활용부과금**(재활용의무 미이행한 생산자에게 부과, 환특회계, '16년 147억원)

- **진단** '02년 법 제정 이후 재활용 기준비용이 현재까지 유지, 징수율도 50% 내외로 낮아 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 필요
- **평가** 재활용 기준비용 등 부과 산정방식의 재검토 및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

5. 기타

① **출국납부금**(공항 및 항만 이용 출국자에 부과, 관광진흥개발기금 귀속, '16년 2,959억원)

- **진단** 기금의 재정충당 목적으로 부담금 타당성은 약하고, 관광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 목적의 부담금임
- **평가** 부담금의 운영원칙에 부합하는 지출과의 연계성 강화할 때까지 존치

② **집단에너지건설비용부담금**(지역난방 공사비 부과, 지역난방공사 및 사업자 귀속, '16년 3,144억원)

- **진단**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영리활동 관련 비용을 소비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으로, 부담금으로 관리할 필요성 여부 검토
- **평가** 부담금 이외의 형태로 제도 정비할 때까지 존치

III. 향후 일정

- 관계부처 협의: '17.12.~'18.2월
 - 부담금운용평가단 권고안에 대해 각 부담금 소관부처와 제도개선방안 등에 대해 협의 추진
- 부담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18.3월
 - 평가단 권고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

담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부담금운용심의 위원회에 상정

■ 국회보고 : '18.5월말

- 평가결과는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 제출

■ 제도개선 추진(「부담금법」 제8조): '18년 연중

- 각 부담금 소관부처는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부담금 정비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각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

참고 부담금별 평가의견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부담금명	평가 결과
① 전기 사용자 일시부담금	• 폐지 • 공사비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수수료 등의 형태로 제도 전환
②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 존치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 부과목적 및 부담원칙에 맞게 지출사업을 개편하고 여유자금 고려하여 요율 재검토
③ 석유및석유대체연료수입판매부과금	• 존치 • 수익의 일부를 석유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부담하는 것으로 부과 타당함
④ 광해방지 의무자 부담금	• 폐지 • 영세광산업자의 경영난으로 징수율이 낮아 광해방지사업 지연 등 문제점 있어 부담금 이외의 형태로 제도 전환 • 산림복구사업은 채무이행보증에 필요한 예치금 성격이므로 부담금에서 제외
⑤ 특정물질제조소입부담금	• 존치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⑥ 안전관리부담금	• 존치 • 가스안전관리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부과해 가스안전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부과 타당함
⑦ 집단에너지공급 시설건설비용 부담금	• 존치 •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영리활동 관련 비용을 소비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으로, 부담금으로 관리할 필요성 검토 •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현행 제도를 존치
⑧ 광물수입판매 부과금	• 존치 • 국회에서 본 부담금 징수의 시행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존치할 필요
⑨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 존치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 환경부 소관

부담금명	평가 결과
① 대기배출부과금	• 존치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② 수질개선부담금	• 존치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③ 원인자부담금(수도법)	• 존치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④ 수질배출부과금	• 존치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⑤ 생태계보전협력금	• 존치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 대규모 개발사업 역제 유인수단으로 상한액을 폐지하고 요율 상향 등 부과기준 개선
⑥ 폐기물부담금	• 존치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⑦ 재활용부담금(재활용촉진법)	• 존치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 재활용 기준비용 등 부과산정방식 재검토 및 징수를 제고 방안 마련
⑧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 존치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⑨ 환경개선부담금	• 조건부 폐지 • 환경오염이 아닌 경유차 소유에 대해 부과, 교통에너지환경세와의 이중 부과, 점진적 부담금 수입 감소 등으로 문제 • 즉시 폐지할 경우 환경개선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대체수입방안 마련 조건으로 조건부 폐지
⑩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부담금	• 존치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⑪ 물이용부담금(한강)	• 존치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⑫ 물이용부담금(금강)	• 존치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⑬ 물이용부담금(낙동강)	• 존치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⑭ 물이용부담금(영산강 · 섬진강)	• 존치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⑮ 재활용부과금(전기전자제품)	• 통합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 근거법과 대상, 집행절차등이 유사하여 부과금 체계의 단순화 및 명료화를 위해 회수부과금과 통합 고려
⑯ 회수부과금(전기전자제품)	• 통합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 근거법과 대상, 집행절차등이 유사하여 부과금 체계의 단순화 및 명료화를 위해 재활용부과금(전기전자제품)과 통합 고려
⑰ 석면피해 구제 부담금	• 존치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부담금명	평가 결과
① 출국납부금	• 존치 • 기금의 재정충당 목적으로 부과 타당성은 약하나, 관광사업 활성화에 유도하는 성격은 부담금 운영에 적합한 측면 있음 • 부담금 운영 원칙에 부합하는 지출과의 연계성 검토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
②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 존치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③ 관광지등지원시설이용자부담금	• 존치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④ 관광지등지원시설원인자부담금	• 존치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⑤ 회원제골프장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 존치 • 부담금으로서의 정당성은 약하지만 관행상 이어져 온 부담금으로 판단 • 부과방식이 복잡하여 부과단계를 줄이고 장기는 단일기준화시킬 필요
⑥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	• 존치 • 부담주체가 공익사업의 원인자 또는 수익자라고 보기 어려워 부과 타당성은 약하나 현재에서 합헌 의견 제시 • 귀속되는 영화발전기금은 연간 지출액('16년 2,924억원) 대비 여유자금(2,327억원, 80%)이 과다하여 부과요율 인하
⑦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 존치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 금융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부담금명	평가 결과
① 주택금융신용보증 기금출연금	• 존치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 여유자금 비중(60%)이 높아 신용보증사업의 확대 검토 필요
② 농림수산업자신용 보증기금출연금	• 존치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 여유자금 비중(50%)이 높아 보증사업의 확대 검토 필요
③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존치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④ 한국화재보험협회출연금	• 존치 • 부담금 타당성은 미흡하나 화재 예방 등 재난 공익 활동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부과 필요
⑤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	• 존치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⑥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 존치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⑦ 주택담보노후연금계정출연금	• 존치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⑧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 존치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⑨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중기부)	• 존치 •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2017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 본 자료는 2017년 11월 2일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실에서 발표한 「2017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의 주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2017년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보다 신속하게 국세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요한 통계정보 72항목을 2차로 조기 공개(1차는 7월에 71항목 공개)

《주요 내용》

신규조기공개 체납추적, 징세비, 창업 현황, 지역별 법인 통계 등

[징세비] 국세청 공무원 1인당 세수는 123억원, 세수 100원을 걷기 위한 징세비는 0.65원*, 전년 대비 1인당 세수는 12.4% 증가, 징세비는 8.5% 감소

* 징세비('16년 1조 5천억원)÷[국세청 세수('16년 233조 3천억원)÷100]

[체납 추적] 고액체납자* 재산추적 결과 현금 7,966억원 징수, 재산 등 8,659억원 압류하여 전년 대비 현금은 4.3%, 재산은 5.2% 증가

* 재산회피 혐의있는 체납액 5천만원 이상자

[창업 현황] 122만 6천개 창업*: 연령은 40대, 지역은 경기도에 창업 많아

- 창업 연령별로는 40대(전체의 30.8%)·50대, 지역별로는 경기도(전체의 26.9%)·서울, 시기별로는 3월·12월에 창업이 많아

* 창업 유형별로는 개인사업자가 110만개, 법인사업자가 12만 6천개 창업

[1천억 초과 법인] 수입금액 1천억원 초과 법인은 3,502개로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셋 중 둘(66.4%)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 1천억원 초과(5천억원 초과): 서울 1,542개(430개), 경기 663개(101개), 인천 119개(27개)

창업중소기업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고한 법인은 6,441개, 감면세액은 1,30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7%, 13.8% 증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창업 (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외국법인 외국법인(1,880개) 및 외국인투자법인(8,513개) 수 지속적 증가

- 일본과 미국이 전체(외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의 43.8% 차지
- 업종별(외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로는 도매업·서비스업·제조업 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61조 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

- 국가별 금액 기준으로 법인은 홍콩·마카오, 개인은 미국·싱가포르 순

주류 출고 주류 국내 출고량은 3,680천kl, 맥주가 53.8%로 제일 많아

- 주류 종류별로는 맥주(1,979천kl), 희석식 소주

(932천kl), 탁주(400천kl) 순

- 지역특산주 출고량은 7,181kl, 종류별로는 탁주(지역특산주, 3,576kl) · 과실주(1,974kl) · 약주(601kl)순이며, 지역은 전북 · 충남 · 경기순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4조 4천억원, 전년 대비 10.7% 감소

- 주권 종류별로는 코스닥(2.5조원), 코스피(1.7조원), 기타(0.2조원)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01조 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

- 발급업종별로는 소매업(34.9조원), 서비스업(9.5조원), 음식업(7.2조원) 순

전자신고 주요 세목별 전자신고 비율은 법인세가 0.2%p 증가한 98.8%, 원천세가 0.4%p 증가한 99.3%로서 거의 100%에 근접

-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자는 1,235만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

1 배경

-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음

- 또한,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이라도 국민들이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에 생산 가능한 국세통계는 조기에 공개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지난 7월에 1차로 71개 국세통계표를 공개하였고, 이번엔 2차로 72개 국세통계표를 공개함
- 올해 조기 공개한 143개는 지난해(126개)보다 17개 증가한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표(16년 418개)의 34.2%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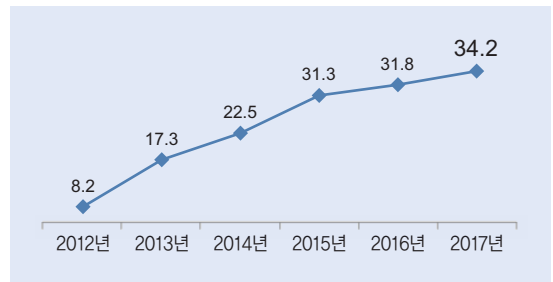
연도별 조기 공개 건수

(단위: 개)



연도별 조기 공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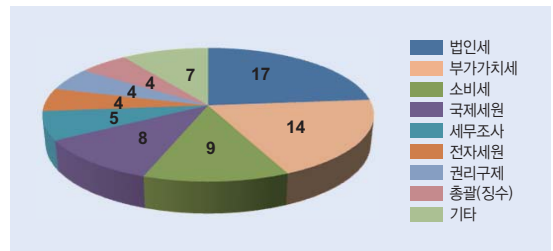
(단위: %)



통계 조회 및 내려받기는 '국세통계전용누리집'(인터넷에서 국세통계 검색), '국세청누리집', '국가통계포털사이트(KOSIS)'를 통해 가능

- 분야(항목)별로는 법인세 17개, 부가가치세 14개, 소비세 9개, 국제세원 8개, 세무조사 5개 등임

(단위: 개)



-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세통계연보의 양적 ·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며,
-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할 예정임

재정포럼

2017년 11월호 통권 제257호

- 발 행 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 행 인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책임전문원)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17년 11월 15일 발행 / 제21권 제11호(통권 제257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 414-2130~2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주)상일 E&P TEL: (02) 2269-6770

■ 인 쇄 / (주)상일 E&P TEL: (02) 2269-677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 414-2114
- FAX: (044) 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식정보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 금 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